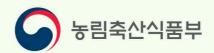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394-01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보 고 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2016. 8.

연구책임자

이 영 대 (법무법인 수호)

목 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석·······12	
1. 해외시장 분석····································	
가. 각 국별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의 개관····································	
기. 즉 독일 한편6일 한편합 자리의 개편 12 1) 미국····································	
2) 영국······ 12	
3) 독일······ 12	
4) 프랑스 13	
5) 일본······ 14	
6) 중국16	
나. 전통적 영역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1) 미국······ 18	
2) 영국······ 19	
3) 독일······ 19	
4) 일본······ 20	
5) 중국······ 20	
다. 새로운 영역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22	
1) 미국······ 22	
2) 영국······ 22	
3) 일본······ 24	
4) 펫박람회·······25	
2 국내시장 분석 27	

가. 반려동물 관련산업 시장의 개관 27
1) 반려동물 사육 현황27
2) 반려동물산업 시장 현황 28
나. 전통적 영역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 29
1) 사료······ 29
2) 수의진료29
3) 동물용의료기기 30
4) 동물용의약품30
다. 새로운 영역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 32
1) 보험32
2) 여가산업32
3) 장묘 32
3.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산업연관분석 33
가.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재분류 33
나. 산업연관표······ 37
1) 투입산출표 작성 37
2)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투입구조 38
3)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배분구조 39
다. 산업연관분석 실시40
1) 생산유발계수40
2) 파급효과42
Ⅲ. 반려동물산업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43
1. 규제 관련 제도 및 정책43
가. 동물등록제 관련43
1) 여구

2) 프랑스
3) 독일······ 44
4) 일본44
5) 한국
6) 참고 : 여권제도
나. 생산업 관련 제도 - 브리더(Breeder) 제도 55
1) 미국······ 55
2) 일본······ 68
3) 영국72
4) 독일······ 73
5) 브리더(Breeder) 관련 각국의 규제 정리73
다. 자격제(면허제)75
1) 영국······ 75
2) 미국······ 75
3) 한국75
라. 수의테크니션 관련 76
1) 영국 76
2) 미국 80
3) 스위스 83
4) 호주 86
5) 중국 89
6) 일본····· 89
7) 검토······ 90
마. 상품수입 규제91
바. 사체처리 규제91
사. 영업의 등록 및 신고92

	1) 우리나라	92
	2) 일본 : 동물카페 사례	92
2.	. 지원 관련 제도 및 정책	97
	가. 의료서비스 9	97
	나. 조세혜택	97
	1) 미국······· 9	97
	2) 한국	98
	다. 동물보호센터	98
3.	. 개별산업 관련 제도 및 정책······· (99
	가. 반려동물 판매업	99
	1) 일본의 경매업	99
	2) 반려동물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 - 일본의 사례 연구10)6
	3) 반려동물의 온라인판매 관련 일본에서의 논의11	17
	나. 수의, 의약품11	19
	1) 프랑스	19
	2) 일본······ 12	20
	다. 장묘업12	24
	1) 프랑스 12	24
	2) 독일······ 12	24
	3) 일본······ 12	24
	라. 보험업12	26
	1) 프랑스······12	26
	2) 독일······ 12	27
	3) 일본······ 12	27
	마. 사료산업	29
	1) 한국 12	29

2) 일본······ 12	29
3) 미국······ 13	31
4) EU	32
5) 캐나다13	32
6) 호주······ 13	33
Ⅳ.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34
1. 정책의 수립 방향	34
2.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13	34
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 및 기관 설립	34
1) 반려동물산업 관련 정부조직의 확충 및 개편 13	34
2) 반려동물산업진흥원의 설립 1%	38
3) 협력기관······13	39
4) R&D	40
5) 분쟁조정위원회·······14	40
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설치14	40
1) 기금의 의의 및 설치 필요성 1/	40
2) 기금의 재원······ 14	41
3) 기금의 사용 1/2	45
4) 기금의 관리 및 운용14	47
다. 반려동물산업 수출확대 방안 및 정책 14	49
1) 제도 개선······ 14	49
2) 산업분야별 맞춤형 방안 수립15	50
3) 박람회 참여 - 기업들의 주도적 참여 확대	50
♥.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안)15	51

1. 반려동물산업 관련 규제 입법	··· 151
가. 인적 규제	·· 151
1) 동물관련 영업 등록	··· 151
2) 수의테크니션	152
나. 물적 규제 : 반려동물관련 사업장 개설(건축법 관련)	·· 154
2. 반려동물산업 관련 지원 입법	··· 156
가. '반려동물산업 육성법' 제정의 필요성	·· 156
나. 관련 법령 검토	·· 156
다. 법률 수요조사 및 AHP평가	·· 157
라.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예시	159
마.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의 제안 근거	171
바. 반려동물 매매 표준계약서	194
VI. 결론 :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208
Ⅵ. 결론 :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208
1. 기대효과·····	208 208
1. 기대효과····································	208 208 208
1. 기대효과····································	··· 208 ··· 208 ··· 208 ··· 209
1. 기대효과····································	··· 208 ··· 208 ··· 208 ··· 209 ··· 209
1. 기대효과····································	208 208 208 209 209 210
1. 기대효과	208 208 209 209 210 211
1. 기대효과 2. 활용방안 가. 공청회의 개최 나. 정책고객화 1) '정책고객'의 의미 2) 고객관계관리와 정책고객관계관리의 개념 3) 도시민의 정책고객화 방안	208 208 208 209 209 210 211
1. 기대효과	208 208 208 209 209 210 211

표 목차

(丑	2 - 1)	일본 U사의 특정 제품의 다양화 사례	24
(丑	2 - 2)	전 세계 펫 박람회 개최 현황	25
(丑	2 - 3)	국내 반려동물 수 추산	28
(丑	2 - 4)	국내 반려동물 관련시장 규모성장 전망	28
(丑	2 - 5)	반려동물 관련 업종 및 동물병원의 매출 증감률	29
(丑	2 - 6)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 현황	31
(丑	2 - 7)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 판매금액 분포 현황	31
(丑	2 - 8)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성장 추이	33
(丑	2 - 9)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반려동물 관련 산업 – 축산, 사료	33
(丑	2 - 10)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반려동물 관련 산업 – 의료 관련	34
(丑	2 - 11)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반려동물 관련 산업 – 도소매	35
(丑	2 - 12)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반려동물 관련 산업 — 기타 산업	35
(丑	2 - 13)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재분류	36
(丑	2 - 14)	반려동물 연관산업 투입산출표	37
(丑	2 - 15)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투입계수*100	39
(丑	2 - 16)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배분계수*100	40
(丑	2 - 17)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생산유발계수	41
(丑	3 - 1)	도도부현별 개 등록 두수와 예방주사 두수	48
(丑	3 - 2)	반려동물 개체인식 방법별 장단점	50
(丑	3 - 3)	2015년 동물 등록 현황	52
(丑	3 - 4)	미국의 주별 브리더 관련 규제 현황	57
(丑	3 - 5)	일본의 동물판매업 규정 및 해당 업자의 예	69
(丑	3 - 6)	브리더 관련 각국의 규제 정리	73

(표 3 - 7)	반려동물 관련 민간 자격증	· 75
(丑 3 - 8)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록업체 수	. 92
(丑 3 - 9)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조세혜택	. 97
(丑 3 - 10)	일본의 동물취급업 분류 및 해당업자 예	100
(班 3 - 11)	동물의약품 판매업	123
(班 3 - 12)	동물의약품의 리스크 정도에 따른 판매업자의 의무	123
(丑 4 - 1)	인력현황	135
(丑 4 - 2)	도도부현·지정도시·중핵시 동물애호관리행정담당조직	137
(丑 4 - 3)	산업진흥원의 설치 사례	138
(丑 4 - 4)	반려동물 산업육성 TF	139
(丑 4 - 5)	개별 법령에 규정된 기금의 재원	141
(丑 4 - 6)	개별 법령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	145
(丑 4 - 7)	개별 법령에 규정된 기금의 관리 운용주체 및 심의기관	147
(班 5 - 1)	산업 육성 구조	156

그림 목차

<그림 2 - 1>	독일의 반려동물용품 시장 매출 현황	13
<그림 2 - 2>	프랑스 반려동물 사료 및 용품 판매량	14
<그림 2 - 3>	일본의 반려동물 시장 규모, 야노경제연구소	16
<그림 2 - 4>	중국의 반려동물시장 규모, KOTRA보고서	17
<그림 2 - 5>	중국의 반려동물시장 성장 예측	17
<그림 2 - 6>	2011~2015년 미국의 반려동물 시장 매출	18
<그림 2 - 7>	독일의 반려동물 시장 매출 비중	20
<그림 2 - 8>	중국의 반려동물 식품 소비량 및 성장률	21
<그림 2 - 9>	2014년 영국의 반려동물보험 현황	23
<그림 2 - 10>	동물의약품 수출 현황	30
<그림 2 - 11>	동물의약품 내수시장 현황	31
<그림 3 - 1>	반려동물 개체식별의 목적과 효과	45
<그림 3 - 2>	과거 10년간 사육한 개의 신고 및 등록 유무	49
<그림 3 - 3>	프랑스의 동물여권	54
<그림 3 - 4>	각 점포의 영업시간	94
<그림 3 - 5>	각 점포의 개점시간	94
<그림 3 - 6>	각 점포의 폐점시간	95
<그림 3 - 7>	사육두수	95
<그림 3 - 8>		
·— 🛮 5 0,	업종별 점포수 비율	96
	업종별 점포수 비율	96 05
<그림 3 - 9>	업종별 점포수 비율	05
<그림 3 - 9>	업종별 점포수 비율	05

<그림 4 - 2>	중앙조직도	136
<그림 4 - 3>	반려동물 관련 카드 사용액 추이	144
<그림 4 - 4>	유기견보호기금 마련 걷기대회	144
<그림 5 - 1>	AHP평가 예시	158
<그림 5 - 2>	응답자 분포	172
<그림 5 - 3>	종합계획 수립	175
<그림 5 - 4>	전담기관 및 센터 설립	177
<그림 5 - 5>	말산업육성전담기관 지정서	177
<그림 5 - 6>	전담기관 및 센터 설립	179
<그림 5 - 7>	R&D 및 정보시스템 구축	181
<그림 5 - 8>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분류 및 등록	186
<그림 5 - 9>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분류 및 등록2	188
<그림 5 - 10>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192
<그림 6 - 1>	정책고객화	209
<그림 6 - 2>	반려동물 산업 포탈	212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출산율이 저하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2014년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1조 4,300억 원에서 2020년 에 6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단순히 반려동물의 판매, 사료, 의료 정도에 그치던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요즘에는 미용, 휴게, 보험 등 다양한 산업과의 접목을 통해 다양화됨에 따라 각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커지고 있는 등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관련 법률로는 '동물보호법'이 있으나, 이는 동물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즉,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세나 커져가는 중요도에 비해 국내의 반려동물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뒷받침은 아직 부족한 수준이어서, 체계적이며 실질적인 정책적 · 입법적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실태 및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며, 가칭 '반려동물산업 육성법'에 대한 법률안을 제시함으로써,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석 및 발전방향의 연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п.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석

1. 해외시장 분석

가. 각 국별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의 개관

1) 미국

미국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가정의 68%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많이 기르는 동물의 유형은 개(56.7%), 고양이(45.3%), 민물고기(14.3%)순이다. 산업 시장은 규모는 600억달러(70조 4800억원)를 넘길 것으로 추정되며, 영역별로는 사료(38.35%), 동물병원(25.91%), 의료 등 관련 제품과 비처방약(23.69%), 반려동물 서비스(8.24%), 반려동물 판매 (3.70%)이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시장은 전년 대비 9.8% 성장하는 등 매년 가장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2) 영국

영국¹⁾은 2012년 1천3백만 가구에서 6천 7백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이는 전체 가구의 47%로 미국(62%)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규모가 크다.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도 높아 모자란 공급분을 채우기 위하여 매년 아일랜드에서 5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수입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매우 발전하여 사료산업, 용품산업, 수의업, 서비스업 등이 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사료산업의 경우 2008년 시장규모가 1,915백만 파운드로 전체 반려동물 관련산업 시장의 2,519백만 파운드 중에 76%를 차지하며 반려동물 자체 시장보다 클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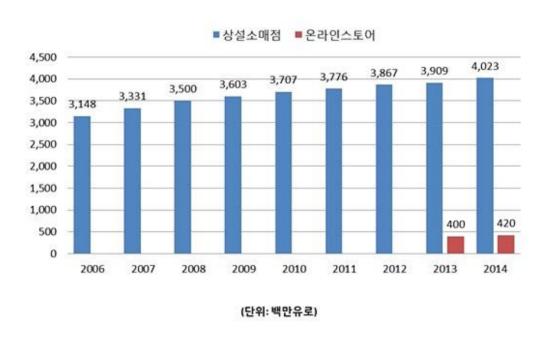
3) 독일

독일인이 사육하는 반려동물은 총 2,800만 마리(독일 반려동물협회 IVH & Euromonitor)로

¹⁾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농협경제연구소, 2013. 4.

추정되며, 이는 유럽 전체에서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러시아 : 개 사육가구 2,000만, 고양이 사육가구 2,500 ~ 3,00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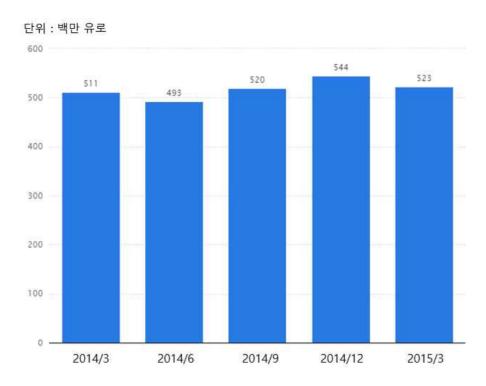
독일의 반려동물산업에 있어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온라인 반려동물용품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Amazon.de, Zooplus 등 온라인 스토어를 통한 반려동물용품 구매가 붐을 일으키고 있으며, 현재는 온라인 판매비중이 시장 매출액의 10%를 차지하는 수준이지만 이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 독일의 반려동물용품 시장 매출 현황

4) 프랑스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프랑스 소비자들은 불경기에도 반려동물 소비를 줄이지 않고 보다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 있는 고급 프리미엄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동물의 웰빙(well-being)을 위한 영양제, 보충제 등 더욱 세분화 되고 다양화된 사료제품의 수요가 증가 추세여서 불경기에도 프랑스 사료시장은 매년 3%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료의 수입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독일, 폴란드, 벨기에 등 인근 유럽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2-2> 2014년 1분기 ~ 2015년 2분기 프랑스 반려동물 사료 및 용품 판매량

프랑스 전체 가정 중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정 비율은 2012년 기준 전체의 2/3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용품 및 사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유통채널은 주로 일반 소매가 전체 61.2%를 차지하고, 반려동물용품 전문점과 동물병원 유통 비중도 30%로 높은 편이다. 반려동물의 종류도 다양해져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애견의 수는 감소하고, 고양이, 파충류 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사료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애견사료 수요가 감소해 전체 시장규모는 소폭 감소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5) 일본

가) 반려동물 관련 트렌드

2012년 현재 전체가구(54,172천 가구)의 16.8%(9,101천 가구)가 11,534천 마리의 개를, 10.2%(5,525천 가구)가 고양이 9,748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²⁾ 평균 사육두수는 개 1.3두, 고양이 1.8두이며, 사육의향 가구 비율은 개와 고양이 각각 30.4%, 18.2%로 앞으로도 사육두수의 확대가 기대된다.

일본의 4대 반려동물 사육 트렌드3)는 ①반려화. ②실내사육. ③소형화와 순혈화. ④고령화라고

²⁾ 일본 펫푸드협회, '2012년도 전국 개·고양이 사육실태조사 결과', 2013

할 수 있다. ① 반려화(伴侶化)란 자기가 기르는 반려동물을 사람처럼 가족으로 여기는 가구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고, ② 집안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늘고 있으며 실내에 사육하는 가구는 개와 고양이가 각각 73%, 78%⁴⁾를 차지한다. ③ 반려동물 전문점에서의 구입이 증가 하면서 혈통서를 가진 순종을 사육하는 가구가 증가하여, 2012년 현재 순종의 비중은 반려견 약82%, 고양이 약 16%로 추정된다.5) 또한 실내사육에 적합한 소형견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기 품종은 닥스훈트, 치와와, 토이푸들, 요크셔테리어 등이다. ④ 주인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고 잘 관리하여 동물 수명이 길어지면서 늙은 반려동물이 증가하여 2012년 기준으로 반려용 개와 고양이의 평균수명은 각각 13.9세, 14.5세 수준으로 개는 소형일수록, 고양이는 실내에 사육하는 것이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6)

현재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크게 반려동물 그 자체를 판매하는 "생체동물", 반려동물의 먹이를 판매하는 "반려동물 푸드", 반려동물 집이나 화장실 등 반려동물을 사육할 때 필요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반려동물 용품"의 3개를 축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반려동물의 가족화가 진행된 결과, 새로운 서비스·시장(반려동물 호텔·반려동물 묘지)이 형성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에서도 반려동물의 먹이에 해당하는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에서도 반려동물의 먹이에 해당하는 반려동물 프트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선구적 존재이며, 현재도 동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단, 반려동물푸드 시장 구조의 변화·다양화가 진행된 결과, 현재는 양적으로는 포화상태에 있으며, 홈 센터나 동물약국의 특매상품으로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 저가의 보급품과, 특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 프리미엄 푸드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나)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규모7

일본의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2009년부터 1조 4,000억 엔(약 14조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성장세를 보이지는 않으나 안정적인 산업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2011년 반려동물 관련시장 규모는 약 1조 4,000억 엔 수준이었는데, 이 중에서 펫푸드 시장이 4,383억 엔(31.2%)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은 펫용품 시장이 2,484억 엔(17.7%) 수준이며, 반려화 및 실내사육에 따른 서비스, 의료보험 사업⁸⁾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2013년도 반려동물 관련 총 시장 규

³⁾ 坂田直樹, '펫 비즈니스 현황과 전망', (Best Value vol. 14), 2007

⁴⁾ 일본 펫푸드협회 '2009년 개·고양이 사육율 전국조사'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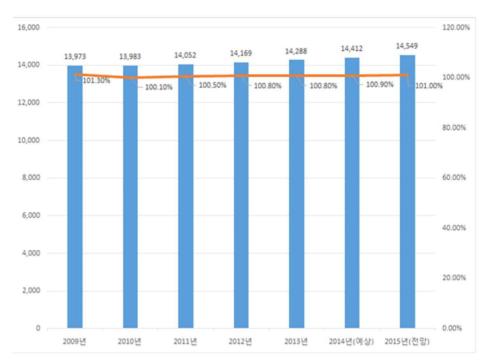
⁵⁾ 일본 펫푸드협회 '2012년 개·고양이 사육실태조사', 2013

⁶⁾ 일본 펫푸드협회 '2012년 개·고양이 사육실태조사', 2013

⁷⁾ 베일리벳 2016. 2. 1. 글로벌 반려동물시장 특집5. 14조원 규모의 안정된 시장을 유지하는 일본

^{8) 2011}년 반려동물보험 판매실적은 약 61만 건을 기록하여 전년보다 18% 증가, 해마다 10% 이상 성장세를 보였다. 가입대상은 개, 고양이, 새, 소 동물 등이나 반려견이 가장 많이 가입하여 90%이상을 차지했으며, 보험액은 대형견 일수록 가격이 높은데 '닥스훈트'품종의 경우, 치료비 50% 보상에 월 납입액 2,160엔(원화 24,500원) 수준이다. 수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반려동물 고령화로 병원비 부담이 증가하여 반려동물 보험시장이 성장하는 추세

모는 소매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0.8%인 1조 4,288억 엔이었으며, 2014년도에는 소비세 인상 후에 막바지 수요의 반동 감소가 보였으나, 예상보다 회복이 빠르고 서비스 관련부문이 호조세를 나타내 전년 대비 100.9%인 1조 4,412억 엔을 기록했다.



<그림 2-3> 일본의 반려동물 시장 규모, 야노경제연구소

6) 중국

2013년 기준으로 세계 반려동물 용품 판매 중 중국의 반려동물 용품 시장이 37%의 시장규모를 차지한다. 2012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수는 약 1억 7,000만 마리에 달하며, 시장규모는 약 65억 3,085만 달러(400억 위안)로 매년 20%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의 반려동물 보유 인구는 3,000만 명에 달한다. 현재 중국 반려동물 보유 인구는 2,200만 명인 일본을 이미 제쳤으며,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이다.

그 중 반려견 시장이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신화왕(新华网)에 따르면 중국에는 현재 약 1억 마리의 반려견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 국민의 13명 중 1명이 반려견을 키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의 반려견 수는 해마다 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다.

베이징, 상하이, 충칭, 청두, 우한은 반려견 수가 많은 5대 도시 중 하나이며, 특히 상하이나 청두에서는 반려견 수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1가구당 1마리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것을 금지 하는 "1가구 1애견" 정책이 시행될 정도이다.

□ 애완동물시장 10년간 연평균 59.5% 증가



자료원: 易觀智口(이관지사)

<그림 2-4> 중국의 반려동물시장 규모, KOTRA보고서



<그림 2-5> 중국의 반려동물시장 성장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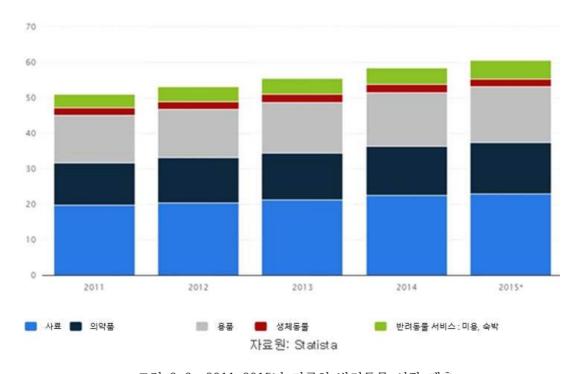
자녀가 없는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사육수가 증가하였다. 또,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외로움을 타는 현대인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중국 젊은 층의 문화 레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경제력 상승으로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중산층이 증가하였다. 결국 애견관리에 드는 고정적인 비용지출은 꾸준한 수요를 창출하는 요인이 되었다.

나. 전통적 영역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1) 미국

가) 사료, 간식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국은 북미지역에서 가장 큰 반려동물 사료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반려동물 인간화, 반려동물 소유의 확대, 자체 상표 브랜드(Private Label Brand)의 출현, 도시화의 확대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건강을 강조하는 브랜드의 제품이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더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6> 2011~2015년 미국의 반려동물 시장 매출

나) 수의진료

수의진료 시장규모는 134억 달러 수준으로 매년 소비자들은 수의서비스와 제품에 각 98억 달러씩 소비하는 추세이다. 반려동물 주인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비슷한 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려동물 제약시장은 미국 정부의 연구 및 개발 지원, 백신 수요 증가를 이유로 수요 증가 추세에 있다. 기업 측에서도 사람용 약품보다 책임이나 위험부담이 적고 경쟁이 수월하여 진입장벽이 낮으므로 앞으로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3억 300만 달러 규모로 가입률은 약 10% 수준으로 최근 몇 년간 가입자 수가 두 배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2) 영국

영국은 동물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런던 인근에 위치한 데이비스 동물 전문병원의 경우는 5개의 동물전용 수술실과 MRI 자기공명영상촬영기, CT 컴퓨터 단층촬영기 등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종양학, 정형외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약 30여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 최근 이 동물전문병원에서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 동물에게 피부이식 수술을해주고, 장애가 있는 동물에게는 인공관절을 삽입해주고, 암에 걸린 동물한테는 화학요법 치료를하였다고 한다. 또한 영국에서는 2015년 8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화상연결 프로그램을 통해 20분간 수의사와 상담할 수 있으며, 일반 동물병원의 반값이라 경제적이기때문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독일

독일의 반려동물용품 시장은 지난 9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2014년 기준 반려동물용품 시장 규모는 약 40억 유로로 2006년(31억 4,800만 유로)에 비해 27.8% 증가했으며, 유럽 전체에서 영국, 프랑스에 이어 3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독일의 반려동물용품 시장에서 가장 큰 매출액이 발생하는 분야는 가공 펫푸드(30억 6,700만 유로)분야이다.



<그림 2-7> 독일의 반려동물 시장 매출 비중

4) 일본

펫푸드 시장은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과 저렴한 이코노미 제품으로 양분된 상태에서 연령별, 종별, 비만 및 알레르기용 등 세분화된 상품 개발로 반려동물 주인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도그푸드보다 개발 여지가 많은 캣푸드 신상품 개발 및 출시가 활발하여 전체 펫푸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반려동물 용품시장은 도시지역 중심으로 반려동물 실내사육이 확산되면서, 배변시트, 고양이용 모래 등 필요한 실내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중심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물용 물티 슈, 치과용품 등 새로운 물품들의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로 대형양판점 '다이에(Daiei)'는 동물 전 용 판매장을 신설하여 펫푸드, 의류, 잡화, 완구 등을 판매하고 있다.

5)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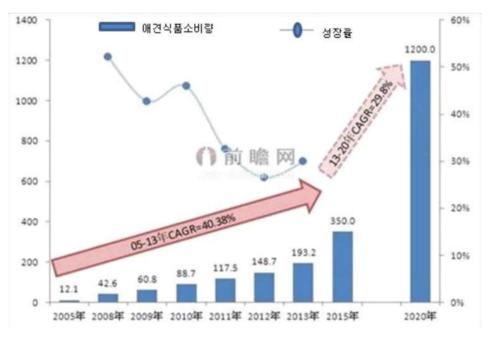
과거에는 반려견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용품이 주를 이루었으나, 중국인들의 소비 수준이 높아 지면서 액세서리와 고급용품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미용, 의료등의 관련 서 비스 분야도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다.

가) 용품 시장

중국인의 연간 반려용품 소비 금액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으며, 소비군도 다양하다. 연간 5,000위안 이상의 소비군이 40% 정도이며, 이중 1만 위안 이상의 고 소비군이 11%에 달한다. Financial Times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반려견용품 소비시장 규모는 130억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나) 사료 시장9)

중국은 반려동물 식품시장의 대부분은 해외 브랜드가 선점하고 있고, 중국기업이 차지하는 점 유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반려동물 식품에 대한 소비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그중 사료시장이 가장 크고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반려동물의 건강을 고려해 고품질 사료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취향이 고급화되고 실내에서 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액세서리, 케이지 등 용품 시장도 발달하고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및 애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품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그림 2-8> 중국의 반려동물 식품 소비량 및 성장률

2013년 기준, 중국의 반려동물 식품시장 규모는 193억 2,000만 위안(약 3조 6천억 원)에 달했으며, 2014년에는 이보다 25% 시장 규모가 커졌다. 중국에서 반려동물 사료 및 식품은 주로 전문점(동물병원, 펫샵 등)과 슈퍼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판매도 빠르게 늘고

⁹⁾ 데일리벳 2016. 2. 3. 글로벌 반려동물시장 특집6. 사료시장 성장세 돋보이는 중국

있다. 온라인 판매는 B2C와 C2C 등 2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표적인 B2C 사이트로는 www.chinapet.com과 www.chinapet.net 이 있다. C2C는 알리바바와 타아보오에서 주로 이뤄지며, 개인 간 거래되는 반려동물 식품 제품 중 70% 이상이 글로벌 사료 브랜드 제품이다.

다. 새로운 영역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1) 미국

가) 여가산업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넓은 부지환경으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여가문화공간이 인기를 끌고 있다. 플로리다 Dog Wood Park는 애견 수영장, 운동장, 트레일, 미용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캘리포니아 Point Isabel Regional Shoreline은 샌프란시스코 스카이라인을 즐길 수 있는 유명 해안가를 따라 조성된 공원으로 연간 50만 마리의 개들이 찾는 미국 내 최대공간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나) 동물매개치료

동물매개치료는 반려동물들과의 정신적 교감과 육체적 활동 등을 통해 심리치료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 환자 등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애견인, 자원봉사자, 치료전문가,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인 델타 소사이어티를 중심으로 동물의 치료기능과 서비스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다) 장묘

반려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장묘업에 대한 관심 증가하고 있다. 장례의역사가 깊은 문화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장묘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펜실베니아의 힐크레스트-플린 장례식장의 경우, 2006년에 반려동물 장묘업을 개시한 후, 매년 수익률이 25%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 영국

가) 보험

영국의 반려동물 관련산업 중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 분야에서 나타난다. 동물보험의 경우 동물에 대한 치료비 상승으로 매년 17%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35개의 보험사가 동물보험 상품을 출시하여 반려동물의 20%가 이미 보험에 가입하였다.¹⁰⁾ 이는 반려동물의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의 10%나 우리나라의 0.1%(2014년 기준)와 비교할 때 영국의 반려동물 관련 보험시장의 성장을 알 수 있다.

ACCIDENT INSURANCE (INCLUDING TRAVEL)

Accident and travel

insurers paid out £1.3m in

claims per day in 2013.

Every day, travel

insurers paid out more

of which 56% were for

than £1 million in claims,

Accident insurance made

an underwriting profit of

£16m in the UK



<그림 2-9> 2014년 영국의 반려동물보험 현황

나) 호텔산업

영국은 반려 동물 동반 가능한 호텔이 10,490개¹¹⁾로 반려동물에 관한 서비스 시장도 가장 앞서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반려동물 전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¹²⁾가 등장하였다. 마이 소셜 펫워크사는 소유주가 반려동물을 대신해 근황을 게시하고 이웃을 늘려가는 일종의 가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인간의 계정이 아니라 동물의 프로필을 등록한 후 동물의 계정으로 SNS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였다.

¹⁰⁾ 데일리벳 2015. 3. 20. 늘어나는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보험 활성화 필요

¹¹⁾ 부킹닷컴 영국 호텔이용 정보

¹²⁾ 데일리펫 2013. 4. 16. 영국, 반려동물 전용 SNS서비스 출시

3) 일본

가) 개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는 소비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형성되고 있다. 반려동물 사육이 가능한 고급주택, 반려동물 호텔,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한음식점 등의 상업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보험과 장례서비스 등 동물들에게 사람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증가하여 시장규모가 커지는 추세이다.

한편 반려동물 고령화와 개호(介護)문제, 실내생활로 인한 운동 부족과 나쁜 습관을 교정해주는 새로운 사업이 생겨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모임 등에 동반 시 동물 길들이기, 반려동물 주인의 동물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해 주는 교육사업 등 새로운 서비스 업종들이 등장하고 있다.

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사례

일본의 U사는 도그푸드(dog food)의 제조 및 판매사로서, 개의 연령이나 체질 등에 따라 맞춤형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상품명	분류	맛	종류
		소고기, 녹황색야채, 작은 생선	드라이
	강아지용	닭가슴살, 소고기, 녹황색야채	드라이
	7세 이상용	치킨, 닭가슴살, 녹황색야채, 작은 생선	드라이
		소고기, 녹황색야채, 작은 생선	드라이
	10세 이상용	닭가슴살, 소고기, 녹황색야채	드라이
		소고기, 닭가슴살, 녹황색야채, 작은 생선	드라이
A	10세 이상의 중, 대형견용	소고기, 닭가슴살, 녹황색야채, 작은 생선	드라이
	13세 이상용	소고기, 닭가슴살, 녹황색야채, 작은 생선	드라이
	비만견용	소고기, 닭가슴살, 녹황색야채, 작은 생선	드라이
	비만견 7세이상용	소고기, 닭가슴살, 녹황색야채, 작은 생선	드라이
	소형견용	닭가슴살, 녹황색야채, 치즈	드라이
	소형견 7세이상용	닭가슴살, 녹황색야채, 치즈	드라이
	시바견용	소고기, 녹황색야채, 작은 생선	드라이

(표 2-1) 일본 U사의 특정 제품의 다양화 사례

이처럼 제품을 다양화한 배경으로는 도그푸드의 특징 중 하나로 유아용 제품과 마찬가지로 구입자(사육자)와 소비자(반려동물)가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도그푸드의 구입은 사육자의 취향에 좌우되기 때문에 도그푸드 판매 제조사로서는 항상 구입자인 사육자를 의식한 신상품 개발이필요하며, 그 결과로서 반려동물이 접하게 되는 음식이나 건강에 관한 문제점을 인간의 식생활, 생활습관으로 치환하여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사육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다.

다)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와의 연계¹³⁾

우리나라에서 연달아 출시되고 있는 것처럼, 일본 역시 지난해 초 '스마트폰 연동 반려견 감시 카메라'가 출시되어 약 3만 엔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또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반려견의 하 루 걸음 수와 운동 수, 섭취 칼로리, 활발한 상태를 평가하고 다이어트를 돕는 서비스도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동물병원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타 병원과의 차별화를 위해 펫IoT 기기를 활용하는 동물병원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주로 펫IoT 기기의 데이터를 받아 전문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한 뒤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 발병 전에 내원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일부 반려동물 보험회사 역시, 펫IoT 회사의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함에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펫IoT 회사들도 반려동물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하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낮춰주는' 자동차보험회사의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에 힘쓰는 보호자에게 특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케팅 포인트를 잡고있다.

4) 펫 박람회14)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용품이나 사료 등을 전시하고 업체 관계자들 간의 교섭 및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펫 박람회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다.

박람회명	개최지	참가산업 및 기업 (취급품목)	규모	개최빈도
Interzoo	유럽·CIS	- 펫 용품 :	세계 최대	1회/2년

¹³⁾ 데일리벳 2016. 2. 1. 글로벌 반려동물시장 특집5. 14조원 규모의 안정된 시장을 유지하는 일본

¹⁴⁾ jetro これから開催される見本市・展示会一覧

		사료, 장난감, 미용용품, 건강용품, 케이지, 장례용품, 액세서리 - 설치·장비류: 진열대, 취급상점 설비류, - 펫 푸드 기술: 원재료, 생산 기술, 포장 및 보존기술, 생산 기계, 포장 기계 - 건강관리·치료법	2014년 참가업체 1,698사(해외기업 1,390사) 비즈니스관계자만 입 장 가능	
C h i n a International Pet Show	중국	사료, 의류, 장난감, 케이지, 훈 련도구, 헬스케어, 미용, 의료기 기 및 의약품, 장례용품	2015년 참가업체 1,157사	매년
Pet Fair Asia	중국	펫식품, 펫용품, 아쿠아리움, 소 형펫	2015년 참가업체 700사	매년
대구펫쇼	한국	- 용품·액세서리: 사료, 식품, 의약품, 헬스케어용품, 미용용품, 위생용품, 패션용품 - 설치·장비류: 진열대, 취급상점 설비류, 의료기기, 차량용품, 외출용품, 장난감, 훈련시설- 서비스: 병원, 비용실, 테마파크, 쇼핑몰, 기관, 학교, 어플리케이션, 보험, 장례서비스, 프랜차이즈- 반려동물관	90개 업체	매년
Thailand International Dog Show	타이	도그푸드/기저귀, 샴푸/로션, 미용도구, 케이지, 베드, 목줄, 장난감, 헬스케어용품(약품), 순 혈종사육장, 관련 서비스(호텔, 훈련), 개의류·기념품	200개 업체	매년
Pet South America	중남미	의료·건강(헬스케어, 보건산업, 보건용품), 위생/미용, 액세서 리, 기기, 서비스(점포용 설비 및 기기, 디스플레이)	2015년 참가업체 350사	매년

National Pet Show	유럽·CIS	애견용품 및 애견분양	140개 업체	매년
Zoosphere	유럽·CIS	펫 용품, 미용 서비스	2015년 참가업체 200사	매년
Pet Expo	일본	펫용품(목줄, 캐리어, 위생용품, 목용용품, 미용용품, 보험, 장난 감, 청소용품) 펫의류 및 패션용품 펫푸드(간식, 이유식 포함) 각종 이벤트(개운동회, 미용교 실, 펫상담실, 도그미팅, 예절교 실)	일본 최대규모 예상인원 6만명	매년

(표 2-2) 전 세계 펫 박람회 개최 현황

2. 국내시장 분석

가. 반려동물 관련산업 시장의 개관

1) 반려동물 사육 현황

우리나라는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가족 규모가 축소되면서 점차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동물보호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21.8%로 2012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려동물 사육 비중을 통해 산출한 전국 반려동물 사육 가구 수는 약 457만 가구로 추산15)되며, 개의 경우 사육가정 당 1.28마리, 고양이는 1.74마리로 개에 비해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의 평균 사육 마리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서결과를 토대로 국내 반려동물의수를 추정해 보면, 개는 약 512만 마리, 고양이는 약 189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2012년 대비 각각 16.6%, 63.7%가 증가한 것이다.

¹⁵⁾ 반려동물 사육 가구 수 = 세대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 기준) × 사육 비율(%)

	구 분	2010년	2012년	2015년(10월 기준)	증감율(%)
	총 가구수 (단위 : 천가구)	19,261	20,033	20,967	-
	사육 비율(%)	16.3	16.0	19.1	-
개	가구 당 평균 마리수	1.47	1.38	1.28	-
	총 사육 동물수(추정)	4,615,198	4,397,275	5,126,127	▲16.6
	총 가구수 (단위 : 천가구)	19,261	20,033	20,967	-
고양이	사육 비율(%)	1.7	3.4	5.2	-
	가구 당 평균 마리수	1.92	1.70	1.74	-
	총 사육 동물수(추정)	628,689	1,158,932	1,897,137	▲63.7

(표 2-3) 국내 반려동물 수 추산¹⁶⁾

2) 반려동물산업 시장 현황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2012년 시장규모는 약 8,947억 5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수요의 증가로 다양한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가구당 연평균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이후로 관련 용품 지출이 급증하였다. 2010년 이후 경기침체기에 반려동물 관련물품 지출액이 증가한 것은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매년 2자리 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신규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규모는 계속 성장하여 2020년경에는 약 6조 원 안팎의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단위	: 천억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시장 규모	9	11.4	14.3	18.1	22.9	28.9	36.5	46.0	58.1

(표 2-4) 국내 반려동물 관련시장 규모성장 전망

^{16) 2015}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나. 전통적 영역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

산업 분야별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2012년 사료 시장은 약 1,500억 원 규모이며, 소매 기준으로는 2,500억 원(40% 마진율 반영시) 정도 수준으로 추정된다. 관련 용품 시장은, 소비취향의고급화로 매출액이 급성장하여 '반려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시장은 2009년 1,687억 원에서 2011년 2,874억 원으로 2년 만에 1.7배의 성장을 보였다. 또한 용품판매 매장에서 수의의료 및미용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등 관련 용품 유통업과 서비스업이 복합화 되는 추세이다.

1) 사료

반려동물 사료는 일반 산업가축 사료와 달리 반려동물 노화와 비만관리를 위한 제품 생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관리가 중요해져 예방접종과 치료 및 진단 시장이 발전하여 활성화될 전망이다.

2) 수의진료

수의진료 시장의 매출규모는 2010년은 약 2,178억 원, 2011년은 약 2,6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9.8%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동물병원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4천개로 2008년 대비 40.5%가 증가하고 있는데¹⁷⁾, 이중 반려동물병원이 2,792개, 산업 동물병원이 771개, 혼합 동물병원이 416개였으며, 이와 같은 동물병원에서 총 5,745명의 수의사가 근무 중이다. 최근에는 동물병원들도 수의의료 서비스와 함께 펫샵, 미용 서비스 제공 및 반려동물 카페와 놀이시설 등을 갖추는 추세이다.

어조	2012년	2013년	2014년	CAGR*
업종	2012년	(2011년 대비)	(2012년 대비)	(2013년 대비)
반려동물	17.7%▲	19.5%▲	34.3%▲	23.6%▲
동물병원	5.2%▲	8.0%▲	16.5%▲	9.8%▲

(표 2-5) 반려동물 관련 업종 및 동물병원의 매출 증감률

¹⁷⁾ 데일리벳 2015. 3. 18. 전국동물병원 4000개 돌파 눈앞…6년사이 40.5%증가

3) 동물용의료기기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업체들은 대다수가 영세업체로서 다품목 소량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려동물수가 증가하고 수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전문화, 고급화에 의해 동물용의료기기 시장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고가의 첨단장비를 포함해 다양한종류의 의료기기들이 동물 진료에 이용하며, 2002년 동물용의료기기 품목신고 현황은 국내 15개 업체11개 품목에 불과했지만 2007년부터 등록업체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2008년 이후에는 매년 40건 이상, 2011년 이후에는 매년 60건 이상의 품목신고가 이뤄졌다. 2011년부터는 수입업보다 제조업 허가가 많아졌다. 2013년 3월 31일 기준으로 98개 제조업체와 74개의 수입업체에서 총 703개의 품목이동물용의료기기로 등록됐고 이중 18개 업체의 41개 품목이 취소돼 현재는 154개 업체에서 662개 품목이 등록되었다.

4) 동물용의약품18)

동물용의약품 시장도 국내생산품과 수입완제품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동물용의약품의 수출 역시 원료와 완제품 모두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림 2-10> 동물의약품 수출 현황

¹⁸⁾ 그림 출처 - 김종호, 동물용의약품산업 현황과 수출시장 개척

동물의약품 내수시장 현황(단위: 억원)



<그림 2-11> 동물의약품 내수시장 현황

구분	제조업체	수입업체	계
동물용의약품	76	146	222
동물용의약외품	62	8	70
동물용의료기기	92	97	189
계	230	251	481

(표 2-6)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 현황

บราป ⊐.01	제조	업체	수입	업체
판매금액	업체 수	점유율(%)	업체 수	점유율(%)
500억 이상	1	15.3	_	_
250억 ~ 500억	6	30.2	2	36.8
100억 ~ 250억	9	25.8	2	22.2
50억 ~ 100억	13	16.2	2	5.6
25억 ~ 50억	10	6.2	7	8.2
10억 ~ 25억	11	3.2	20	16.5
10억 미만	78	3.1	97	10.7
계	128	100	130	100

(표 2-7)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 판매금액 분포 현황

다. 새로운 영역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

1) 보험

국내 반려동물 보험 시장은 미개척 분야로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과거 2008년에 일부 업체가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동물의료비 기준 책정이 어렵고 수익성이 낮아 2010년에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1월부터 반려동물등록제의 시행이 확정되자, 일부 업체들이 새로운 애견보험 상품을 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다양한 보험 상품이 부족하여 반려동물주인이 대부분 비싼 수의의료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의진료 비용의 지출 비중이 커지면서 반려동물 보험 시장 역시 새롭게 성장할 전망이다. 반려동물 판매사업자를 위한 선천성·유전 질병이나 암 또는 상해 등에 대한 담보상품이 개발되고, 그 외 정기검사, 사망보험금, 수태 합병증, 치료비 보상 등 특약조건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반려동물 수요의 증가로 동물에 의한 제3자 배상책임(민법 제759조 제2항) 사례가 증가하는 것도 보험 산업의 성장 요인이 될 것이다.

동물보험의 경우 영국의 가입률 20%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보험가입률은 0.1% 미만이며, 이를 취급하는 보험회사도 2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보험의 경우 동물에게는 국민건강보험 같은 제도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사람에 비하여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반려동물 보험업은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매년 17%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산업 중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여가산업

반려동물 훈련학교, 모델 에이전시, 미용업 등 서비스 부문의 시장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전망이다. 현재 동물 미용은 위생과 청결관리가 주목적이었으나, 향후에는 이와 함께 심미적인 요소를 더욱 중요시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펫호텔, 동반 여행상품 등 다양한 업태가 출현할 전망이다.

3) 장묘

(단위: 개, 명, 십억 원, %)

	사업	체수	종사	자수	미국	출액
업종별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반려동물장묘 및	586	701	986	1110	25	34
보호서비스업	300	701	300	1110	20	04
증감률	0	.9	12	.6	3	36

(표 2-8)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성장 추이

3.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산업연관분석

가.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재분류

산업연관표는 일정한 산업분류에 의한 각 산업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표에 따른 산업의 재분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분류를 위해 통계청이 정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반려동물, 반려, 애견, 수의' 등의 색인어가 포함된 분류코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반려동물 관련 산업 - 축산, 사료

코드	분류명	설명/색인어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소, 돼지, 가금류, 말 및 양을 제외)을 번식·증식·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강아지사육, 개사육, 거북이사육, 고양이사육, 곤충류사육, 반려 견사육, 반려동물사육(개,고양이,원숭이)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축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먹이주기대리, 동물사료제공서비스, 동물사육관련서비스, 반려동물털손질서비스, 혈통검사서비스(동물)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반려동물용 조제사료를 포함하여 실험용 동물, 가축 및 가금 등의 각종 동물사육용 또는 어류양식용 배합사료, 조제사료, 배합사료 용 혼합조제품 및 조제보조사료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 다. 개껌 및 비스킷 등의 반려동물용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

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동물사료용의 재료와 줄기, 뿌리 등을 절단·분쇄하는 활동은 여기에 포함된다.
/개껌제조(반려동물용기호품), 개사료제조, 관상어용사료제조, 동물기호식품제조(비스킷,개껌등), 동물사료용빵가루제조, 동물사료제조, 동물사료제조, 물고기사료 제조, 배합사료제조(동물용), 보조사료제조, 비스켓 제조, 동물용, 비스킷 제조, 동물용, 비스킷제조(동물용), 사료용조제품제조, 사료제조(배합,보조,단미사료), 사료첨가제제조, 반려증물 사료 제조, 반려동물기호식품제조(비스킷,개껌등), 반려동물용사료제조

(표 2-9)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반려동물 관련 산업 - 축산, 사료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반려동물 관련 산업 - 의료 관련

코드	분류명	설명/색인어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의료용 또는 기타 용도의 방사선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촬영용, 진단용, 치료용의 것도 포함된다. /수의용엑스선사용기기제조
27193	의료용 가구 제조업	내과, 외과, 치과용의 각종 전문가구, 이·미용실용 의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회전 또는 상·하 이동장치가 결합된 의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의용도 포함된다. /가구제조(의료용및수의용), 검사대제조(의료및수의용)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의료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동물용의약기계기구제조, 동물전용보건위생기계기구제조, 동물전용보정기구제조, 동물전용표시기구제조, 동물치료보조기제조, 수의용기기제조, 표시기구제조(동물전용)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농업, 임업, 어업 및 수의학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의학연구
73100	수의업	축산동물 및 반려용 동물에 대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축동물진료소, 가축병원, 가축보건위생소, 가축진료소, 가축치료서비스, 개진료소, 개치료서비스, 동물관련임상병리서비스, 동물구급서비스, 동물병원, 동물치료서비스, 병원(가축병원), 수의관련실험서비스, 수의병원, 수의서비스(가축치료), 수의업, 애견병원, 반려동물치료서비스

(표 2-10)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반려동물 관련 산업 - 의료 관련

③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반려동물 관련 산업 - 도소매

코드	분류명	설명/색인어
46101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 동물 중개업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농·축산물, 산동물 및 수렵물의 거래에 관련 된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거래중개, 동물위탁판매, 동물중개, 애견중개
46203	사료 도매업	사료용 농산물 및 각종 사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사료도매, 애견사료도매
46205	산동물 도매업	가축, 반려용 동물 및 기타 살아있는 육지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 동을 말한다. /애견도매(관련서비스제외), 반려용동물도매
46592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구도매(의료용및수의용), 수의기기도매, 수의용가구도매
47852	반려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반려용 동물 및 관련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축사료소매(반려동물용), 관상어소매(열대어등), 금붕어소매, 물고기소매(관상용), 사료소매(반려동물용), 새모이소매(반려동물용), 새소매(관상용), 수족관(관상용물고기소매), 애견사료소매, 애견센터(반려동물소매), 애견소매, 애견소품소매, 애견용품소매, 반려경소매, 반려동물소매, 반려용공품소매, 반려용공동물소매, 반려용조류소매, 열대어소매, 열대어수족관소매, 조류판매(관상용), 햄스터소매

(표 2-11)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반려동물 관련 산업 - 도소매

④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반려동물 관련 산업 - 기타 산업(행정, 교육, 미용 등)

코드	분류명	설명/색인어
		농림수산 관련 지원관리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4222	농림수산 행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의약품검사소, 수의과학연구, 수의업무
		행정
	키티 키스 미 되어하려하	기타의 기술 및 직업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산
85659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	업활동을 말한다.
	원	/애견미용전문학원
		반려동물을 훈련, 손질, 보호, 장례 등 반려동물관련 서비스를 제
	바거드ㅁ 자미 미 ㅂㅎ	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6995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	/애견미용서비스, 애견미용실, 애견호텔, 애견훈련소, 반려견훈련
	서비스업	소, 반려동물목욕서비스, 반려동물장례식장, 반려동물화장터운영,
		유기견보호센터

(표 2-12)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반려동물 관련 산업 - 기타 산업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2012년 한국은행이 작성한 384부문의 산업연관표를 25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여 통합한다. 먼저 반려동물 사육이 '그 외 기타 축산업'에 포함되므로 산업연관표의 '기타 축산' 부문이 본 연구가 주목하는 반려동물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료, 판매, 보험, 의료, 공공, 여가, 미용 등 반려동물과 연관될 수 있는 산업을 개별산업으로 분리하고, 기타 산업들은 대분류를 기초로 통합한다.

	부문명칭	세부산업
1	반려동물	기타 축산, 반려동물 사육
2	농림수산품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3	농림어업 서비스	축산 관련 서비스
4	광산품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금속 및 비금속광물
5	사료	사료
6	음식료품	식료품, 음료품, 주류, 담배
7	의류	섬유 및 의복, 가죽제품
8	의약품	의약품
9	전기 및 전자기기	전기장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가정용 전기기기
10	의료용 기기	의료용기기
11	가구	목재 가구, 금속 가구, 기타 가구
12	기타 제조업	목재 및 종이, 인쇄,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 제품, 기계 및 장비,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제품
13	전력, 가스 및 수도	전력, 가스 및 증기,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14	건설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토목건설
15	도소매	도매, 소매, 중개
16	운송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17	음식점 및 숙박	음식점 및 주점, 숙박
18	정보통신 및 방송	통신, 방송,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관리, 출판, 영상, 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
19	보험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보험 보조서비스
20	연구개발	국공립, 비영리, 산업, 기업내 연구개발
21	공공행정	중앙정부, 지방정부
22	의료 및 보건	국공립, 비영리, 산업
23	여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
24	미용	미용 관련 서비스
25	기타 서비스	금융, 부동산 및 임대, 전문, 과학 및 기술, 연구개발, 사업지원서비스, 교육, 사회복지, 연극, 음악, 기타예술, 스포츠 및 오락, 사회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

(표 2-13)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재분류

나. 산업연관표

1) 투입산출표 작성

앞서 재분류한 산업 분류를 기초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투입산출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투입산출표를 살펴보면, 각 산업의 총생산액과 총투입액 등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행 방향의 투입계수와 열 방향의 배분계수를 산출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투입산출구조 및 전방연쇄효과, 후방연쇄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투입산출표>

	반려동 물	동담수 사포	농림어 업 서 비스	사료	이약부	의료 용 기기	도소매	음식점 및 숙 박	보험	연구개 발	공공행 저	의료 및 보 건	여가	미용	기타	중간수요 계	최종수요 계	총수요계
반려동물														409,337	612,293	1,021,630		
농림수산업													49,613,419	17,818,854	67,432,273			
농림어업 서비스																1,406,146	342	1,406,488
사료																10,059,002	283,712	10,342,714
의약품																16,756,472	3,721,713	20,478,185
의료용 기기																2,965,361	5,181,024	8,146,385
도소매																131,821,13 7	100,000,46 1	231,821,59 8
음식점 및 숙박							(생략)							36,261,111	65,704,851	101,965,96 2
보험																27,572,766	33,829,298	61,402,064
연구개발																4,034,391	58,153,557	62,187,948
공공행정																2,792,009	102,315,25 3	105,107,26 2
의료 및 보건																7,996,496	72,190,473	80,186,969
여가																360,138	949,069	1,309,207
미용																750,754	6,933,849	7,684,603
기타																	•••	•••
중간투입계	334,360	24,654,0 16	745,372	8,928,83 0	39,196,04 2	3,535,07 9	112,170, 987	57,780,9 67	36,629,8 50	22,802,0 52	24,842,2 53	37,858,1 35	398,298	3,736,70 4		2,328,349,1 24		4,449,147, 987
부가가치계	R40 882	29,719,3 38	657,125	1,068,34 8	5,175,45 9			34,416,3 82	23,491,5 38	30,427,7 37	79,694,6 73	642,071,2 65	761,160	3,897,47 2		1,251,455,2 61		
총투입계	In / 5 / 4/	54,373,3 54	1,402,49 7	9,997,17 8	714,371,5 01				60,121,3 88	53,229,7 89	104,536, 926	79,929,4 00	1,159,45 8	7,634,17 6	•••	3,579,804,3 85		

(표 2-14) 반려동물 연관산업 투입산출표

2)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투입구조

가) 투입계수

투입계수는 각 부문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각종 원재료, 연료 등 중간투입액과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등 부가가치를 해당 상품의 총투입액(=총산출액)으로 나는 것으로서, 각 부문의 생산물 1단위 생산에 필요한 각종 중간재 및 부가가치의 단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투입계수는 후방연쇄효과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나) 중간투입률과 부가가치율

다음의 투입계수표를 살펴보면, 반려동물 산업의 투입구조에서 사료산업이 약 2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산업의 부가가치율을 살펴보면, 연구개발과 공공행정, 의료, 여가, 미용 등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이 모두 5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료산업의 경우 약 10.7%로 가장 낮았다.

	반려동물	농림수산	농림어업	사료	의약품	의료용	도소매	음식점	보험	연구개발	공공행정	의료 및	여가	미용
		품	서비스			기기		및 숙박				보건		
반려동물	1.71	0.05	0.00	0.00	0.40	0.00	0.00	0.03	0.00	0.04	0.00	0.07	0.00	0.00
농림수산업	3.63	3.78	1.53	34.73	2.54	0.01	0.03	7.23	0.02	0.18	0.04	0.81	0.28	0.02
농림어업 서비스	0.00	2.5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2	0.00	0.00	0.00
광산품	0.00	0.00	0.00	0.10	0.00	0.00	0.00	0.00	0.00	0.02	0.00	0.00	0.00	0.00
사료	27.17	15.96	0.00	2.64	0.19	0.00	0.00	0.00	0.00	0.03	0.01	0.07	11.22	0.00
음식료품	1.08	0.26	0.35	24.12	1.45	0.09	0.36	26.40	0.23	0.91	0.15	0.18	1.02	0.19
의류	0.24	0.81	0.63	0.09	0.17	0.90	0.77	0.46	0.55	0.36	0.41	0.46	0.16	1.62
의약품	0.43	0.11	0.77	2.38	13.18	0.32	0.01	0.02	0.12	0.50	0.10	16.90	0.02	0.01
전기 및 전자기기	0.00	0.20	0.56	0.08	0.10	16.69	0.77	0.60	0.92	5.59	0.35	0.19	0.57	3.03
의료용 기기	0.00	0.00	0.09	0.03	0.00	8.47	0.03	0.05	0.08	0.08	0.04	2.06	0.05	0.08
가구	0.00	0.00	0.04	0.00	0.00	0.23	0.10	0.16	0.20	0.10	0.01	0.04	0.18	0.37
기타 제조업	5.17	13.12	15.50	4.32	22.95	23.93	7.13	5.73	2.38	12.05	4.10	4.49	3.35	18.17
전력, 가스 및 수도	0.28	0.36	11.39	1.84	1.01	0.47	2.27	3.92	2.07	3.20	1.60	3.33	3.41	3.44
건설	0.12	0.16	0.07	0.05	0.08	0.18	0.08	0.05	0.05	0.34	2.09	0.12	0.18	0.05
도소매	3.79	3.33	2.35	10.27	12.75	7.34	1.20	7.28	0.84	2.27	0.74	5.71	2.11	5.88
운송	1.22	1.00	1.88	4.15	2.86	1.43	7.52	0.26	1.67	1.20	1.15	0.24	0.79	0.22
음식점 및 숙박	0.16	0.25	3.20	0.35	0.40	0.84	3.04	0.47	2.07	4.54	1.63	0.55	1.25	1.75
정보통신 및 방송	0.18	0.09	4.54	0.37	0.45	0.51	6.76	0.66	6.71	2.56	2.22	0.34	1.93	1.24
보험	0.30	0.17	0.22	0.24	0.67	0.59	1.70	0.48	11.54	0.23	0.17	1.38	0.48	0.62
연구개발	0.01	0.00	0.02	0.03	0.61	0.66	0.05	0.00	0.01	0.09	0.00	0.00	0.00	0.00
공공행정	0.00	0.23	0.01	0.01	0.02	0.04	0.07	0.05	0.23	0.03	0.00	0.07	0.38	0.17
의료 및 보건	0.29	0.18	1.24	0.05	0.12	0.26	0.85	0.13	0.47	0.14	0.39	0.59	0.82	0.21
여가	0.00	0.00	0.03	0.00	0.00	0.01	0.03	0.00	0.02	0.04	0.01	0.00	0.01	0.02
미용	0.00	0.01	0.07	0.01	0.01	0.02	0.07	0.00	0.06	0.10	0.00	0.01	0.03	0.04
기타 서비스	2.58	1.77	3.95	2.30	3.58	3.91	15.25	5.76	24.43	5.10	7.00	6.54	4.34	11.11
중간투입계	49.52	45.34	53.15	89.31	63.99	67.53	49.00	62.67	60.93	42.84	23.76	47.36	34.35	48.95
부가가치계	50.48	54.66	46.85	10.69	36.01	32.47	51.00	37.33	39.07	57.16	76.24	52.64	65.65	51.05
총투입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2-15)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투입계수*100

3)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배분구조

배분계수는 각 부문별 중간수요액을 부문별 총산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러한 배분계수는 한 부문이 다른 부문으로 중간수요됨에 따른 생산파급효과를 분석하기 때문에 전방연쇄효과를 분석하는데 보다 유용하다.

농림수산품 농림어업 서비스	물 1.13 2.43	산업 0.04	업 서비스			기기		및 숙박		발	74	보건		1 1
농림수산품 농림어업 서비스	2.43	0.04						※ 국리		2	정	보신		
농림수산품 농림어업 서비스	2.43	0.04												
농림어업 서비스			0.00	1.77	0.01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05	98.71	83.93	0.30	0.01	0.78	0.13	0.15	0.00	0.12	0.12	0.09	0.04
	0.00	0.03	0.00	0.00	0.05	0.02	0.01	0.04	0.01	0.00	0.00	0.02	0.03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3	0.03	0.05	0.00	0.00	0.01	0.03	0.01
	0.00	5.15	0.00	2.55	1.16	0.03	0.44	0.03	0.04	0.01	0.00	0.01	0.02	0.01
	9.35	46.45	0.00	0.00	0.35	0.01	3.65	0.22	0.46	0.06	0.02	0.13	0.15	0.07
의류	9.64	0.99	0.00	0.00	0.00	0.00	3.06	0.41	0.56	0.04	0.01	0.09	0.29	0.12
의약품	5.68	0.54	0.00	0.26	9.25	0.01	0.79	0.06	0.16	0.14	0.00	0.02	0.04	0.02
전기 및 전자기기	0.00	0.02	0.00	0.00	0.04	0.22	6.99	1.10	1.49	3.01	0.04	0.29	0.76	0.33
	0.00	0.00	0.00	0.00	0.08	5.44	0.17	0.04	0.05	0.06	0.00	0.02	0.03	0.01
가구	0.00	0.01	0.00	0.00	0.00	0.11	0.70	0.03	0.12	0.01	0.00	0.02	0.02	0.01
기타 제조업	1.44	4.11	0.00	0.00	0.53	0.82	21.28	5.07	5.50	2.26	0.14	1.19	3.56	1.55
전력, 가스 및 수도	0.00	0.01	0.00	0.00	0.20	0.20	0.63	0.41	0.49	0.07	0.03	0.13	0.29	0.12
건설	0.00	1.04	0.04	0.00	0.02	0.13	2.89	0.39	1.84	0.12	0.04	1.11	0.28	0.12
도소매	0.00	0.10	0.00	0.00	0.08	0.80	1.19	6.83	6.33	0.18	0.15	2.44	4.98	2.12
운송	0.00	0.02	0.00	0.00	0.36	0.87	1.41	1.46	1.98	0.02	0.96	0.26	1.11	0.44
음식점 및 숙박	2.73	9.89	0.00	0.00	0.07	0.57	2.90	0.42	0.72	0.00	0.05	0.15	0.17	0.05
정보통신 및 방송	0.00	0.04	0.00	0.00	0.10	0.19	3.94	1.42	0.56	0.32	0.54	0.31	1.51	0.64
보험	0.00	0.02	0.00	0.00	0.36	0.56	0.22	1.22	11.29	0.01	0.13	0.35	1.13	0.44
연구개발	1.94	0.14	0.00	0.13	1.29	0.50	0.52	2.37	0.20	0.07	0.01	0.09	1.76	0.70
공공행정	0.11	0.06	1.22	0.15	0.53	0.52	0.33	1.67	0.29	0.00	0.00	0.51	0.51	0.03
의료 및 보건	5.61	0.96	0.00	0.56	65.97	20.17	1.97	0.43	1.80	0.00	0.05	0.59	0.29	0.12
여가	0.00	0.00	0.00	1.26	0.00	0.01	0.01	0.01	0.01	0.00	0.00	0.01	0.01	0.00
미용	0.00	0.00	0.00	0.00	0.00	0.07	0.19	0.13	0.08	0.00	0.01	0.02	0.09	0.04
기타 서비스	0.00	0.93	0.00	6.63	1.04	5.14	2.75	11.63	10.74	0.12	0.33	2.08	10.33	2.78
중간수요계 4	40.07	73.58	99.98	97.26	81.83	36.40	56.86	35.56	44.91	6.49	2.66	9.97	27.51	9.77
민간소비지출 4	47.80	23.20	0.00	1.72	9.54	4.97	28.11	55.02	51.86	0.00	1.03	29.78	66.82	89.09
정부소비지출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74	0.00	0.00	96.17	60.12	0.00	0.00
민간고정자본형성	9.17	0.51	0.00	0.00	0.00	27.55	4.89	0.00	0.00	75.15	0.00	0.00	0.00	0.00
정부고정자본형성	0.37	0.02	0.00	0.00	0.00	3.85	0.54	0.00	0.00	13.18	0.00	0.00	0.00	0.00
재고증감	1.46	1.42	0.00	0.26	-0.08	1.22	0.7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귀중품순취득	0.00	0.00	0.00	0.00	0.00	0.00	0.0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수출	1.13	1.28	0.02	0.76	8.71	26.01	8.82	7.68	3.24	5.18	0.14	0.12	5.67	1.14
최종수요계	59.93	26.42	0.02	2.74	18.17	63.60	43.14	64.44	55.09	93.51	97.34	90.03	72.49	90.23
총수요계 1	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2-16)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배분계수*100

다. 산업연관분석 실시

1)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는 한 부문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역행렬이라는 수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한다.

생산유발계수 : $(I-A)^{-1}$ (단, A는 투입계수행렬, I는 단위행렬)

	반려동물	농림수산 품	농림어업 서비스	사료	의약품	의료용 기기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보험	연구개발	공공행정	의료 및 보건	여가	미용
반려동물	1.018	0.001	0.000	0.001	0.005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2	0.000	0.000
농림수산업	0.198	1.135	0.032	0.536	0.053	0.011	0.015	0.220	0.013	0.022	0.008	0.024	0.074	0.012
농림어업 서비스	0.005	0.029	1.001	0.014	0.001	0.000	0.000	0.006	0.000	0.001	0.000	0.001	0.002	0.000
광산품	0.056	0.074	0.128	0.094	0.117	0.133	0.066	0.082	0.050	0.080	0.036	0.066	0.050	0.100
사료	0.317	0.186	0.006	1.115	0.012	0.002	0.003	0.037	0.003	0.004	0.002	0.006	0.128	0.002
음식료품	0.115	0.066	0.024	0.343	0.036	0.015	0.023	0.344	0.021	0.033	0.011	0.016	0.059	0.017
의류	0.013	0.021	0.018	0.019	0.015	0.028	0.020	0.019	0.017	0.013	0.010	0.015	0.009	0.034
의약품	0.016	0.008	0.012	0.033	1.154	0.006	0.003	0.003	0.004	0.007	0.002	0.197	0.006	0.001
전기 및 전자기기	0.024	0.031	0.050	0.040	0.048	0.344	0.050	0.041	0.051	0.121	0.024	0.034	0.029	0.086
의료용 기기	0.000	0.000	0.002	0.001	0.001	1.093	0.001	0.001	0.002	0.001	0.001	0.023	0.001	0.001
가구	0.002	0.002	0.003	0.003	0.004	0.007	0.004	0.004	0.005	0.004	0.002	0.003	0.003	0.007
기타 제조업	0.355	0.492	0.556	0.562	0.794	0.931	0.369	0.432	0.239	0.462	0.194	0.349	0.231	0.594
전력, 가스 및 수도	0.036	0.040	0.171	0.070	0.058	0.057	0.060	0.083	0.058	0.068	0.034	0.067	0.063	0.077
건설	0.004	0.004	0.004	0.004	0.004	0.006	0.005	0.004	0.005	0.006	0.023	0.004	0.004	0.004
도소매	0.116	0.097	0.074	0.212	0.204	0.152	1.056	0.151	0.047	0.067	0.028	0.114	0.065	0.106
운송	0.066	0.058	0.066	0.123	0.098	0.082	0.120	0.058	0.048	0.049	0.029	0.042	0.040	0.046
음식점 및 숙박	0.013	0.014	0.044	0.023	0.022	0.026	0.044	1.019	0.038	0.055	0.022	0.017	0.021	0.031
정보통신 및 방송	0.021	0.019	0.070	0.036	0.036	0.035	0.100	0.032	0.111	0.045	0.035	0.025	0.036	0.037
보험	0.012	0.010	0.011	0.016	0.020	0.019	0.028	0.016	1.140	0.010	0.006	0.024	0.011	0.016
연구개발	0.001	0.001	0.001	0.002	0.008	0.010	0.001	0.001	0.001	1.002	0.000	0.002	0.001	0.001
공공행정	0.001	0.003	0.001	0.003	0.002	0.002	0.003	0.002	0.004	0.001	1.001	0.002	0.005	0.003
의료 및 보건	0.006	0.004	0.015	0.006	0.005	0.006	0.011	0.005	0.008	0.003	0.005	1.009	0.010	0.005
여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1.000	0.000
미용	0.000	0.000	0.001	0.001	0.000	0.001	0.001	0.000	0.001	0.001	0.000	0.000	0.000	1.001
기타 서비스	0.099	0.085	0.121	0.143	0.146	0.149	0.246	0.149	0.367	0.118	0.111	0.141	0.098	0.195

(표 2-17)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이와 같이 도출한 생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하여 어느 부문에 대한 수요, 투자 등의 증가가 각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등을 활용하여 전

방연쇄효과, 후방연쇄효과 등 각 산업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2)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 등)의 변동이 각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생산에 수반되는 부가가치, 수입 및 고용 등 여타 변수들과 생산과의 관계를 통하여 최종수요의 변동이 부가가치, 수입 및 고용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계측할 수 있게 된다. 즉, 생산유발계수행렬에 최종수요항목별 금액(Y_A)을 곱하면 각 항목별 생산유발액을 도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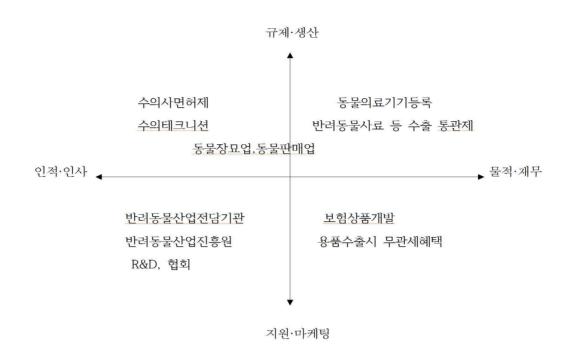
최종수요항목별 생산유발액 : $(I-A)^{-1}Y_A$

예를 들어, 사료 산업의 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 등)가 100 증가한 경우, 아래 식에서 우변의 벡터값만큼 각 산업의 생산이 유발되며, 이는 곧 사료 산업 육성의 파급효과라고 할 것이다.

$$\begin{pmatrix} .0.001 & . & & & 0 \\ .0.536 & . & & 0 \\ .0.014 & . & & 0 \\ .0.094 & . & & 0 \\ .1.115 & . & & 100 \\ . & . & . & & 0 \\ . & . & . & & 0 \\ . & . & . & & 0 \\ . & . & . & & 0 \\ . & . & . & & 0 \\ . & . & . & & 0 \\ . & . & . & 0 \\ 0 & .143 & . & 0 \end{pmatrix} = \begin{bmatrix} 0.1 \\ 53.6 \\ 1.4 \\ 9.1 \\ 111.5 \\ . \\ . \\ . \\ 14.3 \\ 14.3 \\ \end{bmatrix}$$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皿. 반려동물산업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



1. 규제 관련 제도 및 정책

가. 동물등록제 관련

1) 영국

2016년 4월부터 자국 내 모든 반려견들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¹⁹⁾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는 "영국 정부가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견 증가율을 낮추고 매년 유기견으로 인해 사용되는 5,700만 파운드(한화 약 97억 원)의 세금 및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2016년 4월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매해 110,000마리 반려견이 유기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97억 원 가량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 길을 잃은 유실견의 경우에도 소유주를 찾을 수 없는경우가 많아서 이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마이크로칩을 사용한 동물등록제 시행을 예고했다.

¹⁹⁾ 데일리펫 2013. 2. 7. 영국 2016년 반려견 의무등록 실시

2) 프랑스

프랑스는 반려동물 등록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증에는 반려동물에 삽입되어 있는 칩의 넘버와 바코드, 성별, 생일, 종류, 털 길이, 색상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반려동물 주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록되어 있다. 주인이 바뀔 때를 대비하여 아래에 빈칸이 있으며 입양을 보내는 등으로 주인이 바뀌게 되면 새 주인의 주소를 써서 전 주인이 서명을 한 후 동물협회 등에 보내야 한다. 또한 출생 시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백신이나 기생충 예방약 등을 복용하고 맞았다는 확인서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진료수첩 내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맞아야 하는 백신 등을 맞았다는 의사의 확인과 서명, 날짜 등이 적혀있다.

프랑스의 경우 반려동물이 태어난 경우 의무적으로 칩 삽입을 하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는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칩 삽입 의무화제도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유기동물이 발견되면 보호센터에서 칩의 정보를 취득하여 분실신고가 되어 있는 반려동물의 경우 주인에게 인도하고, 분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고의적으로 유기한 경우라면 벌금(약 4,000만 원) 등이 부과된다. 즉 반려동물 칩은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유기동물을 주인에게 인도하는 역할을하며 병원진료를 받을 때에도 쓰인다.

3) 독일

등록을 한 경우 개에게 허가증(신분증)이 발급되고, 신분증을 달지 않고 밖에 나갈 수 없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포탈죄가 적용된다. 독일은 개에게도 세금(Hundesteuer)을 받기때문이다. 독일에는 일반 시민이 개를 입양할 경우 시청에 개를 등록해야 한다. 매년 개의 세금을 낸다.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동물보호소에 자신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것을 오히려 환영한다. 개 세금은 지역이나 개에 따라 차이가 난다. 1년에 90유로(14만원)~600유로(90만원)로 다양하다. 개의 크기에 따라, 또 위험한 종 목록에 포함돼 있으면 세금이 더 올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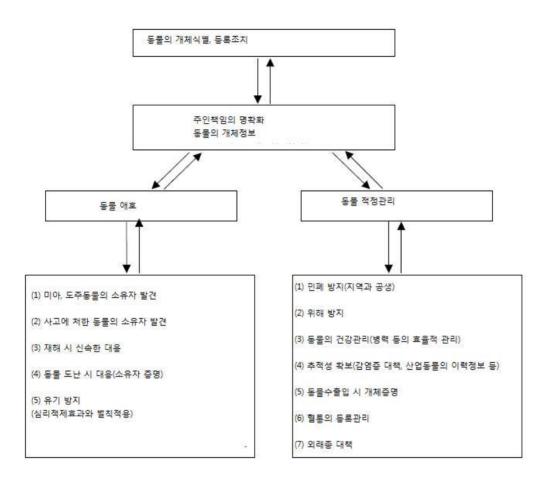
4) 일본20)

가) 개체식별의 목적과 효과

개체식별과 등록조치는 일반적으로는 개체의 식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유자 및 동물의 개

²⁰⁾ 신세이 강아지 등록 신청 · 등록 · 면허 교부, 서면절차 및 전자 민원 시스템 절차의 일반정보

체정보를 명백히 하고, 이를 통해 부양되는 동물의 적정하고 유효한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3-1> 반려동물 개체식별의 목적과 효과

나) 일본의 개의 등록에 관한 제도

개의 소유자는 개를 취득한 날(생후 90일 이내의 개를 취득한 경우에는 생후 90일을 경과한후)로부터 30일 이내에 (1)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은 그 명칭 및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2) 개의 소재지 (3) 개의 종류, (4) 개의 생년월일, (5) 개의 털색깔, (6) 개의 성별, (7) 개의 이름, (8) (5) 이외에 개의 특징이 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정촌장(특별구에서는 특별구장)에게 개의 등록을 신청하고, 원부에 등록을 받아 개의 감찰(鑑札)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 관련 법

(1) 광견병예방법

광견병예방법

제4조(등록)

- ① 개의 소유자는 개를 취득한 날(생후 90일 이내의 개를 취득한 경우에는 생후 90일을 경과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정촌장(특별구에서 는 구장. 이하 동일)에게 개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단 이 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받은 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 ② 시정촌장은 전항의 등록 신청이 있었던 때에는 원부에 등록하고, 그 개의 소유자에게 개의 감찰을 교부해야 한다.
- ③ 개의 소유자는 전항의 감찰을 개에게 부착해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받은 개의 소유자는 개가 사망한 때 또는 개의 소재지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의 소재지(개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그 개의 신소재지)를 관할 시정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받은 개에 관해서 소유자의 변경이 있었던 때에는 신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정촌장에게 신고해야 하다.
- ⑥ 전 각 항에 정하는 것 외에 개의 등록 및 감찰의 교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정령에서 정한다.

벌칙

제27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만 엔의 벌금에 처한다.

1호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해서 개의 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감찰을 개에게 부착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

(2) 광견병예방법 시행규칙(후생성령 제52호)

광견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등록의 신청) 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호 소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은 그 명칭 및 주 사무소의 소재지.)

2호 개의 소재지

3호 개의 종류

4호 개의 생년월일

5호 개의 털색

6호 개의 성별

7호 개의 이름

8호 전 5호 외에 개의 특징이 되는 사항

제4조(원부의 기재사항) 법 제4조2항의 원부에는 전조 제1항 각호에 게재하는 사항,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5조(감찰의 내용 등)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시정촌장이 교부하는 감찰은, 다음에 게재하는 조건을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단 시정촌장이 별도로 감찰을 정한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게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한도에서 해당 감찰을 사용할 수 있다.

1호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만들어지고, 목끈, 몸통끈 기타 그 개가 착용하는 것에 부착할 수 있는 것 2호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 1 '개감찰'이라는 문자
- 2 등록번호
- 3 도도부현명 또는 도도부헌명을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문자, 숫자 등
- 4 시정촌의 명칭을 특정할 수 있는 문자, 숫자 등

제7조(변경의 신고사항) 법 제4조제4항에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개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로 한다.

제8조(개 사망의 신고)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개 사망의 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호 사망한 개의 사망 당시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호 등록연도 및 등록번호

3호 사망 연월일

2항 전항의 신고서에는 감찰 및 주사완료표를 첨부해야 한다.

제9조(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법 제4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을 등록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호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호 등록연도 및 등록번호

3호 변경한 사항(해당 사항에 관련된 신구 대조를 명시할 것)

라) 개 등록 관련 통계

(1) 도도부현별 개 등록 두수와 예방주사두수(후생노동성 홈페이지)21)

		2014	년도(연도말	현재)		2013년도(연도말 현재)						
	등록두수	예방주사	주사율	배회견의 반환		등록두수	예방주사	주사율	배회견의 반환			
		두수		억류	반환		두수		억류	반환		
전국	6,626,514	4,744,364	71.60%	35,599	12,760	6,747,201	4,899,484	72.60%	38,961	13,852		
북해도	266,351	187,728	70.50%	1,233	537	273,549	189,964	69.40%	1,522	613		
아오모리	64,445	54,817	85.10%	402	135	66,436	56,195	84.60%	449	154		
이와테	72,152	62,197	86.20%	302	181	74,020	68,166	92.10%	304	173		
미야기	128,784	105,374	81.80%	697	424	131,255	107,861	82.20%	792	457		
아키타	44,571	35,430	79.50%	172	76	45,668	36,209	79.30%	172	67		
야마가타	43,579	40,504	92.90%	224	146	44,031	41,129	93.40%	239	155		
후쿠시마	109,262	80,447	73.60%	953	453	111,593	82,805	74.20%	1,004	473		
이바라키	181,753	117,497	64.60%	2,048	146	183,820	122,032	66.40%	2,181	139		
토치	114,851	78,790	68.60%	1,347	273	116,689	80,685	69.10%	1,491	311		
군마	125,679	95,648	76.10%	1,585	576	128,202	99,251	77.40%	1,612	682		
사이타마	372,492	267,678	71.90%	1,507	709	375,125	274,208	73.10%	1,733	841		
치바	328,617	238,512	72.60%	1,727	500	334,281	241,571	72.30%	2,158	580		
도쿄	518,121	379,512	73.20%	89	69	516,567	380,188	73.60%	203	165		
카나가와	477,042	360,738	75.60%	980	633	501,830	385,626	76.80%	1,099	662		
니가타	100,607	90,030	89.50%	381	279	105,038	90,365	86.00%	421	285		
도야마	48,517	36,635	75.50%	145	95	49,534	38,469	77.70%	240	163		
이시카와	51,111	35,976	70.40%	179	109	50,357	35,607	70.70%	253	158		
후쿠이	33,197	23,809	71.70%	168	112	33,756	24,029	71.20%	170	125		
야마나시	52,255	39,657	75.90%	630	460	54,010	41,609	77.00%	721	499		
나가노	118,346	110,173	93.10%	783	555	121,791	113,856	93.50%	908	626		
기후	132,953	102,105	76.80%	685	385	134,783	106,752	79.20%	747	372		
시즈오카	227,181	178,972	78.80%	878	529	230,177	184,342	80.10%	832	494		
아이	462,776	355,298	76.80%	1,697	982	466,637	365,568	78.30%	1,713	946		
미에	132,046	89,311	67.60%	599	335	135,671	92,435	68.10%	537	324		
시가	82,072	55,950	68.20%	486	198	82,662	57,732	69.80%	467	164		
교토	121,733	80,382	66.00%	222	74	121,530	81,534	67.10%	364	113		
오사카	383,463	239,795	62.50%	212	80	382,036	245,096	64.20%	326	154		
효고	312,690	212,300	67.90%	368	80	316,557	218,008	68.90%	448	70		
나라	60,157	43,594	72.50%	191	72	60,776	45,140	74.30%	287	89		
와카야마	49,121	30,771	62.60%	324	84	49,455	31,256	63.20%	274	86		
돗토리	24,673	18,255	74.00%	185	108	25,908	18,945	73.10%	263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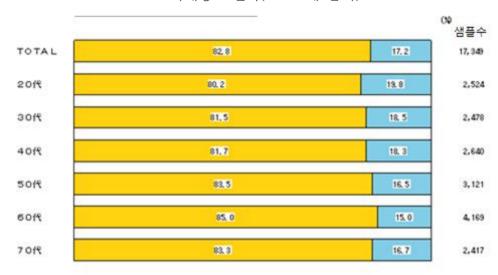
²¹⁾ 平成25年度 都道府県別の犬の登録頭数と予防注射頭数等(平成21年度~平成26年度)

시마네	37,198	28,379	76.30%	209	78	38,245	29,392	76.90%	258	102
오카야마	104,658	61,979	59.20%	773	195	105,159	60,776	57.80%	933	195
히로시마	144,704	100,241	69.30%	390	74	154,407	109,116	70.70%	470	40
야마구치	83,868	61,282	73.10%	1,222	133	85,685	63,466	74.10%	1,321	157
도쿠시마	41,046	25,576	62.30%	847	97	42,370	26,231	61.90%	1,027	79
카가와	70,816	42,359	59.80%	315	25	70,370	43,869	62.30%	290	24
에히메	82,934	49,122	59.20%	709	119	83,774	49,761	59.40%	657	114
고치	47,220	30,686	65.00%	414	113	47,002	31,208	66.40%	443	101
후쿠오카	262,130	152,914	58.30%	798	259	270,824	172,998	63.90%	1,009	360
사가	45,373	30,748	67.80%	415	118	46,462	32,444	69.80%	427	146
나가사키	69,003	51,154	74.10%	856	222	71,348	52,705	73.90%	760	170
쿠마모토	105,202	72,956	69.30%	1,904	522	109,897	75,233	68.50%	2,157	486
오이타	67,124	39,886	59.40%	750	254	68,233	42,995	63.00%	783	259
미야자키	62,896	46,369	73.70%	1,147	425	65,350	47,222	72.30%	1,204	451
가고시마	94,694	69,130	73.00%	1,348	469	97,667	72,342	74.10%	1,434	459
오키나와	67,051	33,698	50.30%	2,103	262	66,664	33,093	49.60%	1,858	452

(표 3-1) 도도부현별 개 등록 두수와 예방주사 두수

(2) 과거 10년간 사육한 개의 신고 및 등록 유무22)

조사대상 : 전국(20~79세 남녀)



노란색 : 신고 및 등록했다.

파란색 : 신고 및 등록하지 않았다.

<그림 3-2> 과거 10년간 사육한 개의 신고 및 등록 유무

²²⁾ 펫푸드협회 2015년 개고양이 사육실태조사, 연령대별

마) 개체인식 방법

일본에서 개체식별 방법으로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는 목줄 및 명찰, 다리에 고리표시, 마이크로칩, DNA감정 등을 들 수 있다.²³⁾ 또한 2006년 1월 20일 환경성 고시 제23호 '동물이 자기소유임을 밝히기 위한 조치에 관해서'에서는 가정동물 및 전시동물의 식별기구로서 '소유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한 목줄, 명찰 또는 소유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기호가 부착된마이크로칩, 문신, 다리에 고리표시하는 것을 기재하고 있으며, 이 중 목줄, 명찰 등 경시적 변화에 따라 탈락하거나 소실될 우려가 높은 식별기구를 장착하거나 시술하는 경우에는 보완적인 조치로서 가능한 한 마이크로칩, 다리에 고리표시하는 것과 같이 내구성이 높은 식별기구를 병용해서 장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동물의 개체식별 방법에는 동물종,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하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법과 각각의 특징을 제시한다.

	장점	단점				
	장착이 용이	위조, 복제가 용이하고 독자성이 없다				
목줄	동물 몸에 부담이 적다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저렴하다	경년열화된다				
명찰	사육자의 이해를 얻기 쉽다	식별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 몸에 접촉				
	특별한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필요가 있다				
	대형동물부터 소형동물까지 대응가능					
	복제, 위조되기 어렵다	복제, 위조를 완전히 막을 수 없어서 등록번				
다리에	탈락 가능성이 적다	호의 독자성 확보가 어렵다				
고리표	경년열화가 적다	장착자, 장착기관이 적다				
시	장착은 기술적으로 용이	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 몸에 접촉				
	동물 몸에 부담이 적다	할 필요가 있다				
	저렴하다					
	대형동물부터 소형동물까지 대부분의 동물에					
	대응가능	체내에 이물을 삽입하는 것에 관해서 사육자				
	복제, 위조가 거의 불가능해서 독자성 확보	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				
마이크	가능	비교적 고액이다				
로칩	탈락 불가능	조치가 되었는지 시야확인이 어렵다				
	삽입은 수의사에게 거의 한정되나, 기술적으	주위에 금속이 있으면 판독 감도가 저하된다				
	로는 용이	판독기가 필요하다				
	등록번호 판독이 용이하고, 반드시동물 몸에					

²³⁾ 마이크로칩에 의한 동물의 개체식별 개요, 2005년3월 환경성 보고서

	접촉할 필요가 없다 동물 몸에 부담이 비교적 적다 동물 표면의 오염이나 물의 영향 적다 판독 결과를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등 입력 실수 방지가 가능	
DNA감 정	대형동물부터 소형동물까지 대응가능 독자성 확보가능 탈락의 걱정이 없어서 확실성 높다 경년변화가 없으므로 영속성 높다 동물의 몸에 부담이 적다	감정을 위한 검사기관이 적다 감정에 장시간을 요함 검사 방법에 따라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가능 성 있음 데이터 조회시마다 감정이 필요함 감정을 위해서 동물 몸에 접촉할 필요가 있음 감정비용이 비교적 고액임 시야확인 불가능

(표 3-2) 반려동물 개체인식 방법별 장단점

일본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2년 9월 5일 법률 제79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마이크로칩의 장착 등)

제14조 국가는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개, 고양이 등에 마이크로칩을 장착하는 것이 당연히 개, 고양이 등의 건강 및 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것임에 비추어, 개, 고양이 등이 장착해야 하는 마이크로칩에 관해서, 그 장착을 의무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의 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 장착에 관한 계발 및 식별에 관련된 번호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제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기로 한다.

2 항 국가는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개, 고양이 등에 마이크로칩을 장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의 현황에 관해서, 이 법률 시행 후 5년을 기준으로, 전 항의 규정에 의해 강구한 시책의 결과, 마이크로칩의 장착률의 상황을 감안해서, 그 장착을 의무화하기 위해 검토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2015년 9월 1일 189회 국회 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²⁴⁾, 미아 펫을 줄이고, 펫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마이크로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사육주 중에는 펫의 몸에 칩을 심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있을 수 있고, 비용이 한 개체 당 5천 엔으로 저렴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타카(高井) 위원이 인간의 지문과 동일하게 개나 고양이의 비문(鼻紋)으로 인식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휴대전화로 간단히 촬영해서 등록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잃어버린 동물들을 찾는데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²⁴⁾ 일본 제189회 국회 환경 위원회 제11호

이에 대해 정부 측 참고인은 현재는 소를 대상으로 활용례가 있지만, 개나 고양이는 민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비문을 채취하기 상당히 곤란하고, 실제로 등록하거나 조회하기 위한 전자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와 같은 다양한 과제가 있어서 그리 간단하지 않다, 비문을 활용한 등록 시스템에 관해서는 기술에 관한 정보수집을 통해 앞으로 고려해 갈 문제라고 답변했다.

5) 한국25)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2조 제1항). 또한 인식표, 목줄 등 안전조치를 등록 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제2항). 현행법상 등록대상동물은 주택 · 준주 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한정되어 있다(동법 시행령 제3조).

반려동물의 등록은 2008년에 시작되어, 2014년부터 등록이 의무화 되었으며, 2015년말 기준으로 총 97만 9천 마리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단위: 마리)

	누	계		2015년도 등	등록마리수	
구분	등록대상 마리수	등록마리수	계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서울	502,890	213,892	20,686	11,395	7,809	1,482
부산	104,000	90,274	5,173	2,509	822	1,842
대구	66,000	51,121	4,354	1,879	2,146	329
인천	102,008	66,225	4,116	2,438	1,571	107
광주	36,000	15,692	2,120	1,418	607	95
대전	51,375	40,753	4,427	2,580	1,636	211
울산	25,000	21,080	2,074	1,362	654	58
세종	2,136	1,428	238	150	80	8
경기	557,518	284,733	27,168	15,050	10,132	1,986
강원	63,368	30,837	3,370	1,888	887	595
충북	25,388	20,396	3,009	1,540	1,167	302
충남	38,655	25,437	2,911	1,718	1,103	90
전북	28,474	18,592	2,094	1,461	578	55

^{25) &#}x27;15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보도자료, 2016. 5. 11.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29,744	10,560	1,295	887	347	61
경북	63,468	27,580	2,688	1,306	784	598
경남	63,771	48,198	3,778	1,062	2,543	173
제주	18,952	12,400	1,731	1,570	161	0
계	1,778,747	979,198	91,232	50,213	33,027	7,992

(표 3-3) 2015년 동물 등록 현황

6) 참고: 여권제도

가) 영국

반려동물 여권제도는 영국이 처음 시행 한 제도로 2001년부터 유럽 15개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제도에 동의하면서 점차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제도이다. 영국은 여권제도를 사용하는 나라와 사용하지 않는 나라를 EU내 리스트 해당국, EU내 비리스트 해당국, 기타국으로 분류하여 반려동물반입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또한 영국은 반려동물을 기내 휴대수하물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 하는 것이 금지하고 있으며, 화물로만 수송이 가능하다. 이는 화물 수송시 훨씬 엄격한 검역과정이필요하기 때문으로 여권제와 화물로만 반려동물을 수송하는 것은 모두 검역과정에 기인한 것이다.

2012년 1월 영국은 전 세계 반려동물의 반입을 허용하였다. 대신 반입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동물격리수용소(Quarantine)에서 6개월의 검역과정, 마이크로칩 내장, 광견병 백신 접종, 혈액검사, 반려동물 여행증 발급, 촌충치료 그리고 인증된 운송회사를 통해서만 운송을 거친 경우에 모든 반려동물의 반입을 허용하였다.

나) 프랑스

프랑스는 반려동물에게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 간 이동시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여권 이 필요한데 프랑스의 경우 휴가철에 반려동물을 데려가는 경우가 많아 반려동물 여권을 이용하고 있다. 프랑스 반려동물 여권(passeport pour animal de compagnie)은 동물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확인절차를 마친 후 여권이 발급되고 있다. 여권에는 반려동물의 등록번호와 이름, 태어난 날짜 등이 적혀 있으며, 사진을 붙일 수 있도록되어 있다. 또한 반려동물의 접종내역 등을 기입하는 란도 있다.



<그림 3-3> 프랑스의 동물여권

다) 미국

EU국에서 통용되는 pet passportx`는 미국에서도 유효하게 통용되며, Pet Microchip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15숫자의 ISO 11784규격의 마이크로칩과 이에 대응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유실에 대비하여 권장된다.

그 외 각 주마다 반려동물의 비행기 탑승에 대한 요구사항은 차이가 있으나 크게 백신의 접종 유무 및 건강확인증, 종의 종류(새의 경우 특정 주에서는 불가능) 및 나이(너무 어린 강아지나 고 양이의 경우 불가능)에 따라서 탑승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나. 생산업 관련 제도 - 브리더(Breeder) 제도

- 1) 미국
- 가) 연방 규제
- (1) 동물취급업에 대한 규제

연방 수준에서의 규제로는 1966년에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of August 24, 1966, Public Law 89-544)이 제정되었고, 그 후 2008년까지 7회 개정되었다.

§ 3.2-6507.2. 상업적 개 번식; 요구사항

상업적 개 번식업자들은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 1. 언제든지 번식 목적으로 1살 이상의 개들을 50마리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청회를 거쳐 조례에 의해 승인된다면 더 많은 수의 사육이 허용된다. 그러한 조례는 상업적인 번식 작업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2. (i) 모견이 번식에 적합한 건강상태인지를 자격이 있는 수의사에 의해 매년 인증을 받은 후에, (ii) 모견의 나이가 18개월에 다다른 이후에, (iii) 모견의 나이가 아직 8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만 번식을 할 수 있다.
- 3. 개들의 처분은 오직 선물, 판매, 이전, 교환, 또는 자격이 있는 수의사에 의한 안락사에 의한다.
- 4. 죽은 개들의 처리는 § 3.2-6554에 따른다.
- 5. 개의 배설물에 대한 처리는 주와 연방 법률 및 규정에 따른다. 그리고
- 6.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최소 5년간 정확한 기록들을 유지한다.
 - a. 모견이 번식 작업에 투입된 일자
 - b. 동물을 매도 또는 양도한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
 - c. 종, 색상, 품종, 성별, 대략적인 나이와 체중을 포함하는 동물에 대한 설명
 - d. 어떤 문신, 마이크로칩 번호, 또는 동물에 나타나는 다른 인식번호
 - e. 강아지들이 태어난 날과 그 날에 태어난 강아지들의 수
 - f. 이 장에서 자격이 있는 수의사에 의해 필요한 인증을 포함하여 동물에 제공한 모든 의료행위 및 백신접 종
 - g. 각각의 동물과 일자에 대한 처분
- 이 법률은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 고양이, 인간 이외의 영장류, 실험용 쥐, 햄스터,

토끼 등의 운송·판매·취급을 규제하는 권한을 농무장관에게 부여하고, 개·고양이 업자(dealer)에게 면허·검사나 경매시장에서의 인도적 취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은 펫에 관련된 동물취급업을 규제하는 법률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업자(dealer)'의 정의에서, ① 연구시설·전시업자·딜러에 동물을 판매하는 점포를 제외하는 '소매 펫 판매점(retail pet store)', ② 야생동물·개·고양이의 판매 또는 판매의 교섭을 하지 않고, 기타 동물의 판매에 있어서 어느 해라도 500달러를 초과하는 이익을 얻지 못한 개인은 제외된다. 따라서 소매 펫 판매점 외에 취미로 경영하는 브리더, 동물수용시설(공공·민간 모두)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악질적인 브리더나 판매자로부터 펫의 구입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법으로서 '강아지 보호법안(H.R.3718 [102nd Congreess]:Puppy Protection Act)', 통칭 'Lemon Laws'가 1991년 11월에 연방의회에 제출되었지만 제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펫 판매점이나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동 법안에 소규모이며 취미로서 영업을 하는 브리더들이 반발하여 폐안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편 최근 번식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동물을 판매하는 규모가 대형화되고, 이들 업자가 동물복지법의 규제 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동물의 복지나 소비자(구입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2011년 2월 28일에 '강아지의 통일적인 보호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H.R.835[112th Congreess]:Puppy Uniform Protection and Safety Act)'이 하원에 제출되고, 현재 심의가 진행중이다.

한편 주 수준에서는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동물취급업 관련 규제 법제가 정해졌다. 주 수준에서의 규제는 미국에서의 펫 동물에 관련된 동물취급업의 규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단 각 주에서의 동물취급업의 규제방법과 대상이 다양하여 미국 전체적인 동물취급업의 규제 현황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2) 번식제한조치에 관한 미국의 규제

연방수준에서는 하원에 제출된 '강아지의 통일적인 보호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H.R.835[112th Congreess]:Puppy Uniform Protection and Safety Act)'에서 '대규모 소매번 식업자'라는 개념을 설정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 주 수준에서는 가령 펜실베니아주가 개의 번식에 관해서 상세한 규제를 정하였으며, 상업용 개번식업자는 원칙적으로 50마리를 초과하는 번식용 개를 소유해서는 안 되고, 또 18개월 이상 8세 미만의 개만이 번식에 사용될 수 있는 개로 제한되어 있다.

나) 주별 규제

州	정의	규제	인증, 등록, 허가	점검
	"상업용 사육장(kennel)"	사육장, 상업용 사육장, 펫	매년 2 이상의 새끼를 낳	최고 동물 관리 책임자인
	개 또는 고양이를 사육하	샵은 위생, 인도적인 방식,	는 사육장의 소유자 또는	농림국장 또는 동물 관리
	거나 손질하기 위해 운영	감염 또는 전염병 예방을	관리자는 그 사육장이 위	책임자는 언제든지, 중성화
	되는 사육장을 의미하며,	유지해야 한다.	치한 마을의 읍사무소 서	또는 불임 수술을 하지 않
	이에 한정되지 않고 비의		기에게 사육장 면허	아 번식할 수 있는 개를
	학적 목적으로 개 또는 고	**농림국장은 2014. 12.	(kennel license)를 신청하	10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하
	양이를 사육하거나 손질하	31.까지 다음 중 하나의	여야 한다.	여 다음 사항을 검사할 수
	는 동물병원도 포함한다.	자에 의해 개 또는 고양이		있다. 또는 국장이 임명한
		에게 제공되는 치료의 표	매년 2 이하의 새끼를 낳	수의사로 하여금 특정 지
	"사육장(Kennel)"	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는 사육장의 소유자 또는	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단일 위치에 하나의 소유	(1) 중성화 또는 불임 수	관리자는 그 사육장이 위	(1) 그 지역에 위생 및 인
	권 하에 유지되고, 쇼, 스	술하지 않아 번식할 수 있	치한 마을의 읍사무소 서	도적인 방법이 유지되지
	포츠 또는 판매를 위해 사	는 개를 10 이상 보유한	기에게 사육장 면허	않는지,
	육되는 개의 한 묶음 또는	자,	(kennel license)를 신청할	(2) 그 지역의 소유자 또
	무리	(2) 고양이 번식장	수 있다.	는 관리자가 이 섹션의 하
		(breeding cattery)을 소유		위 섹션(e)에 설명된 대로
	"펫샵(Pet shop)"	또는 운영하는 자.	농림국장으로부터 위생, 질	번식업자에게 적용되는 치
	구내에서 태어나지 않은		병, 개 또는 고양이의 인도	료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
코	동물을 대중에게 판매할		적인 치료, 공공 안전의 보	는지,
네	목적으로 보관하는 장소		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3) 전염병이나 기타 불만
티			러한 사육장을 운영할 자	족스러운 상태가 존재하는
컷			격을 받기 전에는 누구도	것을 발견하면, 국장은 이
^			상업용 사육장(commer-	러한 상태의 수정을 위해
			cial kennel)을 운영할 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명령
			없다.	을 내릴 수 있고 그 건물
				과 동물을 격리시킬 수 있
			농림국장으로부터 위생, 질	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병, 개 또는 고양이의 인도	이러한 명령을 준수하지
			적인 치료, 공공 안전의 보	않을 경우, 국장은 라이센
			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스를 발행한 마을에 면허
			러한 펫샵을 운영할 자격	취소 또는 면허 정지를 권
			을 받기 전에는 누구도 펫	고할 수 있다.
			샵(pet chop)을 운영할 수	
			없다.	국장은 언제든지 상업용
				사육장, 펫샵, 손질 시설
				또는 훈련 시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할 수 있
				다. 또는 국장의 에이전트
				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육장, 펫샵, 손질

시설 또는 교육시설이 위 생 및 인도적인 방식 또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지 않는지, (2) 전염병이나 기타 불만 족스러운 상태가 존재하는 IJ. (3) 섹션 22a-381d의 규 정 위반을 발견하면, 국장 은 이러한 상업용 사육장, 펫샵, 손질 시설 또는 훈련 시설에 대하여 그 위반의 대상이 된 각 동물당 5백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의 수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건물과 동물을 격 리시킬 수 있다. 사육장, 펫샵, 손질 시설 또는 훈련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 자가 이 규정, 국장의 명 령, 개 또는 다른 동물에 관한 법령 또는 규정을 준 수하지 않을 경우, 국장은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내려진 명 령에 불복하는 자는 섹션 4-183의 규정에 따라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다. 면허 없이 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후에 상 업용 사육장, 펫샵, 손질 시설 또는 훈련 시설을 운 영한 자는 2백 달러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절의 규정은 동물병원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비의학적 목적으로 개 또 는 고양이를 사육하거나 손질하는 경우, 모든 개 또 는 동물들이 구내에서 태 어나 판매를 위해 보관되

				는 시설은 제외한다.
				ᆫ 끼글는 제되인다.
델 라 웨 어	"개 소매 직판점(Retail dog outlet)" 개를 판매, 제공 또는 판매를 위해 보관하는 장소. 이용어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a)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에의해 구내에서 생산 및 사육되고 판매, 제공 또는 판매를 위해 보관되는 개; (b) 해당 연도에 단일 강아지 또는 어느 일부의 판매; (c) 공적으로 운영되는 또는 사적, 자선적, 비영리로운영되는 동물 보호소, 유기견 보호소, 동물 애호회,동물 구조 단체.	일반 시설, 실내 주거 시설, 1차 보관소(primary enclosure) 및 동물의 건강과 사육을 위해 기준이 설립된다. 동일한 1차 보관소에 보관된 개는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발정기의 암컷은 번식목적을 제외하고는 수컷과동일한 구역에 보관되지않을 수 있다. (b) 포악하거나 지나치게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개는 따로 보관해야 한다. (c) 4개월 이하의 강아지는 자신의 어미 또는 위탁어미 이외의 성견과 동일한 1차 보관소에 보관하지않을 수 있다. (d)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개를 다른 동물 종과동일한 1차 보관소에 보관하지않을 수 있다. (e) 질병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염병으로 격리 치료 중인 개는 동물 종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주의 개 소매 직판점의 각 소유자는 그 지역에 개 소 매 직판점 면허를 신청해 야 한다. 쇼, 훈련, 판매, 번식 또는 기타 목적으로 4 이상의 개를 보유한 사육장을 운 영하는 자 또는 정당한 권 한이 있는 대리인은, 그 사 육장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개별 개 소유자 등록 대신에) 사육장 면허 를 신청해야 한다.	
워 싱 턴 DC	"상업적 동물 사육자 (Comm- ercial animal breeder)" 판매 또는 대가를 위해 연간 25 이상의 동물을 번식 및 사육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회사, 단체 또는 법인 "상업적 반려동물 관리 시설(Commercial pet care facility)"	시장은 상업적 반려동물 관리 시설에서 동물의 보 호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시장은 상업적 반려동물 사육자에 의한 동물의 보 호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누구든지 판매 및 서비스 자격 승인과 기본 사업 면 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상업적 반려동물 관리 시 설을 운영하지 못한다. 시장은 워싱턴 DC내의 상 업적 동물 사육자에 대한 면허 요건을 수립해야 한 다.	시장은 상업적 동물 사육 자 에 대한 시설 검사 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スコ	T		
	주간 또는 야간에 사육			
	(boarding)을 제공하거나			
	먹이주기, 운동, 훈련, 목			
	욕 또는 관리를 포함한 반			
	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설. 단, 동물 시			
	설 또는 면허있는 펫샵은			
	제외.			
	"동물 판매업자(Pet	사람은 8주 미만의 개 또		
	dealer)"	는 고양이를 판매를 위해		
	상시적으로 연간 2 이상의	제공하거나 판매를 위해		
플	새끼 또는 20 이상의 개	운송할 수 없다.		
	또는 고양이 중 더 큰 것			
로	을 대중에게 판매하는 것			
리	을 업으로 하는 사람, 회			
다	사, 조합, 법인 또는 기타			
	협회. 직접 소비자에게 동			
	물을 판매하는 동물 사육			
	자를 포함한다.			
	"사육장(Kennel)"	**주 규정은 시설이 허가	누구든지 농림국장에 의하	
	수수료 또는 보수를 위해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광	여 발급된 유효한 면허 없	
	개 또는 고양이의 사육, 보		이 동물 판매업자로서 활	
	관, 훈련 기타 유사한 목적	이 규정의 전체 조문은	동하거나 사육장, 말훈련소	
	으로 운영되는 동물 보호	이 가용의 현재 또한트 AVMA에 문의.**	또는 동물 보호소를 운영	
	소 기타 기관.	AVMAON E I	하는 것은 불법이다.	
	도 기다 기진.		이는 것은 놀라이다.	
	"동물 판매업자(Pet dealer		 면허는 1년간 발급되고,	
	/pet dealership)"			
	, · · · · · · · · · · · · · · · · · · ·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개, 고양이, 새, 물고기, 파			
	충류 기타 통상적으로 이			
조	주에서 반려동물로 받아들			
	여지는 동물을 판매, 판매			
지	제공, 교환 또는 분양하는			
아	자.			
	단, 지방 정부의 사업허가			
	또는 Georgia 판매세 번호			
	없이, 자신이 생산하고 사			
	육한 동물을 연간 30마리			
	이하로 판매하는 자는 동			
	물 판매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수의사가 동물병원 또는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은			
	동물 판매업자, 사육장 또			
	는 말훈련소(stable)로서			

취급하지 아니한다. "펫샵 운영자(Pet shop 개 판매업자, 개 사육장 운 누구든지 농무부에서 발급 농무부는 직권으로 또는 operator)" 영자 또는 고양이 사육장 한 면허 없이는 펫샵 운영 동물을 구매, 선물 또는 입 개, 고양이, 새, 물고기, 파 운영자는 8주 이하의 강아 자, 개 판매업자, 개 사육 양받은 자가 서면으로, 면 충류 기타 통상적으로 반 지 또는 새끼고양이를 판 장 운영자, 고양이 사육장 허의 발급 또는 갱신의 거 려동물로 받아들여지는 동 매 목적으로 그 어미와 분 운영자로 종사하지 못한다. 절이나. 정지 또는 취소사 물을 요금 또는 기부금 여 리할 수 없다. 유를 구성하는 사실을 입 하를 불문하고 판매, 판매 증하여 제출한 불만사항에 제공, 교환 또는 분양하는 면허 소지자는 (a) 위생 상 따라, 신청자 또는 면허증 자. 단, 자신이 생산 및 사 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b) 을 소지하거나 소지한다고 육한 동물을 판매하는 자 적절히 환기를 시켜야 한 주장하는 자의 행위를 조 는 펫샵 운영자로 간주되 다; (c) 적절한 영양을 제 사하여야 한다. 지 아니하며, 수의사에 의 공해야 한다; (d) 자신의 해 운영되는 동물병원 또 관할하에 있는 모든 동물 농무부는 법령 준수 여부 는 클리닉, 또는 수의 의학 의 인도적인 관리와 치료 를 확인하기 위하여 면허 및 수술법(the Veterinary 를 제공해야 한다; (e) 질 권자의 부지의 검사를 할 Medicine and Surgery 병, 부상 또는 기형이 없는 수 있다. Practice Act)에 의해 자격 동물만을 판매. 교환 또는 취득한 수의사는 펫샵 운 입양에 제공하도록 상당한 영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 판매업자(Dog dealer)" 일 요금 또는 기부금 여하를 리 불문하고 개를 판매, 판매 제공, 교환 또는 분양하는 0] 자. 단, 자신이 생산 및 사 육한 개를 판매하는 자는 개 판매업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수의사에 의해 운영되는 동물병원 또는 클리닉, 또는 수의 의학 및 수술법(the Veterinary Medi- cine and Surgery Practice Act)에 의해 자격 취득한 수의사는 개 판매 업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개 사육장 운영자(Kennel operator)" 수수료 또는 보수를 받고 사육, 훈련 또는 이와 유사 한 목적으로 개 또는 개와 고양이를 보관하는 기관 기타 동물관리시설, 동물병 원, 또는 동물 보호소를 운

	영하는 자; 또는 요금 여히			
	를 불문하고 자기가 생신			
	및 사육한 개 또는 개외			
	고양이를 판매, 판매 제공			
	교환 또는 분양하는 자.			
	5 이하의 재생산 가능한	,		
	암컷을 소유, 점유 또는 보			
	관하는 자는 개 사육장 운			
	영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경치도 친구되지 어디진다			
	"고양이 사육장 운영지			
	(Cattery operator)"			
	수수료 또는 보수를 받고			
	사육, 훈련 또는 이와 유시			
	한 목적으로 고양이를 보			
	관하는 기관 기타 동물관			
	리시설, 동물병원, 또는 동			
	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자			
	또는 요금 여하를 불문히			
	고 자기가 생산 및 사육한			
	고양이를 판매, 판매 제공			
	교환 또는 분양하는 자.			
	5 이하의 재생산 가능한			
	암컷을 소유, 점유 또는 보			
	관하는 자는 고양이 사육			
	장 운영자로 간주되지 0	•		
	니한다.			
		(c) 수의사에게 의학적으로		
		운동에서 배제되는 것을		
		인증받지 않은 개가 아닌		
		한, 4개월 이상 된 개들에		
		게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의		
		운동을 시켜야 한다.		
		(d) 최소한 하루에 한번 케		
	2	이지로부터 폐기물 및 오		
		염물질을 치워야 한다.		
		(e) 케이지의 폐기물 및 오		
フ	<u> </u>	염물질을 청소할 때는 개		
		를 케이지로부터 나오게		
		해야 하며,		
		(f) 각 8개월 이상의 성적		
		으로 온전한 개들의 기록		
		을 보관하여야 한다.		
			I .	

펜
실
베
Ч
아

75마리 이상의 개를 소유 또는 관리 등을 하는 사람 은 현장에서 최소한 하루 에 8시간동안 사람이 관리 하도록 해야한다. 개와 현 장에 있는 사람 수의 비율 은 75대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Kennel"은 최소한 1년에 26마리의 개를 기르거나 또는 분양하는 시설이나 이 법에서 정의하는 기숙형 사육장을 의미한다.

"Commercial Kennel"은 강아지나 개를 기르고 (1) 달러 또는 애견가게 사육장에게 개를 팔거나 분양하거나 (2) 1년에 60마리이상의 개를 팔거나 분양하는 사육장을 의미한다.

"Dealer"는 (1) 공적 혹은 사적이게 타인의 개를 팔 거나 판매에 제공하여 수 수료나 판매가격 중 일부 를 얻거나 (2) 재판매를 위 해 도매로 개를 분양하거 나 (3) 재판매를 위해 도매 로 개들을 제공 또는 유지 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Dealer Kennel" 펜실베니 아주에서 운영되는 사육장으로 (1) 수수료나 금액 중일부를 얻기 위하여 공적혹은 사적으로 개를 주인이나 에이전트, 양수인으로써 팔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하거나 (2) 재판매를 위해 도매로 개를 분양하거나 (3) 재판매를 위해 도매로 기를 위해 도매로 기를을 제공 또는 유지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 용어에는 동물보호소,

모든 사육장은 위생기준에 맞추어 청결하고 인간적인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Kennels, Pet-Shop Kennels, and Dealer Kennels:

(1) 개들에게 운동의 기회 를 제공하는 적합한 계획 을 수립 하고 따라야 한다. (계획은 수의사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2) 화재경보기 또는 소화 기가 상비되어 있도록 한 다.

(주거시설은 구내에 소화 기가 상비되도록 한다. 실 내주거시설에는 스프링클 시스템이 있도록 한다)

"Commercial Kennel"은 더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 수해야 한다.

•케이지는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거나 건설 되어야 한다. 케이지는 또한 크기, 표면, 물에서의 사용가능성, 유지에 있어서 의 확정된 기준을 충족시 켜야 한다.

 •강아지를
 돌보는
 각
 모견

 에게는
 그
 개의
 습성
 및

 행동특성
 .일반적으로
 수의

 사에게
 검진되어
 밝혀진

 일반적
 통념의
 사육방법을

사육장을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자는 매년 1월 1일전에 농림부의 사육장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각 종류와 모든 장소의 사육장에 대해서 라이센스가

사육장 라이센스는 사육장을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것에 필요하다.

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두 개 이상의 라이센스 된 사육장을 운영 할 때, 각 사육장은 법에서 정한대로 검사받고 라이센스 받아야 한다.

펜실베니아의 딜러들은 매해 1월 1일에 라이센스를 부서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여야 한다. 딜러라이센스는 발행된 해의 12월 31일에 만료된다.

부서로부터 딜러라이센스 나 딜러 사육장 라이센스 를 취득하지 못한 자가 수 수료 또는 중개료 리세일 을 위한 도매판매를 목적 으로 개를 팔거나 타인의 개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 이 된다. 주의 개 관리자 혹은 농림 부의 직원으로부터 사육장 을 검사받고 승인받지 않 는 한, 사육장 허가 신청은 승인되지 않는다.

주의 개 관리자 와 다른 농림부의 직원은 모든 허 가받은 사육장, 모든 펜실 베니아 주의 개들과 사육 장처럼 운영되는 허가받지 않는 시설들을 검사할 권 한을 지닌다.

최소한 1년에 2번, 주의 개 관리자와 농림부의 직 원들은 펜실베니아 주의 모든 허가받은 사육장을 검사한다.

주의 개 관리자와 다른 농 림부의 직원들은 사육장을 인정하기 위한 목적의 검 사와 시험과 개를 도축하 기 위한 목적의 영장을 신 청할 수 있다.

영장은 가능성에 근거해서 제기될 수 있다.

충분한 가능성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사육 이외의 사육을 포함하는 경우, 주의 개관리자 또는 농림부의 직원이 개집의 검사 또는 시험에 대한 항목을 거부되는 경우

(2) 주의 개 관리자 또는

사육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 공간이 주어지도록 한다.

"Pet Shop-Kennel"은 주 인, 에이전트, 수취인 의 자격으로 재판매의 목적으 하고 판메 또는 여하 개들 사람을 의미한다.

보관하거나 기르거나 돌보 로 조화롭게 되어야 한다. 교환하는 등 어떠한 방식 으로 분양하는 기반들을 발정기의 암캐의 경우 번 의미한다.

- 또한 포함한다.
- (1) 딜러를 포함한 사람들 의 집, 주택, 사업 또는 영 업을 위한 장소로써 사람 의 모든 대지, 재산, 집시 지, 재산, 집시설을 포함한
- 는 건조물
- (3) 개들을 보관하거나 기 거나 관리하거나 팔거나 훈련하거나 포기하거나 교 환하거나 입양하거나 교환 하는 등 어떠한 방식으로 수의적 케어 프로그램을 분양하기 위해 구조연락망 의 사육장 또는 유기견을 활용하기 위한 사람, 기관, 사업 또는 영업

해당 용어는 호텔, 캠프장, 현장시험, 퍼포먼스 이벤 도조절이 되어야 한다. 트, 사냥이벤트 혹은 도그 •개들의 건강과 후생을 위

쉼터 또는 보통 사업자나 기반으로 하여 추가적인

- •만일 돌보아야하는 강아 지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주어진 각 공간이 모견을 위한 공간의 최소요건 에 로 개를 취득하거나 판매 대해 5% 미만이라면, 공간 의 크기는 서면으로 출석 을 소매에 대한 판매를 위 한 수의사에 의해 승인받 해 제공하는 사육장 또는 이야 하고 사육장 기록에 남기도록 한다
- •같은 케이지에서 사육되 "Establishment"은 개들을 는 모든 개들은 객관적으 거나 쉬게 하거나 관리하 같은 케이지에 있는 성견 거나 팔거나 포기하거나 는 6마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 용어는 당해 시설에서 한, 성적으로 성숙한 수캐 발생하는 어떠한 행동들도 와 같은 케이지에 있지 않 도록 한다.

모견 또는 위탁 모견외에 다른 성견과는 암캐와 그 새끼들을 같이 있게 하지 않으며, 12주가 지나지 않 설 또는 어떠한 조합의 대 은 강아지들 역시 성견과 같이 있지 않게 한다.

- 타 개에 대해서 적대적이 (2) 모든 사람들이 상주하 거나 공격적으로 보이는 개의 격리하여 양육한다.
- •케이지가 위치해있는 사 르거나 돌보거나 쉬게 하 육장은 수의사와 손님 환 자 관계를 성립한다.
 - ┃•케이지가 위치해있는 사 육장은 서면으로 작성된 마련한다.
 - •개를 위한 양육시설들은 반드시 개들의 건강과 후 생을 제공하고 온도 및 습 도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 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온

농림부의 직원이 위법에 대한 합리적인 배경을 인 지하는 경우

장소와 같이 개를 보호하 냄새, 외풍, 암모니아 레벨 거나 주인의 보호하에 있 는 주인들의 모임을 포함 하고 있지 않다.

- 쇼나 미용 및 훈련을 위한 해 결로현상을 방지하고, 을 최소한화하기 위해서 개들을 위한 양육시설들은 반드시 항상 충분한 환기 가 되어야 한다.
 - •개를 위한 양육시설들은 개들의 관찰, 시설의 정비, 일상적인 검사를 위하여 충분한 조명이 있어야 한
 - •케이지의 바닥과 벽은 축 축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실내 양육시설의 천 장은 추축해지는 것을 방 지해야하며 교체가능하여 야 한다.
 - •모든 개들은 깨끗하고 오 염되지 않은 음식들을 충 분히 제공받아야 한다.
 - •케이지를 청소할 때, 모든 개들은 거기에 있지 않아 야 한다.
 - •케이지들은 2행 이상의 높이가 아니어야 하고, 아 래로는 양육시설의 바닥으 로부터 4.5피트이상 아래 로 있지 아니한다. 케이지 가 적층되어있는 경우, 위 에서 배출되는 오줌. 대변. 먼지 등을 방지하는 트레 이나 다른 기구들을 설비 한다.

트레이 또는 승인받은 기 구는 반드시 물이 스며들 지 않고 살균이 쉬워야 한 다.

- •모든 사육장들은 화재경 보기가 설비되도록 하며, 소화기 또는 스파클링 시 스템과 같은 화재진압의 도구들이 있어야 한다.
- •어떤 법에도 의하지 않고 서는, 개들은 수의사 외에 안락사 될 수 없다

		•12주 이상의 개들이 있는		
		장소에는 추가적인 케이지		
		와 운동기구들이 있다.		
	"O a mana a maia la la mana ala m"			7. 110TO ATITIS 7
	"Commercial breeder"	반려동물 가게 또는 상업 적 개 사육장은 유효한 라	반려동물 가게는 농업부에	
	상업 사용자란 교환, 판매, 또는 참작할만한 보수를	이센스가 없는 상업 시설	서 발급 또는 갱신 한 주 라이센스에 따라 운영해야	상 업무 시간 동안 점검을 위해 개방되어야 한다.
		에서 개 또는 고양이를 구		귀에 게공되어야 된다.
	받고 개와 고양이를 임대 사육하고, 개와 고양이의	입하지 않아야한다.	한다. 	
	사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ᆸ이지 많이야한다.	 상업 개 사육장은 농업부	
	동물이 훈련, 손질, 또는	 딜러가 고의로 병에 걸린	이십 개 시작이는 이십구 에서 발급 또는 갱신 한	
	사람에 둘러싸인 것과 관	동물을 제공하는 것은 불	에서 글립 포트 중단 단 주 라이센스에 따라 운영	
	계없이 제공하는 사람을	법이다.	해야한다.	
	의미한다. 세 마리 이하의		on or a significant	
	번식 수컷 또는 암컷을 소			
	유하거나 품고 있는 사람			
	은 상업 사용자가 아니다.			
	그러나 경마장에서 도박을			
	하려는 목적을 위해 수컷			
	또는 암컷 그레이하운드를			
	사육 하고자 하는 자가 임			
	대, 판매, 또는 합당한 보			
아	수를 받고 그레이하운드를			
0]	교환하는 경우 그 두수에			
-	관계없이 상업 사용자로			
오 와	본다.			
ㅋ				
	"Commercial Kennel"			
	개와 고양이에 대하여 미			
	용 등 그루밍, 보관, 또는			
	교육 서비스를 합당한 보 수를 받고 수행하는 사육			
	자를 받고 구성하는 자꾸 장을 의미한다.			
	02 AUCU.			
	"Dealer"			
	직접 혹은 대리인으로 그			
	러한 일에 종사하는 자로,			
	개 또는 고양이, 또는 둘			
	모두를 재판매를 위해 구			
	매 또는 판매하거나 교환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을 의미한다.			
	"Pet Shop"			
	개, 고양이, 토끼, 설치류,			

	인간이 아닌 영장류, 살아 있는 미끼, 조류, 또는 다 른 척추동물 이외의 물고 기, 구입 판매, 교환, 또는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시 설을 말한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에 규정된 사항을 설 립 요소로서 포함하지 않 은 곳은 pet shop에 해당 하지 않는다:			
	(a) 12개월간 척추동물의 판매 또는 교환에서 USD 500 이하의 수익금을 받은 시설. (b) 12개월간 6마리 이하 의 동물을 판매하거나 교			
루 이 지	환한 시설.	대중에게 사육장이나, 구매, 개의 재판매, 도매를하는 개인이나 사업체는생후 1년이 지난 75마리의개 이상을 사육을 목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의 개를 사육하는 자가 개 별 개 라이센스를 대신하 여 Kennel 라이센스를 획	
애 나			매, 개의 재판매, 도매를 하는 개인이나 사업체는 개별 개 라이센스를 대신 하여 Kennel 라이센스를 획득하거나, Kennel 라이 센스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한다.	
뉴욕	"반려동물 판매점은" 대중에게 판매한 이익이 연간 9개 이상 동물의 판매 하였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반려 동물 딜러는 (1) 하우 징, (2) 위생, (3) 공급 및 급수, (4) 수의학 케어, (5) 처리 및 (6) 인도적인 안락 사 (7) 운동의 요구 사항에 대한 치료의 최소한의 기 준을 준수해야한다.	운용할 수 없다.	감독관, 또는 자신의 공인 에이전트는 1년에 25마리 이하의 동물 판매에 종사 하는 반려동물 딜러를 제 외하고, 규정의 준수를 보 장하기 위해 반려동물 딜 러의 시설을 최소한 매년 검사 하여야한다. 이러한

 매를
 위해
 내놓은
 사육사

 를 포함한다 : 사육자가 연

 간 25마리
 이하의
 사육자

 의 주거
 건조물에서
 태어

 나고
 자란
 동물을
 직접
 혹

 은 판매를
 위해
 소비자에

 게 내놓은
 경우에는
 이러

 한 동물의
 판매의

 제안을
 이유로
 반려동물

 딜러로
 간주되지
 않는다.

반려동물 딜러에는 입양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는가에 상관없이 버림받은 동물이입양 될 수 있도록 창설된정식으로 법인화된 동물애호회를 포함하지 않는다.

한 광고나 판매에 관련한 광고물을 출판할 수 없다.

라이센스는 매년 갱신하여 야 하며, 환불되지 않는 USD 100을 지불해야 하고, 혹은 연간 25마리 미만의 판매에 종사하는 반려동물 딜러는 환불되지 않는 USD 25를 지불한다.

경우 검사 커미셔너 또는 자신의 공인 에이전트, 불 만 보증 등 조사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하여야한다.

커미셔너는 계약에 따라 지역이나 도시 대표와 반 려동물 딜러에 대한 검사 를 실시하고, 반려동물 딜 러가 위치한 같은 카운티 나 도시에 반려동물 상인 에 관한 불만에 응답 할 수있는 권한이 있다.

반려동물 대리점의 검사를 실시하거나 반려동물 판매 점에 관한 불만에 응답하 는 사람은 개와 고양이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동물의 학대 여부 에 대한 구별과, 조사에 대 해 특히 전문적 식견을 갖 추어야 한다.

(표 3-4) 미국의 주별 브리더 관련 규제 현황

2) 일본

2013년 9월 1일부터 동물 애호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취급업이 제1종(종래의 동물취급업, 영리성 있음) 및 제2종(사육시설을 갖추고 영리성을 동반하지 않고 소정의 두수 이상의 동물을 취급)으로 나뉘었다.

제1종 동물취급업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소·업종별로 도도부현지사 또는 정령시의 장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2014년 6월 법 개정으로 동물취급업이 등록제로 변경되었다. 업으로 동물(실험동물, 산업동물은 제외)의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경매알선, 양도사육을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등록이 필요하다.

환경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1종 동물취급업은 7가지로 구분되고 판매업(pet shop, breeder) 은 동물을 번식, 판매하거나 동물의 판매를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²⁶⁾

²⁶⁾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

가령 동경도의 경우 복지보건국 건강안전부 환경보건위생과 동물관리계에서 담당하고,

신청수수료는 1종별 15000엔

업종	업의 내용	해당 업자의 예
판매	동물의 소매 및 도매, 그를 목적으로 한 번 식 또는 수출입을 하는 업(그 중개 또는 대 리를 포함)	- 소매업자 - 도매업자 - 판매 목적의 번식 또는 수입을 하는 자 - 노천에서의 판매를 위한 동물의 사육업자

(표 3-5) 일본의 동물판매업 규정 및 해당 업자의 예

제1종 동물취급업자 중 개·고양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번식을 하는 자에게는 '개·고양이 판매업자'로서 도도부현 지사에게 개·고양이 건강안전계획을 제출(연계 수의사를 기재)하고 사육 두수를 정기 보고하는 의무 및 장부정리의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었다.

동물애호관리법 제12조 1항에 근거하여 도도부현 지사는 개·고양이 판매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가 제출한 개·고양이 등 건강안전계획이 어린 개·고양이 등의 건강 및 안전 확보 및 종생사육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신청 서나 첨부서류의 중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허위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된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동물애호관리법 제19조에 근거해서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동물의 건강 및 안전 유지 기타 동물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

가) 번식과 관련된 법령상의 규정

(1)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책무)

⑤ 동물의 소유자는 그 소유하는 동물이 함부로 번식해서 적정하게 사육하는 것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번식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종별 동시 25000엔

3종별 동시 35000엔

4종별 동시 45000엔

5종별 동시 55000엔

제10조 (제1종동물취급업의 등록)

- ③ 동물등록의 신청을 하는 자는 개고양이 등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내용 또한 기재해야 한다.
- 1.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개고양이의 번식을 할지 여부
- 2.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어린 개고양이의 건강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개고양이의 취급에 관한 계획(이하 개고양이 등 건강안전계획)

제21조의 4 (판매 시 정보제공 방법)

제1종동물취급업자 중 개, 고양이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동물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동물을 구입하려고 하는 자(제1종동물취급업자는 제외)에 대해서, 해당 판매에 관련된 동물의 현재의 상태를 직접 보여주는 동시에, 대면에 의해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이용해서 해당 동물의 사육 또는 보관 방법, 생년월일, 해당 동물에 관련된 <u>번식을 한 자의 성명</u> 기타 적정한 사육 또는 보관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로서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

제22조의 5 (어린 개 또는 고양이에 관련된 판매의 제한)

개고양이 등 판매업자(판매용으로 제공하는 개 또는 고양이의 번식을 하는 자에 한함)는 그 번식을 한 개 또는 고양이이고 출생 후 56일을 경과하지 않은 것을 판매를 위해서 또는 판매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인 도하거나 전시해서는 안 된다.

제37조 (개 및 고양이의 번식 제한)

- ① 개 또는 고양이의 소유자는 이들 동물이 함부로 번식해서 이에 적정한 사육을 받을 기회를 주기 곤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식을 불능으로 하는 수술 기타의 조치 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도도부현은 개 또는 고양이의 인도 시에 전항에 규정하는 조치가 적절하게 행해지도록,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8조 (동물애호추진원)

- ① 도도부현지사는 지역에서의 개, 고양이 등 동물 애호의 추진에 열의와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동물애호 추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동물애호추진원은 다음의 활동을 한다.
- ③ 주민에 대해서 그 요구에 따라서 개, 고양이 등 동물이 함부로 번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생식을 불능하게 하는 수술 기타 조치에 필요한 조언을 한다.

(2)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개고양이 등 건강안전계획의 기재사항)

어린 개, 고양이의 건강 및 안전의 유지를 배려한 사육, 보관, 번식 및 전시의 방법으로 한다.

제8조 (제1종 동물취급업자의 준수기준)

⑤ 판매업자는 제1종동물취급업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동물을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를 하려

고 하는 동물에 관해서, 그 생리, 생태, 습성에 일치한 적정한 사육 또는 보관이 행해지도록, 계약 시에 사전에 다음에 게재하는 해당 동물의 특성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해당 제1종 동물취급업자에 대해서 문서를 교부해서 설명하는 동시에, 해당 문서를 수령한 것에 관해서 해당 제1종 동물취급업자에 대해서 서명에 의한 확인을 하도록 한다.

- 8. 불임 또는 거세 조치의 방법 및 그 비용
- 9. 8호에 게재하는 것 위에 함부로 번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불임 또는 거세 조치를 불가역적인 방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 14. 번식을 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등록번호 또는 소재지(수입된 동물이며, 번식을 한 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수출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재지. 양도받은 동물이고 번식을 한 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재지)

제10조의 2 (개고양이 등 개체에 관한 장부의 비치)

② 해당 개고양이의 번식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등록번호 또는 소재지(수입된 동물이며, 번식을 한 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수출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재지. 양도받은 동물이고 번식 을 한 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재지)

제12조의 2 (학대의 우려가 있는 사태)

⑥ 번식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또한 양도 등에 의한 사육두수의 삭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번식에 의해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동물애호관리법 제25조에 근거해서 도도부현 지사는해당 사태를 일으키는 자에 대해서, 기한을 정해서 그 사태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권고받은 자가 그 권고에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해서 기한을 정하고 그 권고에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의 2 (개고양이의 인수를 요구할 상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강아지 또는 아기고양이의 인수를 요구받은 경우이며, 해당 인수를 요구하는 자가 도도부현으로부터의 번식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동물애호관리법 제35조에 의해 그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 (3) 제1종 동물취급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동물 관리의 방법 등의 세목 (최종개정 2014년 5월 30일, 환경성 고시 제20호)

제5조 (동물의 관리)

- ③ 동물의 번식은 다음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 1. 판매업자, 대출업자 및 전시업자는 판매, 대출 또는 전시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동물을 번식시키는 경우에는, 유전성 질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동물, 어린 동물, 고령의 동물을 번식용으로 제공하거나 유전성 질환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조합에 의해 번식시키지 않는다. 단 희소한 동물의 보호증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 2. 판매업자, 대출업자 및 전시업자는 판매, 대출 또는 전시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동물을 번식시키는 경우에는, 함부로 번식시킴으로써 모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는 것을 피하고, 사육시설의 구조 및 규모, 직원 수를 바탕으로 그 번식 회수를 적절하게 하며, 필요에 따라서 번식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판매업자, 대출업자 및 전시업자는 판매, 대출 또는 전시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동물을 번식시키는 경우에는 동물의 번식 실시상황에 관해서 기록한 대장을 조제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한다.

(4) 전시동물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한 기준 (최종개정 2013년 환경성 고시 제83호)

제1 일반원칙

3. 계획적인 번식 등

관리자는 함부로 번식시킴으로써 전시동물의 적정한 사육 및 보관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의 수용력, 전시동물의 연령,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계획적인 번식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거세수술, 불임수술, 자웅의 분별사육 기타 번식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또는 시설에 양도하거나 대출의 조치를 적절하게 강구하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유전성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동물을 번식용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힘쓰는 동시에 유전성 질환이 일어날 우려가 높으므로 과도한 근친교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최근의 개선 움직임

2015년 10월 24일 환경성은 강아지를 펫으로서 판매하는 브리더에 대해서, 모견에게 과도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연간 번식회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상업 목적으로 강아지가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이익을 위해 모견에게 과도하게 새끼를 낳게 하는 악질업자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규제를 의논하는 전문가 검토회를 2016년도 내에 열 계획이다.

3) 영국

영국에서는 1973년에 개의 번식법이 제정되었는데, 1999년 개의 번식 및 판매(복지법)에 의해 1973년 법은 대폭 개정되었다. 특히 이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지방당국이 번식시설경영자에 대한 허가를 부여할 때 고려하는 요건으로서 ① 암컷이 1세를 밑도는데도 교배시키고 있는지, ② 암컷에게 1마리 당 6마리를 넘는 새끼를 낳게 하는지, ③ 암컷이 마지막으로 새끼를 낳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12개월의 최종일 전에 해당 암컷에게 새끼를 낳게 하는지, ④ 규칙에 근거해서 작성된 정확한 기록이 토지·건물에 보관되고, 지방당국의 현장검사 시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등 4항목이 새로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개정 후 1973년 개의 번식법 제1조제4항 f호에서 i호)

무허가로 번식시설을 경영하거나 허가 시 전제 조건에 위반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죄이다(동조 제9항). 이 경우의 벌칙으로서 3개월을 넘지 않는 수감이나 레벨 4를 넘지 않

는 벌금, 또는 그 병과(제3조 제1항)에 처한다. 또한 1973년 개의 번식법 제정 당시에는 200파운 드의 벌금에 그쳤으나, 1999년 개의 번식 및 판매(복지)법에 의한 개정에서 벌칙이 강화되었다. 또 법원은 동법 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관하여, 그 경영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간 동안 그 자가 번식시설의 경영이나 개의 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4) 독일

독일에서는 개의 보호에 관한 명령 제3조가 번식업에서의 사육에 대해 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상거래의 대상으로서 개를 번식하는 자는 10마리 미만의 번식견과 그 새끼마다 1명의 사육자를 둘 것을 보증해야 하고, 해당 사육자는 사육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이 있음을 주무관청(지방의 수의학 센터)에 증명한 자여야 한다.

위반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a에서 정하는 질서위반을 범한 것이 되어, 2만 5천유로 이하의 과료를 부과한다(제12조 제1항 제2호). 또 제7조에서는 개의 계류사육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임신기간의 종반 3분의 1의 기간에 있는 모견이나 수유 중인 모견은 쇄사슬로 묶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다(제7조 제7항 2호, 3호).

또한 개의 보호에 관한 명령은 그밖에도 개의 사육조건에 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들 규제를 준수하려고 하면 방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형견의 번식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독일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

5) 브리더(Breeder) 관련 각국의 규제 정리

국가	브리더(breeder)가 되기 위한 자격	자격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위반시 벌칙조항
일본	[등록] -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 현 지사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개고양이의 번식업의 경우에는 등록 시 개고양이 건강안전계획27)을 제출해야 한다.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록의 갱신] 등록은 5년마다 갱신하고, 등록 시 규정은 갱신 시에도 준용한다. (동법 제13조)	[등록의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았거나, 개고양이 건강안전계획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 동물의 건강 및 안전 유지 및 기타 동물의 취급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등록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고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동법 제19조)

		[권고 및 명령] - 도도부현지사는 본 법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해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도도부현지사는 권고받은 자가 권고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기한을 정해서 권고에 관련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벌칙] 등록을 받지 않고 제1종동물판매 업을 하는 자 및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 및 갱신을 받은 자, 업무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번식업자는 지방자치체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개번식법1973 제1조1항) 번식시설경영자 허가 시 고려하는	무허가로 번식시설을 경영하거나 허가 시 전제 조건에 위반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 죄이다. (개번식법1973 제1조 제9항)
영국	요건 ① 1세 미만의 암컷 교배 여부 ② 암컷 1마리 당 6마리 이상의 출산 여부 ③ 마지막 출산 후 12개월이 지났는지 여부	[벌칙] 상기 경우의 벌칙으로서 3개월을 넘지 않는 수감이나 레벨 4를 넘 지 않는 벌금, 또는 그 병과에 처한다. (동법 제3조1항)
	④ 규칙에 근거해서 작성된 정확한 기록이 토지·건물에 보관되고, 지방당국의 현장검사 시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 (개정 후 개번식법 1973 1조4항 f 호에서 i호)	[인가의 취소 또는 사육 정지] 법원은 동법 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관하여, 그 경영의 허 가를 취소할 수 있고, 또한 적절 하다고 생각하는 기간동안 그 자 가 번식시설의 경영이나 개의 사 육을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독일	상거래의 대상으로서 개를 번식하는 자는 10마리 미만의 번식견과 그 새끼마다 1명의 사육자를 둘 것을 보증해야 하고, 해당 사육자는 사육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 및	(동법 제3조제3항)[과료의 부과]위반 시 질서위반을 범한 것으로간주, 2만5천유로 이하의 과료를부과한다.(동 명령 제12조제1항제2호)

능력이 있음을 주무관청(지방 수의	
학센터)에 증명한 자여야 한다.	
(개의 보호에 관한 명령 제3조)	

(표 3-6) 브리더 관련 각국의 규제 정리

다. 자격제(면허제)

1) 영국

영국은 1951년 제정된 반려동물 보호법(Pet Animal Act 1951)에 의하여 반려동물 가게에 대한 경영인가제가 시행된 이후 이 법을 보완하여 반려동물 판매업자 뿐 아니라, 번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 사육사에 대하여도 면허제가 존재하고 있다.

2) 미국

미국에서의 사육사는 통칭 "breeders"라 불리며 이는 각 주의 주법에 따라 규율된다. 사육사도 각 주별로 정의하는 범위가 다르다. 크게는 동물가게주인(pet shop dealer)로서 동물 개체수의 일정 이상을 상업적인 분양을 목적의 사업주를 의미하거나, 상업적으로 동물간의 교배와 번식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나 일정기간 동안 대신 동물을 키워주는 사람 등으로 나누어 규율하며, 이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당해 사업을 하거나 위반된 행위를 하는 경우엔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3) 한국

현재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장례지도사, 동물행동교정사, 동물매개심리상담사 등 자격과정이 있으나, 이는 국가공인을 받지 않은 민간자격이다.

자격	내용		
반려동물관리사	동물보호,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동물사양(품종)관리, 특수견 관리, 사육 및 분		

²⁷⁾ 개고양이 건강안전계획 기재사항

① 개고양이의 관리체제, 건강상황 확인체제(확인빈도, 건강상태 기록방법) 및 수의사와의 연계상황

② 번식에 이용할 수 없게 된 기 및 고양이의 구체적인 양도처나 애호단체와의 연계

③ 생후 56개월 이전까지의 취급방법, 사육시설의 관리방법, 예방접종 실시방법, 번식회수나 번식제한, 번식과 관련해 서 수의사의 진단

	양(브리드), 핸들링(애견대회 핸들러), 위탁관리사업 및 시터, 교육훈련, 위생관
	리, 입양희망자에 대한 반려동물 코디, 용품개발 및 코디, 반려동물 분양상담,
	반려동물 보험산업, 반려동물 장례산업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가능한 반려
	동물의 전문가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장묘법의 범위 안에서 장례절차의 상담, 절차 진행,
반려동물장례지도사	납골, 주인의 companion animal loss(펫 로스) 상담 등의 장례 전반을 대행해
	주는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인
	가족의 한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반려동물의 수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의 행동문제(공격성, 배변, 격리불안 등)로 인한 동물과 반려자의 문제점을 파악
반려동물행동교정사	하고 반려동물의 행동상담을 통해 동물보호자 가족과 반려동물의 올바른 관계
	성을 맺도록 하고 반려동물유기 방지 및 인간과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개선 해
	주는 행동교정 전문가
동물교감사	살아있는 생명체와 텔레파시를 통해 대화를 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위치 등을
으 는 파 급 시	파악하는 소통가
	동물매개심리상담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치료 도우미동물을 활용하여 인
 동물매개심리상담사	간과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치고 힘든 사람들
	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어 심신의 재활과 회복, 사
	회활동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
 동물매개복지사	사람을 위한 동물매개활동을 통해 사람의 심리 및 재활과 육체와 정신적인 측
	면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활동을 하는 전문가
	반려동물에게 자연의 감각을 일깨워 주고 스스로 자기 몸의 방어적 기능을 되
 펫케어상담사	살리고 생활환경의 유기물로 인한 감염을 막아 주도록 관리하여 동물의 몸과
X/II-10 =/1	마음을 건강하게 돌봐 주는 전문가로 각종 질병예방 효과 및 질병이나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주인과의 관계적 불편함을 소통해주는 전문가
	반려동물에게 자연의 감각을 일깨워 주고 스스로 자기 몸의 방어적 기능을 되
	살리고 생활환경의 유기물로 인한 감염을 막아 주도록 관리하여 동물의 몸과
 펫아로마상담사	마음을 건강하게 돌봐 주는 전문가로 각종 질병예방 효과 및 질병이나 생활의
것의도미경립시 	어려움 속에서 주인과의 관계적 불편함을 소통해주는 전문가로 한국반려동물관
	리협회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제2014-3149호) 민간자격으로 시행하는
	펫아로마상담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를 말한다.

(표 3-7) 반려동물 관련 민간 자격증

라. 수의테크니션 관련

1) 영국

영국은 세계적으로 1960년대에 수의간호사(VN:Veterinary Nurse)라는 직종을 처음 유래시킨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의 간호사를 전문직종으로 인정하였다.

가) 동물의료관계자의 위상

(1) 수의사(Veterinary Surgeon)

질병의 진단, 예후 판정, 병태해석, 진단서 작성, 치료, 수술 등 동물의료에 관한 모든 행위를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11년간의 초등·중등교육을 받은 후, 대학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교육을 2년 정도 받고 수의대학에 입학하여, 5년간 수의학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국가시험제도는 없고, 수의과대학을 수료하면 수의사 및 수의간호직의 자격을 관할하는 왕립수의사협회 (RCVS: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수의사회와는 다름))가 관리하는 수의사 리스트에 게재되고, 수의사의 자격을 얻는다.

(2) 수의간호사(VN: Veterinary Nurse)

수의사와 마찬가지로, 왕립수의사협회(RCVS)의 리스트에 게재됨으로써 자격을 얻고, 수의사의 감독 하에 동물간호, 진료의 보조를 한다. 등록된 VN은 Registered Veterinary Nurse라는 호칭을 갖는데, 이 글에서는 VN의 호칭을 사용한다. 영국에서는 11년간의 초등·중등 교육을 받은후, 왕립수의사협회(RCVS)가 인정하는 동물진료시설에서 근무하면서(유급), 2년간의 양성 코스를수료해야 한다. 중등교육 수료 후, 대학 등에 진학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다시 대학에서 3~4년의 과정을 수료함으로써 학위를 받는 동시에 VN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코스도 있다.

(3) 동물간호학생(SVN:Student Veterinary Nurse)

중등교육 수료 후 양성 코스에 들어가서 동물진료시설에서 근무하고, VN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자이며, 수의사 또는 VN의 감독 하에서 동물간호 및 비교적 간단한 진료의 보조를 한다. 여기서는 SVN이라고 부른다.

나) VN의 교육제도

영국에서는 중등교육 수료 후, 대학 등 고등교육을 목표로 하는 자와 직업훈련학교에서 일하면 서 기능을 갖추는 자로 나뉘는데, VN은 직업훈련 시스템에 들어가서, SVN으로서 근무하면서 훈련을 받는다. 영국의 직업훈련제도는 자격·교육국(QAC)가 정부 차원에서 자격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각 직업에서 자격을 수여할 수 있는 조직을 인정하고 있다.

VN의 자격수여단체로서 인정받는 왕립수의사협회(RCVS)는 VN의 교육기관을 인정하고, 각각

의 교육기관은 제휴하는 임상훈련시설(TP)과 함께 SVN의 교육에 임한다. SVN은 VN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임상훈련시설에서 풀타임의 경우 94주간(약 2년간) 근무하면서 훈련을 받는다. 또이 동안 1주에 1번 교육기관에 다니면서 1일 2~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국에서는 직업훈련을 망라하는 능력평가제도(NVQ)라고 불리는 시스템에서 훈련의 레벨이 정해지며, VN의 경우에는 2년간의 직업훈련에서 1년째에 레벨2, 2년째에 레벨3에 해당하는 평가를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각 레벨에서, 습득해야 하는 기술은 왕립수의사협회(RCVS)가 이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왕립수의사협회(RCVS)가 정하는 직업훈련레벨별 취득해야 하는 기술의 내용

NVQ레벨2

- 건강과 안전의 모니터와 유지
- 개인적 기능의 습득과 직업 상의 관계의 유지
- 접수업무 실시
- 진료경과와 검사에서의 임상환경의 유지
- 동물에게 간호업무를 제공
- 진료시설에서의 입원동물의 모니터와 유지
- 동물간호에 관한 사육자의 지도

NVO레벨3

- 임상병리학 검사의 실시
- 동물을 대상으로 전문적 동물간호의 실시
- 동물을 대상으로 화상진단실시의 준비와 X선 촬영의 처리
- 외과수술 준비
- 외과수술 중의 보조
- 동물 마취 보조
- 약제 교부와 투여

다) VN의 자격인정제도

(1) 인정의 주체와 조건

VN의 자격은 수의사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자격수여단체로서 인정된 왕립수의사협회(RCVS)에 의해 총괄되고 있으며, 왕립수의사협회(RCVS)가 VN의 리스트를 보유하고, 양성, 인정을 총괄한다. 왕립수의사협회(RCVS)의 구성, 기능은 수의사법(Veterinary Surgeons Act 1966)에 규정되어 있다.

자격을 얻기 위해서(RCVS의 리스트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SVN으로서 임상훈련시설(TP)에 근

무하면서 4번의 시험에 합격하고 2년의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VN의 자격취득을 위해서, 4년제, 3년제의 과정이 있다. 이를 수료함으로써 학위(4년제는 학사, 3년제는 Foundation Degree)를 취득하고 동시에 왕립수의사협회(RCVS)의 등록 자격을 얻는다.

(2) 인정시험

왕립수의사협회(RCVS)의 등록은 TP에서의 과정을 수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료 후에는 새로 운 시험은 없다.

(3) 갱신제도

영국에서는 VN면허의 갱신은 의무가 아니나, 앞으로 도입 예정으로 검토 중이다.

라) VN의 업무

(1) VN 업무에 관련된 법령 상의 규정

영국에서는 수의사 자격에 관해서는 수의사법(Veterinary Surgeons Act 1966)에 규정되어 있다. 동법에서는 동물의료행위의 실시를 수의사로 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VN이 체강(体腔)에 이르지 않는 간단한 수술을 포함하는 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VN에 의한 진료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단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동물이 자격을 가진 수의사의 간호 하에 있고, 그 수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행위일 것
- ② 상기 자격을 가진 수의사는 VN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자의 대리일 것
- ③ 상기 자격을 가진 수의사는 VN이 기술을 실시하는 기능을 지녔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 경우 VN은 RCVS의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는 자여야 함이 명기되어 있다.)

RCVS의 가이드라인에서는 VN의 업무범위를 최종적으로는 사법의 판단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VN이 행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하는 항목으로서 이하의 구체적인 예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기술이 VN의 표준적 업무범위로서 동물의료관계자 사이에서 인정되고 있다.

VN이 행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술

- 약제의 투여(경구, 경직장, 흡입, 피하주사, 근육 내 주사, 정맥 내 주사)
- 기타 치료(경구·정맥 내·피하로부터의 수분보급, 수액, 정맥 내 카테테르의 유치, 창상의 처치, 농양·

궤양의 치료, 깁스, 수술 시 장기의 보정, 피부봉합)
- 마취 시 동물의 준비, 마취 도입·각성 시의 조수(마취 전 투약, 삽관)

또한 VN이 실시하는 마취에 관한 기술에 관해서는 RCVS가 별도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서, ① 진정·진통제 등 의약품의 시술 전, 시술 후 투여, ② 수의사의 직접 지시에 의한 추가마취 이외의 마취약의 투여, ③ 마취 시 모니터와 기록, ④ 기록을 하는 수의사의 직접 지시에 의한 정맥 내 마취약의 보조적인 추가투여와 마취약의 농도조정에 의한 마취의 유지가 허용된다는 취지가 정해져 있다.

2) 미국

미국에서의 수의 테크니션은 8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수의사의 수보다 많다. 우리나라에서 칭하는 수의테크니션과는 달리 미국에서의 "Veterinary Technicians"는 수의사의 동물 진료를 보조하는 외에도 연구소 및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기도 하는 등 그 활동범위가 넓다. 대다수가 여성이며 평균 연봉은 3만 6천 달러 정도로 반려동물산업의 성장과 함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의사를 의료업무를 보조하는 수의테크니션의 역할을 하는 직업군은 "Veterinary Technicians"와 "Veterinary Assistants"로 이 둘의 차이는 각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NAVTA(미국수의테크니션협회)의 공인자격증 혹은 각 주별에서 요구하는 관련 교육코스를 이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나뉜다.

미국 수의테크니션이 각 주별로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는가 하면, 인정하기 위한 요 건도 차이가 있는 바, 공인자격증의 취득 여부, 당해 주 내에서의 수의테크니션 과정을 학부에서 이수했는가의 여부 혹은 교육기관에서의 수의테크니션 과정의 이수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 동물의료관계자의 위상

(1) 수의사(veterinarian)

질병의 진단, 예후판정, 병태 해석, 진단서 작성, 치료, 수술 등 동물의료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2년간의 초등중등교육을 받은 후(고교 졸업 후), 2~4년간의 대학교육을 받고 다시수의과대학에서 4년간의 수의학 교육을 수료 후 DVM(Doctor of Veterinary Medicine)의 호칭을 받는다. 또한 임상수의사로서 동물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국 시험을 보고 각 주의

법령에 근거해서 주 수의사위원회(state veterinary board)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2) 수의간호사(veterinary technician)

수의사와 마찬가지로, 각 주의 법령에 근거해서 주 수의사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을 받고, 수의사의 감독 하에서 동물간호, 진료 보조를 한다. 인정을 받은 veterinary technician은 Registered VT, Licensed VT 등 주에 따라 다른 호칭으로 불린다. 이 글에서는 VT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고교졸업 후 미국수의사회(AVMA)가 인정한 동물간호학 교육 프로그램을 2년간 수료하도록 되어 있다.

VT의 전국단체(National Association of Veterinary Technicians in America)는 VT의 유자 격자 중에서 전문과(치과, 마취과, 구급의료 등)의 기술을 가진 자에 대해 인정을 행한다.

(3) 수의조수(Veterinary assistant)

고교 졸업 또는 동일 수준의 교육을 받고, 수의사 또는 VT의 감독 하에서 동물간호 및 비교적 간단한 진료 보조를 한다. 업무를 통한 훈련만 있을 뿐 특별한 교육은 필요하지 않으며, 자격인 정은 없다.

나) VT의 교육제도

미국수의사회에서는 수의사 교육 프로그램의 인정과 또한 VT 교육 프로그램도 인정하고 있다. 미국 수의사회가 프로그램 인정을 위해서 정한 'Policy and Procedure'에는 '수의간호학계 학생을 위해서 장려되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재목의 리스트가 첨부되어 있으며, 이 리스트에는 VT교육의 표준적인 목표라고 생각되는 기술이 제시되어 있다. 이하의 항목과 같다.

수의간호학계 학생을 위해서 장려되는 중요한 기술

- 1 사무소와 병원의 사무, 사육자와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 2 약국과 약리학
- 3 간호
- 4 마취
- 5 외과간호
- 6 임상병리학 검사업무
- 7 화상진단에 관한 업무
- 8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
- 9 새, 외래동물, 소형포유류, 어류에 관한 업무

다) VT의 자격인정제도

(1) 인정의 주체와 조건

VT의 자격인정은 수의사의 자격인정과 같이 주의 법령에 근거해서 수의사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행해진다. 이 방법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미국수의사회가 인정한 원칙 2년간의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VTNE(the National Veterinary Technician Examination)을 수험하여 일정 성적을 얻는 것이 인정의 조건이다.

각 주에서의 수의사 및 VT의 인정제도 및 관리업무를 평준화할 목적으로 미국 주 수의사위원회 협회(AAVSB)가 설치되고, 각 주의 수의사위원회 간의 조정, 인정을 위한 전국시험의 실시와 각 주에 성적 통지, 계속 교육 프로그램의 인정, VT에 관한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2) 인정시험

대부분의 주에서는 인정의 전제조건으로서 전국 시험(VTNE)에 합격할 것을 요구한다. VTNE의 성적은 미국 주 수의사위원회협회(AAVSB)에 등록되고, 미국 주 수의사위원회협회(AAVSB)는 VTNE 수험자의 성적을 각 주의 시험사무국에 통지한다. VTNE는 수의산호사협회, 미국수의사회(AVMA), 미국 주 수의사위원회협회(AAVSB)에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수의간호사에 관한시험의 전국위원회(VTTC)'가 실시한다. 각 주 수의사위원회에서는 또한 독자적인 시험을 치루는경우도 있는데, 그 방법은 다양해서, 주의 수의사에 관한 법령에 관한 필기시험만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구두시험, 필기시험, 임상실기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VTNE를 채용하지 않고, 주에서 독자적으로 VTNE와 같은 시험을 주 수의사위원회가 실시하고있다.

(3) 갱신제도

대부분의 주에서는 수의사와 마찬가지로, VT의 자격에 갱신제도를 법령에 근거해서 정해두었다. 갱신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다양한데, 많은 주에서 갱신 조건으로서 계속교육의 수강실적을 요구한다.

라) VT의 업무

(1) VT의 업무에 관련된 법령 상의 규정

VT가 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각 주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주에 따라 다르나, 전미에서 공통되는 점은 'VT는 진단, 예후판정, 처방, 수술의 4가지 업무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는 점이다. 규정의 내용은 주에 따라 다양하며, 가령 수의사 관련(감독 상황)을 직시(수의사가 VT의 업무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상황), 직접(수의사가 VT와 동일한 시설 내에 있는 상황), 간접 (수의사가 시설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의 3가지로 분류해서, 각각의 상황에서 VT가 실시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주도 있는가 하면, 전술한 4가지 업무의 금지만을 원칙으로 제시한 주도 있다. 이하에 VT가 수의사의 감독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각 주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를 제시한다.

각 주의 수의사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VT의 구체적 업무

- 1 임상검사(소변검사, 혈액검사, 혈액화학검사)
- 2 채혈
- 3 치과처치(일반적인 발치 포함)
- 4 생검
- 5 의료기기를 이용한 각종 검사(심전도, X선 촬영)
- 이상이 기본이나 여기에 덧붙여서
- 6 문진이나 진료기록카드 기재
- 7 특수한 간호
- 8 사육주에 대한 병태의 설명
- 9 치료방침의 설명
- 10 마취
- 11 피부의 봉합
- 12 외부목고정
- 을 규정하는 주도 있다.

마) VT의 처우

VT양성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진료시설에 근무하는 VT가 시급 15달러 정도, 전문적인 진료를 하는 시설에서는 전문적 기능이 있는 자(간호직협회의 전문인정자격을 가진 VT)는 20달러정도라고 했다.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초과근무이므로 일반 시설에서 시급 15달러로 주 45시간근무해서 주급이 700달러 정도, 월급이 약 3,000달러이다. 자격이 없는 수의조수의 경우는 시급 10달러 정도이고, 현재 미국의 동물의료에서는 VT의 수요는 많아서 취업은 용이한 상황이다.

3) 스위스

가) 동물의료관계자의 위상

(1) 수의사(Tierarzt)

질병의 진단, 예후 판정, 병태해석, 진단서의 작성, 치료, 수술 등 동물의료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스위스에서의 초등·중등교육제도는 주(Kanton)에 따라 다른데, 9년 전후의 교육을 받은 후,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4년제 학교를 수료하고 대학에 입학해서, 다시 수의과 대학에서 5년간 수의학 교육을 수료하고(국가시험을 수험할 필요는 없다.) 수의사가 된다.

(2) 동물임상 어시스턴트(TPA:Tiermedizinische Praxisassinstentin)

스위스의 공용어의 하나인 독일어의 머리글자를 따서 TPA라고 부른다. 수의사의 감독 하에 동물간호, 진료 보조업무를 한다. 9년간의 초등·중등교육을 받은 후, TPA가 근무하고 있는 동물진료시설에서 근무하면서(유급), 직업학교에 통학하고 3년간 교육을 받은 후 자격을 얻는다.

(3) TPA 조수

TPA가 되기 위한 연수를 받고 있는 조수도 수의사 및 TPA의 감독 하에 동물간호 및 비교적 간단한 진료 보조를 한다.

나) TPA의 교육제도

스위스에서는 연방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각 직업훈련에 관한 교육의 질 개설에 관한 위원회 (SKoBeQ)라고 불리는 조직이 있어서, 정부, 직업훈련교, 직업구역의 대표자가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교육 커리큘럼 등 통일화에 관해서 협의하고, 그 결과를 직업훈련에 반영한다. TPA에 관한 SKoBeQ는 정부, TPA양성교 및 수의사 대표로 구성된다.

TPA의 직업훈련교는 각 주에서 인가를 받고(주에서 보조금이 지급된다.), 5교(독일어권에 3교, 프랑스어권 및 이탈리아어권에 1교 씩) 설치되어 있다.

TPA조수는 TPA가 근무하는 동물진료시설에 고용되고, 유급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직업훈련학교에 통학하고, 동물진료시설에서 실시훈련(주 4일), 직업훈련학교에서 학과강습(주1일)을 3년간받는다. 직업훈련학교는 SKoBeQ가 책정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커리큘럼을 작성하여 교육한다. 각 동물진료시설에서의 훈련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과정 수료 시의 시험문제는 통일되어 있다.

TPA 직업훈련학교의 교육과목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학, 해부학, 생리학, 전문용어, 질병학, 약리학, 마취학, 실험이론, X선학, 영양학, 동물종과 행동학, 커뮤니케이션, 정보처리, 일반교양, 체육·스포츠

다) TPA 인정제도

(1) 인정의 주체와 조건

TPA의 자격인정은 각 주의 정부가 한다. 취리히의 경우에는 중등교육·직업교육에 관한 부서가, 상기(2)에서 기술한 3년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했음을 인정하고, 증명서를 발행한다.

(2) 인정시험

TPA의 자격인정은 5개의 양성시설에서의 과정을 수료했음을 조건으로 하며, 수료 후에는 새로운 시험은 없다.

(3) 갱신제도

현 시점에서는 스위스의 TPA인정에는 갱신제도가 없다.

라) TPA의 업무

(1) TPA업무에 관련된 법령 상의 규정

TPA의 자격은 수의사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주가 부여한 자격이다. TPA는 수의사의 책임, 감독 하에서 진료보조를 하는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TPA의 업무가 수의사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공적인 기관인 SKoBeQ가 책정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교육되는 업무 내용은, 동물의료관계자 사이에서도 사회적으로도 TPA가 실시할 수 있는 업무로서 허용된다.

(2) TPA 업무의 실제

채혈, 채뇨, X선 촬영, 마취모니터, 피하주사, 근육 내 주사, 정맥 내 주사, 정맥 내 카테테르의 유치, 수술조수, 피부봉합, 치과처치, 실빼기, 창상처치

마) TPA의 처우

TPA 조수의 급여는 정부가 기준을 정하였으며, 그에 따르면 첫 해는 1개월 700스위스프랑(약

80만 원), 2년째에는 1,000스위스프랑(약 110만 원), 3년째에는 1,400스위스프랑(약 160만 원)이다. 수의사는 이 급여 외에 직업훈련교에 내는 수업료로서 연간 1600 스위스프랑(약 18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4) 호주

가) 동물의료관계자의 위상과 자격

(1) 수의사(Veterinary Surgeon)

질병의 진단, 예후 판정, 처방, 수술을 포함하는 동물의료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3 년간의 초등중등교육 수료 후, 수의학계 대학에서의 5년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각 주의 수의사위 원회(VSB)에 등록됨으로써 수의사 자격이 생긴다. 국가시험제도는 없고, 수의과대학을 수료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 수의간호사(VN:Veterinary Nurse)

수의사의 감독 하에서 동물간호, 진료의 보조업무를 한다. 초등교육 후 3년간의 중등교육(합계 10년간)을 받으면 VN의 자격을 얻기 위한 직업교육에 들어갈 수 있고, 1년~3년의 직업교육을 받은 후에 주의 교육당국이 증명하는 자격을 얻는다. 서 호주 주에서는 수의사와 마찬가지로 자격을 가진 VN을 수의사위원회(VSB)가 등록·인정하는 시스템(RVN:Registered Veterinary Nurse)이 있다. 여기에서는 전국적인 수의간호사의 호칭으로서 VN을 사용한다.

(3) 수의조수

수의간호사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동물진료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연수를 받는 어시스턴트이다. 수의사 또는 VN의 감독 하에서, 동물간호 및 비교적 간단한 진료의 보조를 한다. 이 글에서는 VA라고 부른다.

나) VN의 교육제도

호주에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직업교육자격제도(AQF)가 있으며, 다양한 직업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직업교육은 초등중등교육 수료 후, VA로서 동물진료시설에 근무하여 수

입을 얻고 현장 교육을 받으면서, 직업교육시설에서(통신교육도 가능) 행해진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위와 함께 VN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교육자격에는 증명레벨1~4의 등급이 있으며, 각각의 직업에 의해 수료해야 하는 레벨은 다르다. VN의 경우에는 C-4에 해당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VN의 직업교육시설은 TAFE(Training & Further Education)이라고 불리는 공적 시스템에 포함된 시설과 사적인 시설이 있고, 어느쪽이든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이 책정한 통일된 커리큘럼에 근거해서 VN 교육을 한다. VN교육을 하는 시설은 각 주의 정부기관에 의해 정기적으로 교육내용을 평가받고, 인정받는다.

다) VN의 자격인정제도

(1) 인정의 주체와 조건

VN의 자격인정은 주정부로부터 인정받은 TAFE 등 교육시설에서 VN 양성교육을 수료함으로 써 주정부가 발행하는 C-4의 자격증명서를 얻는 것이다. 서호주 주에서는 C-4를 소지한 유자격 자를 수의사와 마찬가지로 주의 수의사위원회(VSB)가 VN으로서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다른 주에서는 VN을 등록하는 시스템은 없지만, C-4 자격은 주가 발행하는 공적인 것이므로, 동물의료관계자 사이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서호주 주와 같은 유자격자로서 평가받는다.

(2) 인정시험

VN의 자격인정은 주가 인정한 양성시설에서의 과정을 수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수료 후에는 새로운 시험은 없다.

(3) 갱신제도

현 시점에서는 서호주만 1년마다 갱신제도가 있고, 다른 주에서는 갱신제도는 없다.

라) VN의 업무

(1) VN의 업무에 관련된 법령 상의 규정

VN이 하는 업무는 서호주에만 법령(VSA:Veterinary Surgeons Act와 Veterinary Surgeons Regulations)에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국가가 정한 TP에 제시되는 직업교육의 내용에 따르

는 것이다. 그 외 주에서는 VSA에서 '수의사의 감독 하에서 동물의료행위를 하는 자는 법령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예외규정이 있고, VN은 수의사의 감독과 책임 하에 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실제로는 서호주 주 이외의 주에서의 업무내용도 국가가 책정한 TP(Training Packages)에 제시되는 교육내용에 따르며, 주에 따른 차는 거의 없다. 따라서 VN을 감독하는 수의사에 따라서 시설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VN은 전국적으로는 같은 업무를 하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된다.

서호주 주 Veterinary Surgeons Regulations에서 정하는 동물간호사의 업무내용

- 1. VN은 수의사의 직시 및 직접적인 감독 하에 외과적 처치를 보조할 수 있다.
- 2. VN은 수의사의 감독 하에 이하의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 ① 치과처치(단순한 발치 포함)
- ② 피부표면의 외과처치(피부봉합 포함)
- ③ 방사선 안전법이나 다른 법령에 관련된 X선 촬영, 심전도 기록
- ④ 병리학적 검사를 위한 준비
- ⑤ 정맥 내 점적, 수액의 실시
- ⑥ 정맥 내 카테테르의 유치
- ⑦ 마취의 보조 및 모니터링
- ⑧ 마취각성 시 동물의 모니터링
- 3. VN은 수의사의 지시에 근거해서 이하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① 동물의 신체검사
- ② 체중제한, 영양, 기생충 구제 등에 관한 일반적 조언
- ③ 동물의 격리와 감염방어
- ④ 계획적인 투약의 실시
- ⑤ 수의사가 처방한 약제의 교부
- ⑥ 창상의 처치, 수술창의 처치
- ⑦ 동물의 간호
- ⑧ 임상병리학 검사의 실시
- 4. VN양성과정의 학생은 수의사의 직시 및 직접적인 감독 하에 있다면, 상기 1~3의 업무를 모두 실시할 수 있다.

마) VN의 처우

호주에서는 노동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에 의해서 직업별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주마다 정해져있다. VN은 동물진료시설 등에 근무하는 고용자로서 4개의 레벨(각 레벨의 업무내용도 규정되어 있다.)과 업무형태(상근자, 파트타임, 임시고용자)에 따라서 구분되고, 최저임금이 정해져있다. 가령 레벨1의 VN(상근자)이고 최저임금으로서의 주급(주38시간 근무)가 576호주달러, 레벨4는 주급 669호주달러이다.

5) 중국

중국의 수의과대학이나 수의전문학교에서 매년 배출되는 졸업생은 약 2만명 수준이다. 예전에는 졸업생이 자신을 수의사라고 칭하면 그냥 수의사가 되는 것이었지만, 3년 전 수의사 국가시험이 도입된 이후에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수의사로 인정받는다. 기존에 수의사로 활동했던 사람들도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동물병원에서 간호사는 수의대나 수의전문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수의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담당한다. 4~5년제인 수의대에 비해 3년제인 수의전문학교(한국의 전문대와 비슷한 직업학교)의 교육이 열악하기 때문에 해당 졸업생들은 간호사로 일하며 경험을 쌓아 수의사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간호사가 일종의 예비수의사인 셈이다.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약의 조제나 주사 등 진료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병원 내의 일반인 직원이 진료와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6) 일본

'동물간호사'는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수의료 보조자를 말하는데, VT (veterinary technician), VN (veterinary nurse), AHT (animal health technician) 라고도 한다. 동물 간호사의 업무는 수의사의 지시 하에 진료 보조, 문진 작성, 입원 동물의 식사관리, 돌봄, 혈액이나 변의 검체 검사, 조제, 청소, 접수, 사육자에 대한 설명 및 지도 등으로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수의학, 동물과학의 지식을 요하며, 동물병원 이외에 펫 샵, 펫 살롱, 펫 보험회사, 기타 동물계 시설 및 기업에서도 일을 하고 있다. 동물 간호사가 되려면 주로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2~4년 과정을 수료하고, 다양한 인정단체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수의사 이외의 자가 수의료의 현장에 가담하는 것은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동물에 대한 고도의 수의료의 수요가 높아지는 현실에서는 수의사만으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동물간호사 직무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동물병원 등 진료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사육동물의 진료는 수의사의 독점업무이므로 수의사가 아닌 자는 진료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수의사법 17조) 하지만 실제로 무엇이 진료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검체 검사나 체온 및 맥박의 측정은 결과 판정만이라면 진료행위에 속하지 않고,

또한 기타 동물의 보살핌, 보정, 털 깎이, 수술 시 기구 이동, 위생·식사·사육에 관한 지도 등도 진료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동물간호사의 업무 가능한 범위는 지극히 애매하 다.

실제로는 상기 행위들 말고도 채혈, 투약, 진단, 마취, 렌트겐 촬영 등 동물간호사에 의한 진료 행위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에서의 간호사 는,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에 근거한 명칭 독점 규정이 있으므로 간호사가 아닌 자가 간호사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이용할 수 없는데, 그 때문에 동물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동물 간호사'의 명칭과 업무 내용을 법률로 명확 히 할 것이 요구된다.

7) 검토

가) 수의테크니션의 교육

영국 · 미국 · 스위스 · 호주 등은 모두 동물간호직에 관해서 공적자격제도 하에서 자격의 인정(등록)을 하고 있으며, 공적인 기관이 동물간호직의 교육에 관련되어 있다. 미국은 미국수의사회가 인정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되는 것이 모든 주에서 인정 조건이었고, 다른 3개국에서는 국가가 관계하는 기관에 의해 교육 프로그램이 책정되어 있었다.

영국, 스위스 및 호주에서의 간호직 교육은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져 온 직업훈련의 스타일 이 계승되어, 동물진료시설에 취업해서 훈련받으면서 교육시설에 통학하거나 통신교육에 의한 프로그램을 부가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이며, 미국에서는 대학 또는 전문학교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일반적인 교육환경은 유럽보다 미국에 가깝다. 일정 수입을 받고 현장에서의 감각을 연마하면서 기술을 익히는 유럽형 교육에도 미국형에는 없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2) 동물간호직의 인정

동물간호직의 자격인정은 미국, 영국 및 서호주 주처럼, 수의사의 자격인정과 마찬가지로, 수의관계법령의 규정에 근거해서 되는 경우와 스위스 및 서호주 주 이외의 호주 각주처럼 직업교육수료에 관련된 자격으로서 증명되는 경우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인정·증명을 공적 기관이 하고있는데, 동물의료관계자의 신뢰 및 사회적인 신용이 중요하다.

또한 인정·증명 시에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영국, 스위스, 호주에서 인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수

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시험은 없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수의사 외에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사 등 전문직의 자격인정에 국가시험이 있음을 고려하면, 통일적인 시험을 보고 유자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 수의료 제공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얻기 쉽다고 보인다.

(3) 동물간호직의 업무

각국에서의 동물간호직 업무내용은 미국에서는 법령에 의해 주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호주(서호주 제외) 및 스위스에서는 수의사의 책임이 되는데, 모든 국가에서 동물간호직의 교육 프로그램이 통일되어 있으므로, 그 업무내용도 대부분 차가 없는 범위에 머무른다. 국가별로 동물간호직의 업무내용을 보면, 미국, 영국, 호주, 스위스 순으로 업무내용의 범위가 좁아지는데, 국가에따른 차보다도 수의사의 사고방식에 따른 동물진료시설 별 차가 큰 것 같다. 모든 국가에서 '동물진료를 실시함에 있어서의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진단이나 예후판정, 처방 외에 생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술'은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마. 상품수입 규제

미국의 경우 반려동물용 사료, 건강보조제 및 의약품은 미 식약청인 FDA에서 관리 및 규제하고 있으나 그 외 장난감, 줄 및 목걸이 등의 기타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 FDA에서는 반려동물용 사료 생산업체에 대해 일반 식품 생산업체와 같이 생산기지 등록 및 제품 등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경우 FDA 승인 필요하다.

바. 사체처리 규제

중국에서는 매년 1천 여 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의 사체가 처리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에 의거하여, 죽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교외지역에는 다양한 반려동물 전용 묘지가 꾸준히 개발 중이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베이징 창 핑, 다싱 등의 교외에는 반려동물 전용 묘지가 잘 발달되어 있다. 장례 서비스는 매장, 수목장, 박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해 묘지 안치를 선호하며, 반려동물의 흔적을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메모리얼 스톤도 큰 인기를 끈다. 장례비용은 7백 위안(약 12만원)에서 4만 위안(약 650만원)까지 다양하며, 높은 장례비용에도 불구하고 큰 수요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사. 영업의 등록 및 신고

1)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전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제32조, 제33조 제1항). 또한 동물생산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전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2조, 제34조 제1항).

동물판매업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법이 정한 사항(동법 제9조 제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하는 등의 행위규제를 받게 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영업을 하는 자가 사육·관리, 판매 등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는 등 일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수 있다(동법 제38조).

2015년 현재 총 3,288개의 동물판매업소가 전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물장묘업은 경기도 7개소, 총남 3개소 등 전국에 총 16개소가 운영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⁸).

	2012	2013	2014	2015
동물판매업체	2,152	2,454	2,706	3,288
동물장묘업체	7	7	14	16

(표 3-8)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록업체 수

2) 일본 : 동물카페 사례

가) 필요한 허가의 종류

(1) 다음 중 하나를 관할보건소에 신청한다.

- 음식점영업 : 식품을 조리하거나 설비를 설치하여 손님이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는 영업

- 찻집 영업 : 찻집, 기타 설비를 설치하고, 주류 이외의 마실 것 또는 다과를 손님에게 섭취하 도록 하는 영업(자동판매기도 포함)

^{28) &#}x27;15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보도자료, 2016. 5. 11. 농림축산식품부

<필수 책임자의 자격>

- 식품위생책임자 : 영양사, 조리사, 제과위생사, 식품위생관리자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식품위생책임 자의 유자격자가 된다.
- (2) 환경성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제1종 동물취급업자(전시)로서 도도부현 지사에게 등록 신청을 요한다. 제1종 동물취급업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상근 직원 중에서 전속 동물취급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동물취급책임자는 독립된 자격증이 아니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동물취급책임자의 요건>

-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운영하려고 하는 제1종 동물취급업 종별마다 반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을 것
- 운영하려고 하는 제1종 동물취급업의 종별로 관련 지식 및 기술에 관해서 1년 이상 교육하는 학교법 인 기타 교육기관을 졸업할 것
- 공평성 및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하는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운영하려고 하는 제1종동물취급업의 종 별에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2) 동물취급책임자 연수의 수강이력이 있을 것
- 3) 이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법 제10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제1종 동물취급업자)이며 법인인 자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서, 그 처분이 있기 전 30일 이내에 그 제1종동물취급업자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업무의 정지를 명받고, 그 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나) 고양이카페의 실태조사

제1종 동물취급업 중 판매업자, 대여업자, 전시업자이고 성체고양이(생후 1년 이상의 고양이)를 해당 고양이가 휴식이 가능한 설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전시하는 업자(소위 고

양이 카페)에 관하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2015년10월, 314점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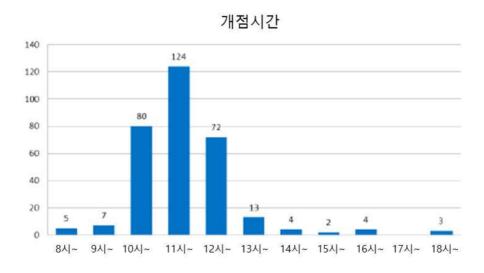
○ 조사내용 : 영업시간, 사육두수, 업종, 소재지, 양도활동 유무, 행정지도 유무

(1) 각 점포의 영업시간



<그림 3-4> 각 점포의 영업시간

(2) 각 점포의 개점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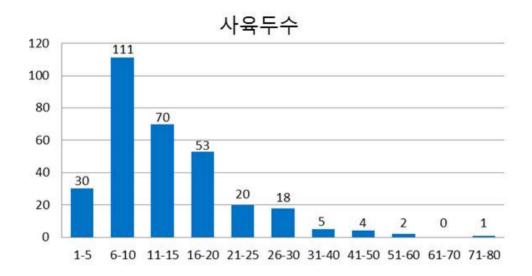
<그림 3-5> 각 점포의 개점시간

(3) 각 점포의 폐점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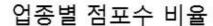
<그림 3-6> 각 점포의 폐점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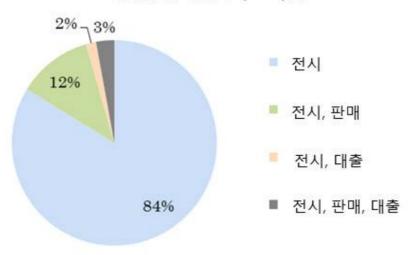
(4) 사육두수



<그림 3-7> 사육두수

(5) 업종별 점포수 비율





<그림 3-8> 업종별 점포수 비율

다) 고양이 카페 업계의 현황과 고양이 카페 협회에 의한 노력

(1) 고양이 카페의 상황

일본의 고양이 카페 점포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에 3점포였던 것이 2015년 말시점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300점포로 증가하였다. 또 영업 형태도 종래의 고양이카페에서 보호고양이를 취급하고, 입양가족을 찾는 것(약 80점포), 펫샵이나 사육종이 경영해서 새끼고양이를 판매하는 것(약 20점포)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2) 고양이 카페 협회에서의 가맹점을 위한 노력

① 고양이나 이용자가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주규제를 마련하고 가맹점은 이를 준수. (주요 자주규제)

- 연1회의 왁친접종 및 건강진단
- 단골동물병원을 협회에 등록
- 모든 고양이를 협회에 등록

② 고양이 카페 업계의 파악과 이용자로부터의 정보창구

- 고양이 카페업계의 실태조사로서 설문조사를 실시

(설문조사 결과)

점포 면적 : 최소 12㎡, 최대 264㎡ 바닥면적 : 최소 5㎡, 최대 230㎡

사육두수 : 최소 4마리, 최대 68마리

③ 반년에 1번 협회가맹점에서의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고양이의 생태에 대한 지식을 향상 시키도록 노력

2. 지원 관련 제도 및 정책

가. 의료서비스

프랑스 동물보호회사(la société protectrice des animaux)는 여러 곳의 무료진료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층 주인들을 지원하는 회사이다. 무료진료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세 납세 증명서 등 극빈자 수당 수혜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무료진료소를 통하여 예방접종, 엑스레이 검사 또는 외과진료를 진행한다.

나. 조세혜택

1) 미국

미시간, 테네시 그리고 콜로라도 등 3개주 공화당 하원의원 3명의 후원으로 추진된 미국 반려동물 세금감면법이 유야무야되었지만 현행 미국 연방조세법하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감면이 가능한 경우의 규정이 생겼다.

구분	설명
① 거주지 이전	이사할때 반려동물운송비; 이사 이유가 직업과 관련되어는 경우
② 사회안전과 경제에 기여하는	서비스동물 관련 지출; 장애보조견, 경비견, 의료업무지원견 등이 있으

반려동물	며 개 이외의 여타 동물도 포함하며 달리 말하면 직업견/동물이라 할 수 있겠음.
③ 서비스 동물	미국 국세청(IRS)은 시청각장애인을 보조하는 개 및 여타 서비스동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세금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Guide Dog and Other Service Animal, 서비스견 취득과 훈련, 관리 등에 지출되는 비용전반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의료업무지원견에 치유견 (therapy dog)은 포함되지 않으나 별도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음.
④ 예술 · 스포츠활동 반려동물	사냥, 독쇼(dog show), 달리기 및 민첩성 등 운동대회 참가 반려동물 관련 지출의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 참가대회에서 받은 상금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상금금액까지 감면가능하다.
⑤ 양육 · 입양	양육은 위탁가정에서의 양육을 말하며, 반려동물 입양시 세금감면되는 비용은 입양비가 동물보호센터 등 입양주선기관의 기부금이 되는 경우 에 한한다.

(표 3-9)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조세혜택

2) 한국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2011년부터 반려동물의 진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기초수급자의 반려동물의 진료 및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는 여전히 면세대상에 포함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 라목 및 가목).

다.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법 제15조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2항), 시·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5항).

또한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동물 학대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하는 등 (제6항) 일정한 행위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시도지사가 유기된 동물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써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한 시설은 2015년 현재 전국에 307개소(직영 28, 위탁 279)가 있다.

3. 개별산업 관련 제도 및 정책

가. 반려동물 판매업

1) 일본의 경매업

가) 경매업 신설에 대한 논의(환경성 중앙환경심의회에서의 논의)

(1) 규제의 필요성(대략 합의)

- 업계단체 : 많은 펫샵이 옥션시장에 의존해서 동물을 매입하고 있다. 강아지의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관계자의 자조노력도 진행 중이나 더 노력이 필요하다.
- 애호단체 : 옥션시장 참가자가 등록업자이고, 동물취급업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인지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므로, 합법성을 확인하는 시스템 필요하다.
- 동물전문가 : 옥션시장이 현행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업으로서 법률 체계 안에 넣고 감시하는 시스템 필요하다.

(2) 규제내용(논쟁있음)

- 애호단체 : 어린 동물을 경매에 내놓는 것 자체에 위화감이나 혐오감이 있다. 옥션시장에서의 거래에서 구미처럼 브리더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 업계단체 : 옥션시장의 출품전표에는 동물의 번식자명을 기입하는 란이 있다. 이를 공표하는 등 추적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규제 방법(대략 합의)

- 애호단체, 수의사 : 현재 동물취급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동물취급업에 포함시킨후 적어도 세목 등에서 현장검사, 공개, 감염증대책, 유전적 질환의 추적을 확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4) 관련 노력 : 2012년 6월 1일 개정 동물애호관리법 시행

제10조 동물(포유류, 조류 또는 파충류에 속하는 것에 한하며, 축산농업에 관련된 것 및 시험연구용 또는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용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용도를 위해 사육하거나 보관하고있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부터 제4절까지 동일함.) 취급업(동물의 판매(그 중개 또는 대리를 포함. 다음 항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제21조의 4에서 동일), 보관, 대여, 훈련, 전시(동물과의 접촉 기회 제공을 포함. 다음 항 및 제24조의 2에서 동일)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취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 및 제46조 제1호에서 '제1종동물취급업'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의 등록을받아야 한다.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매알선업', '양수사육업'이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취급'으로서 정해졌다.

OJ K	ı II O	그러나 이 게
업종	내용	해당 업자의 예
판매	동물의 소매 및 도매, 이를 목적으로 한 번식 또는 수출입을 하는 업(그 중개 또 는 대리 포함)	소매업자, 도매업자, 판매 목적의 번식 또는 수입업자, 노점에서의 판매를 위한 동물 사육 업자, 사육시설이 없는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 매업자
보관	보관을 목적으로 고객의 동물을 맡는 업	펫 호텔업자, 미용업자(동물을 보관하는 경우), 펫 시터
대여	반려, 촬영, 번식 기타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업	펫 렌탈업자, 영화 등 탤런트·촬영모델·번식용 동물파견업자
훈련	고객의 동물을 보관해서 훈련하는 업	동물의 훈련·조교업자, 출장훈련업자
전시	동물을 보여주는 업(동물과의 접촉 제공 포함)	동물원, 수족관, 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테마파크, 이동동물원, 동물 서커스, 승마시설, 애니멀테라피업자('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매 알선	동물을 매매하려고 하는 자의 알선을 회 장을 설치하고 경매의 방법으로 하는 것	동물 옥션운영업자
양수 사육	동물을 양수해서 사육하는 것(양도한 자가 해당 사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노견 홈, 노묘홈

(표 3-10) 일본의 동물취급업 분류 및 해당업자 예

제21조 (기준준수의무)

① 제1종동물취급업자는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생활환경의 보전 상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취급하는 동물의 관리 방법에 관하여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는,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생활환경 보전 상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에서 전항의 기준을 대신하여 제1종동물취급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정할수 있다.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종동물취급업의 준수기준)

제8조 법 제21조제1항의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 5호 판매업자는 제1종동물취급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동물을 판매하려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하려고 하는 동물에 관해서, 그 생리, 생태, 습성에 합치한 적정한 사육 또는 보관이 행해지도록, 계약 시 사전에 다음에 게재하는 해당 동물의 특성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해당 제1종동물취급업자에게 문서(전자적 기록 포함)을 교부하여 설명하는 동시에, 해당 문서를 수령한 것에 관해서 해당 제1종동물취급업자에게 서명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단 2에서 10까지 게재하는 정보는 필요에 따라서 설명하면 충분한 것으로 한다.
 - 1 품종의 명칭
 - 2 성 성숙 시 표준체중, 표준체격 기타 몸 크기에 관련된 정보
 - 3 평균 수명 기타 사육기간에 관련된 정보
 - 4 사육 또는 보관에 적합한 사육시설의 구조 및 규모
 - 5 적절한 섭취 및 급수 방법
 - 6 적절한 운동 및 휴양 방법
 - 7 주요 사람과 동물의 공통감염증 기타 해당 동물이 걸릴 우려가 높은 질병의 종류 및 그 예방 방법
 - 8 불임 또는 거세 조치의 방법 및 비용(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에 한함)
 - 9 8에 게재하는 것 외에 지나친 번식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불임 또는 거세의 조치를 불가역적 인 방법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경우 제외)
 - 10 유기의 금지 기타 해당 동물에 관련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제 내용
 - 11 성별의 판정결과
 - 12 생년월일(수입된 동물로 생년월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되는 생년월일 및 수입년월일)
 - 13 불임 또는 거세 조치 실태상황
 - 14 번식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등록번호 또는 소재지(수입 동물이고, 번식한 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수출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재지, 양도받은 동물로 번식한 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재지)
 - 15 소유자의 성명(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동물을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함)
 - 16 해당 동물의 병력, 백신 접종상황

- 17 해당 동물의 부모 및 동복자에 관련된 유전성 질환의 발생상황
- 18 1에서 17까지 게재하는 것 외에 해당 동물의 적정한 사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사항
- 9호 <u>경매알선업자는 실시한 경매에서 매매 시, 제5호에 게재하는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 시 판매업</u> 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한다.
- 10호 제5호에 게재하는 판매에 관련된 계약 시 설명 및 제1종동물취급업자에 의한 확인, 법 제21 조의 4의 규정에 근거한 정보제공 및 제6호에 게재하는 해당 정보제공에 관하여 고객이 확인 및 제8호에 게재하는 대여에 관한 계약 시 정보제공의 실시상황에 관해서, 양식 제11에 의해 기록한 대장을 조제하고, 해당 판매 또는 대여에 관련된 고객을 명확히 한 후, 이를 5년간 보관한다. 경매알선업자는 실시한 경매에서 매매된 동물에 관해서, 제5호에 게재하는 판매에 관한 계약 시 설명 및 고객의 확인에 관련된 문서의 사본을,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동시에, 해당 사본에 관련된 판매업자 및 고객을 명확하게 한 후, 이를 5년간 보관한다. 단 개고양이 판매업자가 법 제22조의 6 제1항에 근거한 개고양이 개체에 관한 장부를 갖춘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 11호 동물의 매입, 판매 등 동물 거래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거래의 상대방이 동물 거래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음 및 위반할 우려가 없음을 청취하고,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상대방과 동물을 거래하지 않는다. 특히 특정동물의 거래 시에는 사전에 그 상대 방이 법 제26조제1항의 허가를 받았음을 허가증을 통해 확인하고, 허가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동물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
- 12호 전 각 호에 게재하는 것 외에, 동물의 관리 방법에 관하여 환경대신이 정하는 세목을 준수한다.

동물취급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동물 관리의 방법 등 세목

(동물의 관리)

제5조 동물의 사육 또는 보관은 다음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6호 보관업자 및 훈련업자는 사육 또는 보관하는 동물 간의 감염성 질병의 만연 또는 투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 자 등과 함께 사육 또는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동물을 개별 수용해야 한다. <u>경매알선업자가 경매 실시를 위해 해당 경매에 내보내는 동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강구하도록 힘써야 한다.</u>
- 2항 사육시설에서의 동물의 질병에 관련된 조치는 다음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1호 새로운 동물을 사육시설에 도입함에 있어서는, 해당 동물이 건강함을 육안 또는 도입에 관련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의 청취를 통해 확인하고, 그 동안 필요에 따라서 다른 동물과 접촉시키지 않도록 한다. 경매알선업자가 경매 실시에 있어 해당 경매에 내보내는 동물을 일시적으로보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다.

제6조 (기타의 준수사항)

4항 동물의 매입, 판매, <u>경매 등 동물의 거래상황에 관해서 기록한 대장을 만들고, 이를 5년간 보관한</u> <u>다.</u> 6항 경매알선업자는 실시하는 경매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동물취급업의 등록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동물의 거래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하지 않았음 및 위반할 우려가 없음을 청취하고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시하는 경매에 해당 사업자를 참가시키지 말아야 한다.

(5) 해외의 규제

프랑스에서는 동물용으로 개최된 것이 아닌 행사에서 동물을 유상·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단 지사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동물상에 대해서 특정 장소에서 사전에 정해진 기간 동안 행해지는 매매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농사법전 제214-7조)

나) 경매알선업(동물옥션 - 회장을 설치하는 경우)

경매알선업이란 동물의 매매를 원하는 자의 알선을 회장을 설치해서 경매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에 관해서는 동물취급업이 모두 동일하다. 해당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동물애호관리법 제10조1항).

다) 일본 반려동물 경매 관련 법조항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1종 동물취급업자의 등록을 요하는 취급)

1호 동물을 매매하려고 하는 자의 알선을 회장을 설치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하는 것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종 동물취급업자의 준수기준)

9호 경매알선업자(등록을 받고 동물의 매매를 하려고 하는 자가 알선회장을 설치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실시한 경매에서 매매가 행해진 때에 판매업자가 판매에 관련된 계약시의 설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10호 판매에 관련된 계약 시의 설명 및 제1종동물취급업자에 의한 확인, 해당 정보제공에 관한 고객에 의한 확인 및 대출에 관련된 계약 시의 정보제공의 실시상황에 관해서, 대장을 마련하여 해당 판매 또는 대출에 관련된 고객을 명확히 한 후, 이를 5년간 보관한다. 경매알선업자는 실시한 경매에서 매매된 동물에 관해서 판매에 관련된 계약 시의 설명 및 고객에 의한 확인에 관련된 문서의 사본을, 판매업자

로부터 받는 동시에 해당 사본에 관련된 판매업자 및 고객을 명확히 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한다. 단 개고양이 판매업자가 개고양이의 개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동물취급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동물 관리의 방법 등 세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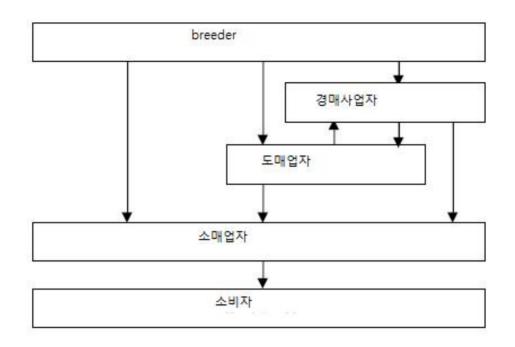
(동물의 관리)

제5조

- 1항 동물의 사육 또는 보관은 다음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6호 보관업자 및 훈련업자는 사육 또는 보관하는 동물 간의 감염성 질병의 만연 또는 투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 자 등과 함께 사육 또는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동물을 개별 수용해야 한다. 경매알선업자가 경매 실시를 위해 해당 경매에 내보내는 동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강구하도록 힘써야 한다.
- 2항 사육시설에서의 동물의 질병에 관련된 조치는 다음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1호 새로운 동물을 사육시설에 도입함에 있어서는, 해당 동물이 건강함을 육안 또는 도입에 관련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의 청취를 통해 확인하고, 그 동안 필요에 따라서 다른 동물과 접촉시키지 않도록 한다. 경매알선업자가 경매 실시에 있어 해당 경매에 내보내는 동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다.
- 6조 (기타의 준수사항)
- 4항 동물의 매입, 판매, 경매 등 동물의 거래상황에 관해서 기록한 대장을 만들고, 이를 5년간 보관한다.
- 6항 경매알선업자는 실시하는 경매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동물취급업의 등록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동물의 거래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하지 않았음 및 위반할 우려가 없음을 청취하고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시하는 경매에 해당 사업자를 참가시키지 말아야 한다.
- 라) 펫(개 고양이)의 거래에서의 표시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29)
- (1) 유통경로

개·고양이의 생산에서 구입, 판매까지의 유통경로는 다음과 같다.

^{29) 2008}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총국



<그림 3-9> 개·고양이의 유통경로

(2) 경매사업자

경매사업자란, 브리더가 생체를 출품하면 도매업자나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는 경매 (옥션)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경매사업자로부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적어도 15곳의 경매사업자가 존재하고 그 중 주식회사가 1곳, 유한회사가 여러 곳, 기타는 개인사업자이다.

(3) 경매의 비즈니스모델

경매의 비즈니스모델은 회장을 제공하는 대신, 입찰에 참가하는 브리더나 펫샵의 바이어로부터 입회금(2~10만엔), 연회비(2~5만엔), 낙찰금액의 수수료(5~8%)를 받는 것이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자 수는 평균 300~400, 큰 곳에서는 1,000을 초과한다고도 한다. 2008년도 개의 유통량은 전국적으로 약 59만 5,000마리가 생산되고, 그 중 펫 옥션으로 55%, 통신판매로 25%, 소매업자를 통해 17%, 도매업자가 3%가 유통되었다. 일본 국내에서 유통되는 개의 절반 이상이 옥션을 경유하고 있다.

(4) 경매의 관리체제

(가) 출품자의 체크

경매업자가 브리더의 전수실태조사를 하고, 악질 번식업자를 배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동물취급업을 등록하고 입회금만 내면 양심적인 브리더와 악덕 번식업자의경계가 없어진다. 그 결과 질병의 유무보다 재고를 없애는데 중점을 둔 저질 번식업자가 들어올여지가 생긴다.

(나) 출품동물의 건강체크

경매장에 운반된 강아지나 고양이는 우선 감정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육안으로 검사를 한다. 하지만 이 감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수의사가 아닌 경우가 많고, 지극히 단시간에 하므로 질병이 있는 동물이 옥션회장 내에 들어올 위험성이 항상 있다.

(다) 은폐체질

경매장에는 질병이나 사망의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생산자의 책임이 아니라 구입한 소매업자의 책임이라는 관습이 있다. 소매점 측도 재고 수나 예약된 견종을 원활하게 매입하고자 하는 형편 상, 생산자 측에 항의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또 옥션 업자도 회원이 불리해지는 정보는 가능한 한 개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2) 반려동물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 - 일본의 사례 연구30)

가) 분쟁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소비자 a(30대 여성)와 b(50대 남성)이며, 피신청인은 사업자인 펫샷(법인)이다.

나) 분쟁의 개요

(1) 신청인 a의 사안

X시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점포에서 구입한 어린 반려견이 구입 다음날 설사·구토. 동물병원에서 파르보 바이러스 감염증의 의심이 있다고 진단받고, 회복되기까지 치료비가 12만엔 들었다. 사업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했으나 처리해주지 않았다.

(2) 신청인 b의 사안

³⁰⁾ 펫 매매계약에 관련된 분쟁사건 보고서, 2012년 7월, 미야기현 소비자피해구제위원회

Y시에 소재하는 사업자 점포에서 구입한 어린 반려견이 몸상태가 나빠지고, 이튿날에는 동물 병원에서 지알디아 편모충에 감염되었다고 진단받고 입원했으나 수일 후에 사망. 사업자에게 반려견 대금의 반환과 치료비의 지불을 구했으나, 처리해주지 않았다.

다) 심의 및 조정의 경과

2011년 12월 9일자로 이 분쟁의 해결을 미야기현 지사로부터 부탁받은 미야기현 소비자피해구 제위원회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알선 조정부회를 설치하고, 심의·알선을 개시했다. 이후 3회에 걸쳐 동부회에서 심의 및 조정을 하였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의 성립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조정을 중단했다.

라) 제2회 조정의 개요

(1) 신청인 a와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a는 구입 시 개의 건강상태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 하였고, 사망 시 교환하는 보험이 3만엔이라고 들었지만, 입원 보상이 없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았다. 계약서는 그 자리에서 읽지 못했고, 내용 설명 역시 없었다. 계약의 내용이 사업자에게 유리했다. 구입 다음 날 발증하였고 동물병원에서는 파르보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펫샵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피신청인은 파르보 바이러스에 대한 확인 요구하였고,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2) 신청인 b와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b 역시 구입 시 개의 건강상태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 없었다. 개는 구입 당일부터 상태가 좋지 않다가 동물병원에서 지알디아 편모충에 감염되었는데 점포에서 옮은 것이 아니냐는 수의사의 의견이 있었다. 개 사망 후 개 대금 반환과 치료비 지불을 요구했지만 3만 엔으로 보장특약을 두고 있으므로 새로운 개를 찾아서 전달하겠다고 들었다.

피신청인은 판매일의 건강관리일보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판매 시 사료를 먹지 않을 때는 바로 병원에 데려가라고 설명했지만 신청인이 2일 후에 데려갔으므로 신청인의 책임이며 당 점 포에서 감염병에 걸렸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마) 심의 · 조정의 경과

(1) 알선 방침의 결정

위원에 의한 협의의 결과, 다음과 같이 알선방침을 정했다. 계약서의 내용은 명백히 무효라고할 수 없다. 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악질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a는 조정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신청인b는 사무국으로부터 사업자의제안을 전하고, 의향을 확인한다.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조정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2) 양 당사자의 의향 확인

신청인b에 대해서, 사업자로부터의 제안을 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사업자로부터는 이 제안 이상의 교섭을 할 의향은 없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조정은 중단되었다.

바) 분쟁에 관한 고찰

(1) 본건 계약서의 문제점

본 계약서 5조에는 '제1조의 특기사항 이외의 하자가, 해당 펫을 을(소비자)에게 인도한 후에 출현한 경우에는 갑(사업자)은 하자담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제1조의 특기사항이란, 펫 종류, 색·성별, 생년월일 및 혈통서의 유무 4항목이다. 동 제6조에는 '을이 해당 펫을받은 후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펫의 반품, 교환, 매매대금의 반환, 해당 펫에 의해 발생한 수의원에서의 치료비의 손해배상 등 갑에게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일은 일체 불가능하다. 단 제9조의 보장계약을 체결한 을은 제9조A에 규정하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동제9조가 보장특약의 정함이며, A가 보장특약을 체결한 경우의 정함, B가 보장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의 정함이다. 본건에서는 2명의 소비자로부터 동일한 사업자에 대한 고충의 신청이 있고, 각각 계약서의 규정이 다르므로, 이하에서는 i와 ii로 나누어 고찰한다.

(a) 보장특약을 체결한 경우

i) 인도 후 3개월 이내에 전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등한 펫과 교환한다. 인도 후 1년 이내에 전염병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의료비를 상한 2만 엔까지 사업자가 지불한다. 신청인 b의 계약에서는 소비자는 판매대금이 47.880엔인데 보장료로서 3만 엔을 지불했다.

ii) 인도 후 1년 이내에 전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등한 펫과 교환한다. 전염병으로 입원한 경우도 동등한 펫으로 교환한다. 신청인 a의 계약에서는 판매대금 65,000엔이었는데, 보장특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만일 보장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장료 3만 엔으로 사망한 경우에 교환한 다고 설명을 들었다. 또한 사망도 입원도 인도 후 1년 이내의 보장이므로 사망에 관해서만 '인도후 1년 이내'라고 계약서에 명기하는 취지가 불명하다.

(b) 보장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만일 보장특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펫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치료 때문에 통원, 입원해도 계약 상 사업자에게는 일체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다. 당 위원회는 보장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면제받는 규정이 부당한 것은 물론, 보장특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2) 매매의 목적물인 펫의 특수성과 사업자의 책임

법률 상, 펫은 생물이라도 사물로서 취급받는다. 본건처럼 산 직후에 펫이 병으로 상태가안 좋아지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판매시점에서 존재한다면, 하자있는 사물의 매매가 된다. 만일 공업제품이나 농축산물이라면 그것이 판매되는 시점에서는 품질이 일정 레벨 이상으로 상당 정도 균일화되어 있으므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에 관한 하자의 발생률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생물인 펫의 경우에는, 사정이 상당히 다르다.

사단법인 센다이시 수의사회 회장의 의견에 따르면, 자연계에서는 복수로 태어나는 동물의 새끼가 전부 동일하게 자라서 성체가 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통상 그 중 일부만 살아남는다는 설명이었다. 그런데 펫 판매의 경우에는 강한 것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새끼를 전부 판매한다. 일부만 살아남는 원인은 질병만이 아니나 태어나는 새끼를 전부 판다면, 판매되는 펫이 애초에 무언가 질병을 갖고 있거나 허약체질로, 숨겨진 하자가 있는 경우가 당연히 적지 않다. 즉 펫의 건강상태라는 품질에는 애초에 상당한 분산이 존재하며, 사망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온전하게 자라지 않는 결과가 될 하자의 발생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펫의 판매는 하자가 상당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매매라고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펫 판매에서의 사업자의 책임을 고려할 때는, 숨겨진 하자의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소비자는 펫을 산 그 시점부터, 오랫동안 귀여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펫을 하자 없고 완전한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펫으로서 귀여워할 목적으로 사는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기

대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보장특약을 맺을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펫이 판매시점에서 애초에 숨겨진 하자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면, 이 기대는 배신당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숨겨진 하자에 관해서는, 소비자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회피수단도 없다. 하자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소비자에게는 과실은 없다.

따라서 그 하자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관한 리스크는 당연히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하자 담보책임의 면책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3) 본 계약서에서의 하자담보책임면책조항의 효력에 관해서

(2)에서 본 것과 같이, 펫의 숨겨진 하자의 발생률이 높다고 한다면, 동물취급업자인 사업자가 펫이 그러한 목적물임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 본건의 사업자도 판매한 100마리 중 5마리는 사망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정확한 숫자라고 한다면 사망확률을 5% 정도로 높은 확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하자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것에 과실도 없으며, 회피수단도 없다. 따라서 사업자가 하자에 의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함은 당연하다.

(a) 보장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보장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면책 받는다고 정한 (1)에서 본 조항은, 하자를 알아야 하는 사업자가 전혀 알 길이 없는 소비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며, 민법 제 90조에 의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또 민법 제1조 제2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소비자의이익을 일방적으로 해하는 것이므로, 소비자계약법 제10조에 의해서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570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566조 제1항에 의해, 소비자는 하자에 의해 발생한손해의 배상(치료비, 입원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사망이나 중병 등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는 지불한 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동등한 펫과의 교환은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이론 상 다툼이 있는데, 본건처럼 사업자가 교환에 응한다면, 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b) 보장특약을 체결한 경우

(1)의 각 조항은 보장료를 지불함으로써 사업자가 일정한도의 입원비용 부담이나 동등한 펫과의 교환에 응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들 조항도 또 문제가 있다. 본건에서는 사정청취를 했을

때, 사업자는 펫이 사망했으므로, 가능한 한 보장특약을 가입하도록 권했고, 특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계약 시 설명했으며, 소비자는 이를 납득하고 게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펫 판매의 특수성으로부터, 펫의 하자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처음에 기술했다. 그런데 소비자가 보장료를 지불하고 보장을 받는 것은, 소비자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며, 특약이라는 이름 하에 본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이해할 수 없다. 확실히 형태 상으로는 계약 시에 소비자가 납득해서 보장특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펫에게는 숨겨진하자의 발생률이 높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한 것이며, 만일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보장특약을 체결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하게 소비자의 부지에 편승한 특약이며, 민법 제90조에 의해(1)의 각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해서 무효라고도 생각된다. 또 소비자계약법 제10조에 의해서도, 무효라고도 생각된다. 무효라고 한다면, (1)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권리가 소비자에게 인정된다.

(4) 하자담보책임 이외의 구제

하자담보책임 외에 민법 상의 착오 규정도 적용된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당연히 요소의 착오도 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민법 제95조에 의해서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데,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해도, 하자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불충분한 구제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사기에 의한 취소(민법 제96조)도 있을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펫의 하자에 관해서 알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펫의 하자를 알지 못한 것은 과실이며, 계약 체결 상의 과실 또는 불법행위로서,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해서 하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본건의 소비자는 판매가격의 배 가까운 치료비를 지불하는 것은 장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업자의 판매가격은 확실히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는 면책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 판매가격을 얼마로 할지는 사업자의 자유이며,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더 가격을 올리거나 보험을 이용하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5) 일반사단법인 전국 펫협회의 펫 판매 계약서에서의 담보책임에 관해서

(가) 소비자의 통지의무와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펫 협회의 펫 판매계약서 제5조에는 상태의 급변을 알게 된 때에는 소비자는 '신속하게 사업자에게 연락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고 되어 있다. 제6조 3항 3호는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문제가 일어난 경우 신속하게 사업자와 상담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면책된다고 정하였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연락→사업자의 지시→수의사가 치료→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숨겨진 하자가 원인→계약의 해제 또는 펫의 판매액을 상한으로 하는 치료비의 지불을 청구]라는 절차가 된다.

본건과 같이 사업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수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제5조를 소비자의 통지의무라고 한다면, 이에 위반한 것으로서 제6조 제3항 제3호의 문언 중에 '또는'이 있다고 해도,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업자가 면책될 가능성이 높다. 귀여워하는 펫의 상태가 이상해지면, 당황해서 패닉 상태가 되고 통지를 게을리하는 일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고,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수의사에게 진찰을 의뢰하려고 하는 경우도, 심야나 이른 아침에 사업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통지를 중요시한다면, 통지의무가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구체적인 통지 방법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의논할 필요가 있다.

본 계약서에는 사업자에게 연락해서 지시를 받는 취지의 정함은 없다. 본건 사업자는 무언가 있다면 연락하도록, 계약 시에 소비자에게 설명했고, 연락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단 연락하는 것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수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하고, 치료나 입원도 지정 수의사가 아니면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고액이 될 수 밖에 없고, 만일 치료비가 고액이 될 것 같은 때에는, 별도의 펫과 교환하는 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확실히 일리가 있지만, 사업자와 지정수의사와의 친분이나 유착의 우려는 부정할 수 없다. 또 소비자는 통상 법률을 잘 모르고, 계약서가 생소한 사람은 알 기 어렵기 때문에, 가령 판매 시점에서 구두로 설명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전부 기억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통지의무와 그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관해서는 구두에 의한 설명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긴급한 경우의 연락처나 대처법, 야간 연락처, 지정 수의사의 연락처, 지정 외 수의사의 경우에는 옮길 가능성이 높다거나, 사업자가 지불하는 치료비는 xx엔이 상한이라는 것에 관해서, 인쇄한 문서를 교부할 필요가 있다.

부언하면, 펫 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는 자연인인 개인소비자이므로 상법 제526조가 정하는, 상행위에서의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통지의무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담보기간을 소비자에 게도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민법 제570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566조 제3항에 의해, 펫의 인도시부터 1년의 제척기간으로 해야 한다. 이 점 본 계약서는 인도하고 나서 1년으 로 하고 있으며, 기간은 이쪽이 타당하다.

(나) 다른 펫과의 교환

펫 협회 계약서 제6조 제2항은, 숨겨진 하자가 아님이 원인이고,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펫이 병사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소비자는 펫의 판매액과 동액까지의 다른 펫의 교부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제6조 제3항 제2호·제3호, 제9조 제1항·제3항), 불가항력이라도 (제6조 제3항 제1호, 제9조 제1항·제2항), 사업자가 면책되는 것을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체 어떤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확실한 것은 다른 펫과의 교환은 예외 중의 예외라는 것이다.

상기 (가)에서 본 하자담보책임에서도 계약의 해제 또는 판매액을 상한으로 하는 치료비만 인정하고, 다른 펫과의 교환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제와 함께,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부당이 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만일 소비자가 그렇게 희망한다면, 자체적으로는 동등한 펫과의 교환을 인정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사) 펫 판매의 적정화를 위한 다른 제안

(1) 배상액의 정액화

펫 협회 계약서에서는 손해배상으로서, 치료비를 제외하거나 지불해도 판매가액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 본 계약서도 보장특약을 체결한 때의 교환만 약속할 뿐, 치료비의 청구는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다른 펫과의 교환은 물론이거니와 소비자로서는 치료비의 청구는 당연히 인정받아야할 일이다. 동물 치료는 인간과는 달라서 명확한 지침도 없고, 진료보수 같은 진료비의 기준도 없다. 악질 수의사라면 하고 싶은 대로 할 가능성이 있고, 고도의 선진의료는 상당히 고액이다. 적정한 치료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펫 붐과 앞으로 점점 늘어날 고령자의 반려로서의 펫이라는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서 펫의 문제도 증가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전문가나 사업자, 소비자에 의해 조급히 배상액의 정액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재판 외 분쟁처리기관(ADR)의 창설

전국 펫협회가 중심이 되어 재판 외 분쟁처리기관(ADR)을 조급히 창설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ADR이라도 펫 사건은 본 위원회로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본건 사업자는 재판을 원했지만, 판매

대금이나 치료비 금액을 보면, 아무리 소액소송제도가 있다고 해도 재판으로 가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고, 승소 여부도 판단이 어렵다. ADR이라면 소비자 입장에서 절차를 이용하기 쉽다.

(자료)전국 펫협회

펫 판매계약서(개고양이용)

금번 개고양이를 판매함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본 서를 2통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사업자는 소비자에 대해서, 별지 설명서에 의해 개고양이의 사육방법에 관해서 설명했음을 확인한다. 소비자는 개고양이가 생명이 있는 것임을 충분히 자각하고, 애정을 갖고 종생사육하며 적절한 사육, 예방주사 등 건강관리를 하고, 사육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한다.

사업자명

계약일 년 월 일

	사명(점명)·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동물취급업자등록번호
21 Ol 71		
사업자		담당자명

소비자	성명	전화	
		휴대폰	
	本 泰	E-MAIL	

제1조(판매 펫)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펫을 판매하며 소비자는 이를 구입한다.

종류·품종 :

성 별: 수컷 / 암컷

생년월일 :

인도일 :

혈통서 :유 / 무 (송부예정시기)

※ 혈통서의 신고는 절차 형편 상 3~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혈통서의 명의변경절차는 별도로 소비자가 하며, 변경료도 소비자 부담이 된다.

제2조 (판매대금)

제3조 (지불방법)

제4조 (반품·교환)

펫은 생명이기 때문에, 판매 후 소비자의 형편에 따른 반품·교환은 불가능하다.

제5조 (소비자의 책임)

소비자는 판매 직후 강아지 혹은 고양이가 환경 변화에 의해 상태가 급변하는 것을 자각하고, 펫의 모양이 이상하다고 느낀 경우, 또는 펫의 사육 상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업자에게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제6조 (사업자의 책임)

다음의 경우에 사업자는 책임을 진다.

(1) (사업자의 책임)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해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펫이 판매 시에는 알지 못했던 질환이 있고, 그것이 원인으로

- ① 사망 또는 그것에 준하는 사육계속에 중대한 지장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를 대신해서 제2조의 펫의 판매액을 상한으로 한 치료비(단 치료비 이외의 교통비, 시간 외 요금 등의 비용은 제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①의 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서 치료를 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펫의 판매액을 상한으로 한 치료비(단 치료비 이외의 교통비, 시간 외 요금 등 비용은 제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어떤 경우라도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해서, 본 계약서, 치료를 한 수의사 작성 진단서 및 치료비 명세를 알 수 있는 영수증, 기타 사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것(백신 접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또 계약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생후 1년 이내임을 조건으로 소비자는 상기 문제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무료생명보증)

상기(1) (사업자의 책임) 이외의 이유로,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펫이 병사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해서, 1번에 한해 제2조의 펫의 판매액과 동액 이내의 다른 펫으로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치료비 등 금전의 청구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해서, 상기(1) 기재의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다른 펫과의 교환 대금액이 제2조의 펫의 판매액보다 저렴한 경우라도 사업자는 그 차액은 교부하지 않는다.

(3) (면책사항)

다음의 경우, 사업자는 상기 (1)(2)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알레르기 등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성장과정에서 판단하는 질병 및 증상의 경우
- ② 펫 인도 후, 소비자 및 사육자가 펫을 적절한 방법으로 사육하지 않는 등 사육자의 사육 및 관리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
- ③ 사육자가 적절한 시기에 수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을 태만하거나 문제가 일어난 경우 신속하게 사업 자에게 상담하여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7조 (특수한 증상의 보장)

(1) 대퇴관절염 형성 부전(개)

생후 1년 이내에 대퇴관절염 형성부전이 발생하여, 수의사에 의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소비자는 이하 ①, ② 중 하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① 수의사 검사비용, 및 판매대금액의 20%의 위로금(단 치료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 ② 동 정도의 개와의 교환
- (2)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F·I·P)가 발병하고, 수의사에 의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중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소비자는 이하 ①, ② 중 하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① 수의사 검사비용, 및 판매대금액의 20%의 위로금(단 치료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 ② 동 정도의 고양이와의 교환
- (3) 무릎개골탈구 및 헤르니아(단, 제10조의 특기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는다.) 생후 1년 이내에 무릎개골탈구 혹은 헤르니아가 발병하여, 수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는 소비자는 이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생후 1년 이내의 치료에 한하여, 수의사에서의 검사 및 치료비용.

단 어떤 경우라도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해서, 본 계약서, 치료를 한 수의사 작성 진단서 및 치료비 명세를 알 수 있는 영수증, 기타 사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것을 제출해야 한다. <u>또 제7조의 증</u>상에 관해서는 검사비용, 치료비용을 포함해서 보장금액은 제2조의 펫의 판매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8조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경우의 사업자의 책임)

(1) 본 계약체결로부터 펫의 인도일까지 간격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 인도일까지의 사이에 펫이 사

망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불한 대금(계약금 포함)이 있는 경우는 대금의 반환을 받고, 또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지불하고) 동등한 펫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2) 상기(1)에서 펫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어떤 신체적 이상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펫을 인도하지 않는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불한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의 반환을 받고, 또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지불하고) 동등한 펫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주의사항)

다음의 경우, 사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 (1) 인도 후 펫이 도망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 (2) 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원인에 의한 질병, 사고가 있었던 경우
- (3) 기타 본 계약의 하나를 소비자가 위반한 경우
- (4) 본 계약서에서 특기사항으로서 소비자가 양해한 사항에 관해서.

제10조 (특기사항)(제9조(4)의 사항)

제11조 (신의성실의무)

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성실하게 협의에 의해 처리하기로 한다.

3) 반려동물의 온라인판매 관련 일본에서의 논의

가) 주요 논점

규제의 필요성, 규제내용(금지 혹은 대면판매 의무화로 허용), 규제 방법

나) 환경성 중앙환경심의회에서의 논의

(1) 규제의 필요성(대략 합의)

- 애호단체 : 등록업자라는 취지의 표시가 없고, 문서에 의한 사전설명이 충분히 행해지지 않는 등 현행법 하에서 합법성이 의심되는 거래를 규제할 수 없으므로, 금지해야 한다.(애호단체, 업계
- 수의사 : 특히 인터넷 옥션에서는 생명이 있는 펫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므로 규제가 필요 하다.

(2) 규제내용(대략 합의)

- 업계단체 : 현물확인 실시체제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현물확인에 의한 대면판매를 의무화하고 대면판매가 불가능한 거래는 금지해야 한다.
- 애호단체 : 문제가 있는 동물이 출품되어도 사전에 확인할 수 없다. 대면판매가 필요하다.

(3) 규제방법(논쟁있음)

- 애호단체, 동물전문가 : 동물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심야판매나 이동판매를 법률로 금지한다면, 같은 논리로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
- 법률전문가 : 인터넷 판매 그 자체를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영업의 자유에 저촉하기 때문에 곤란하다.
- 수의사 : 법률로 금지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생체 운송에 관해서 세목 안에 규제해야 한다.

다) 관련 노력: 2013년 9월 1일 개정 동물애호관리법 시행

제21조의 4 (판매 시의 정보제공 방법) 제1종동물취급업자 중 개, 고양이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동물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동물을 구입하려고 하는 자(제1종동물취급업자는 제외)에 대해서, 해당 판매에 관련된 <u>동물의 현재의 상태를 직접 보여주는 동시에, 대면에 의해</u>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이용해서 해당 동물의 사육 또는 보관 방법, 생년월일, 해당 동물에 관련된 번식을 한 자의 성명 기타 적정한 사육 또는 보관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로서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판매 시 정보제공의 방법)

제8조의 2 법 제21조의 4의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동물은, 포유류, 조류 또는 곤충류에 속하는 동물로 한다.

2항 법 제21조의 4 적정한 사육 또는 보관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로서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것은 다음에 게재하는 것이다.

- 1호 품종의 명칭
- 2호 성 성숙 시 표준체중, 표준체격 기타 몸 크기에 관련된 정보
- 3호 평균 수명 기타 사육기간에 관련된 정보
- 4호 사육 또는 보관에 적합한 사육시설의 구조 및 규모
- 5호 적절한 섭취 및 급수 방법
- 6호 적절한 운동 및 휴양 방법

- 7호 주요 사람과 동물의 공통감염증 기타 해당 동물이 걸릴 우려가 높은 질병의 종류 및 그 예방 방법
- 8호 불임 또는 거세 조치의 방법 및 비용(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에 한함)
- 9호 전호에 게재하는 것 외에 지나친 번식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불임 또는 거세의 조치를 불가역 적인 방법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경우 제외)
- 10호 유기의 금지 기타 해당 동물에 관련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제 내용
- 11호 성별의 판정결과
- 12호 생년월일(수입된 동물로 생년월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되는 생년월일 및 수입년월일)
- 13호 불임 또는 거세 조치 실태상황
- 14호 번식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등록번호 또는 소재지(수입 동물이고, 번식한 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수출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재지, 양도받은 동물로 번식한 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재지)
- 15호 소유자의 성명(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동물을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함)
- 16호 해당 동물의 병력, 백신 접종상황
- 17호 해당 동물의 부모 및 동복자에 관련된 유전성 질환의 발생상황
- 18호 전 각호에 게재하는 것 외에 해당 동물의 적정한 사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사항

라) 해외의 규제

영국에서는 도로 상이나 공공장소, 시장 노점 등에서 펫의 판매를 한 자는 유죄이다.(펫동물법 1951 제2조) 또한 인터넷을 매개로 한 판매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나. 수의, 의약품

1) 프랑스

반려동물 진단키트란 사람의 임신진단 키트와 같이 반려동물의 혈액이나 분비물을 떨어뜨려 2 ~10분 안에 질병 유무를 곧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물의료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 진단키트 생산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 '동물 의약품 보고서'(Animal Pharm Report)에 따르면, 동물질병 진단키트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07년 기준 2억 8,300만 달러, 이 가운데 ▲아이덱스(Idexx) 62%(1억 7,600만 달러) ▲ 헤스카(Heska) 11%(3,100만 달러) ▲신바이오틱스(Synbiotics) 6%(1,800만 달러) 등 미국 3개

회사가 79.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시장도 유럽이 차지해 이탈리아가 4.2%(1,200만 달러), 프랑스가 3.5%(1,000만 달러)를 점하고 있다.

2) 일본

펫 샵은 생체판매·미용·푸드 판매·상품 판매·펫호텔·트레이닝 중 하나, 또는 복합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불황이고, 또한 상품이나 푸드의 인터넷 판매가 보급되어서 점포에서 상품의 매출이 줄고 있다. 내점객은 주로 생체판매와 미용·호텔이 주이고, 특히 생체판매는 이익률이 다른 상품에비해 크기 때문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생체판매는 국내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축소 움직임도 보인다. 생체판매에 의존하는 풍조가 아직 크다는 점과, 그 풍조가 현재 동물복지에 어긋나는 업계 체질을 만든 까닭이다. 업계 내에서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고 또한 생체판매 의존을 멈추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상품으로서 주목한 것이 의약품의 판매이다.

펫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상태를 파악해서 케어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펫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병원에 다니는 주인은 많지 않다. 병원에 가는 경우는 증상이 심하거나 예방접종을 위한 때뿐이다. 병원에서는 초진료를 지불해야하고, 시간을 들여 예방약을 구입해야 한다. 약 구입 정도는 인터넷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문지식이 없는 주인이 의약품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병을 얻는 경우도 있다.

펫 세계에도 예방의료가 필요해졌다. 인간의 경우 지역에 밀착된 병원이나 치료원이 입구가 되어, 병상에 맞춰 전문병원을 소개하는 의료연계가 되어 있다. 펫의 경우, 그 입구의 역할을 펫샵이나 펫미용실에서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주인들이 자신의 펫에 대해 상담하는 샵이나 미용실에서 스텝의 지식에 근거한 조언을 받거나 최소한의 예방약이나 치료약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점포의 매출은 상승되고 펫의 의료체계도 새로이 생기게 된다. 이런 역할과 관련해서 농림수산성 관할의 '동물용 의약품등록판매자'라는 자격이 있다.

약사법을 개정하기 위해 5년 전에 시행된 제도로 다양한 협의를 거쳐 실시되었지만 아직 잘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4월 동경도에서 처음 자격시험이 실시되었다. 유자격자는 지정된 것 외의 의약품의 매입이나 판매를 할 수 있다.

[동물용 의약품 등록판매자]31)

동물용 의약품 등록판매자는 약제사 이외의 전문가로서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점포에서,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의약품(지정의약품) 이외의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수헊자격)

- 1. 대학 및 전문학교에서 약학에 관한 전문과정을 수료한 자
- 2. 대학에서 약학 정규과정을 졸업한 자
- 3. 중학 또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이며, 1년 이상 약국 또는 일반판매업, 약종상판매업, 배치판매업 또는 점포판매업에서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자의 관리 및 지도하에 실무에 종 사한 자
- 4. 4년 이상 약국 또는 일반판매업, 약종상판매업, 배치판매업 또는 점포판매업에서 약제사 또는 등록 판매자의 관리 및 지도 하에 실무에 종사한 자
- 5. 약사법 제36조의 41항의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여에 종사하려고 함에 있어서, 1부터 4에 게재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경험을 가졌다고 도도부현지사가 인정한 자. 이하의 (1) 또는 (2)에 해당한다.
- (1) 외국약학교 졸업자
- (2) 고등학교 졸업 정도 인정시험규칙에 근거한 고등학교 졸업정도 인정합격자이며, 1년 이상 약국 또는 일반판매업, 약종상판매업, 배치판매업 또는 점포판매업에서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자의 관리 및 지도 하에 실무에 종사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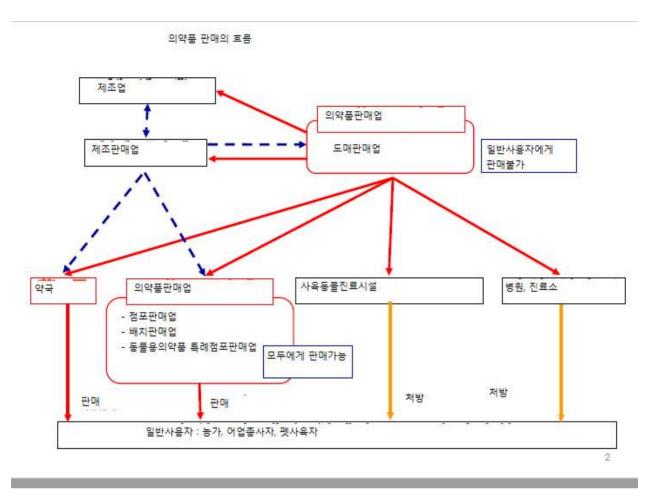
(등록방법)

동물용 의약품 판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하의 하나의 방법이 있다.

- 1.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동물용 의약품 등록판매자 시험에 합격하고, 도도부현지사의 등록을 받는다.
- 2. 사람용 의약품의 등록판매자 시험에 합격하고,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는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동물 몸의 구조나 약의 효능의 부작용, 약사법규 등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수의사자격으로 의약품의 점두판매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펫용 약국을 병설한 동물병원이나 펫샵의 영업도 가능해진다. 수의사 이외 업계에는 없던 공적인 자격, 그리고 의약품의 취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앞으로 펫 업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

³¹⁾ 動物用医薬品登録販売者について



<그림 3-10> 동물의약품의 유통단계32)

의약품 판매업 허가의 종류 (약사법 제25조)

- 점포판매업의 허가 : 요지도의약품 또는 일반용의약품을 점포에서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업무
- 배치판매업의 허가 : 일반용의약품을 배치를 통해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업무
- 도매판매업의 허가 : 의약품을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또는 병원, 진료소 혹은 사육동물진료시설의 개설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에 대해서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업무
- ※ 상기 판매업 허가는 도도부현 지사가 한다.
- ※ 상기 + 약국 + 동물용의약품 특례점포판매업의 5개의 업태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수의 사도 처방은 가능하나 허가없이 판매는 할 수 없다.

³²⁾ 動物用医薬品の薬事制度(流通段階)

동물용의약품특례점포판매업(약사법 제83조의 2의3)

도도부현지사는 점포별로 지정의약품 이외의 동물용 의약품의 품목을 지정하고, 점포판매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지정의약품이란, 리스크가 높고 약제사가 취급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한 것

판매업의 종류	판매방법	판매자격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점포판매업	저고	약제사	모든 의약품
김포판매합 	점포	등록판매자	지정의약품 이외의 의약품
nll 수] 피나미l Ol	배치	약제사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 약품
배치판매업		등록판매자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 약품(지정의약품 제외)
동물용의약품특례점	과소지에서의		도도부현지사가 지정한 품목(지정의약품
포판매업	점포	_	제외)
도매판매업		약제사	모든 의약품
<u> </u>	도매	등록판매자	지정의약품 이외의 의약품

(표 3-11) 동물의약품 판매업

- 지정의약품이란, 독약, 극약 및 항균성물질제제 등 리스크가 높고 약제사가 취급하는 것으로 농림수산대신성령에서 지정한 것
-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약품이란, 의용제, 방충제, 작용을 완화시키는 내용약 등 경년변화가 일어나기 어렵고, 배치판매에 적합한 것. 현재 지정의약품 중 배치판매가 인정 된 약제는 없다.

의약품의 분류	전문가의 배치의무	정보제공의무	상담의무
(제36조의 8)	(제36조의 9)	(제36조의 10)	(제36조의 10)
지정의약품	약제사	노력의무	의무
지정의약품 이외의 의약품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 자	노력의무	의무
도도부현지사가 지정한 품목 (특례점포판매업자의 경우)	판매종사자	노력의무	의무없음

(표 3-12) 동물의약품의 리스크 정도에 따른 판매업자의 의무

다. 장묘업

1) 프랑스

프랑스에서 반려동물 주인의 요구에 따라 강아지나 고양이의 장례식을 진행하는 서비스가 이슈화되고 있다. 리옹에서 사업을 기획한 '르네상스(Renaissance)'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차별화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장 절차를 따로 지켜볼수 있고 사립묘지나 납골당에 반려동물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화장비는 180유로(한화 약 21만 7,000원)며 납골당 안치엔 2,500유로(한화 약302만 원)정도의 비용이 들고, 높은 비용 때문에 매달 4유로(한화 약 5000원)를 내며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기도 한다. 위 회사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외에 반려동물 기념일 이벤트 사업도 계획 중에 있다. 이는 반려동물의 생일에 다른 반려동물을 함께 불러 파티를 만들어주는 컨셉이다. 프랑스는 위와 같은 장례서비스에 따라 사설장례장 뿐만 아니라 공공장례장도 운영하고 있다.

2) 독일

독일의 경우에 반려동물 장례식은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려동물장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국에 120개의 동물 묘지가 있고 180명의 동물장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고양이나 작은 강아지의 화장 비용은 200~300유로이며 묘지 비용은 125유로, 관리비용은 1년에 75유로이다.

3) 일본33)

가) 동물의 사체 처리에 관련된 규정

(1) 동물애호관리법

동물애호관리법 제36조에서는 제1항 '공공장소에서 동물의 사체를 발견한 자는 소유자로 판명된 자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힘써야 한다.' 2항에서는 '도도부현은 통보가 있었던 때에는 그 동물 또는 그 동물의 사체를 수용해야 한다.'는 사체 규정 조문이 있다. 하지만 이 '동

³³⁾ 환경성 중앙환경심의회 동물애호부회 동물애호관리 현황 검토 소위원회 (제8회) 배부자료, 자료1 업종 추가에 관한 검토 '동물의 사체화장·매장업자'에 관해서, 2010년11월29일

물의 사체'규정은 동물의 사체가 공공장소에 방치됨으로써 그 장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동물애호에 관련된 감정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 폐기물처리법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서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으나, 통지에 의해 '동물영원사업에서 취급되는 동물의 사체는 동법 제2조제1항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폐기물처리법 제2조제1항

이 법률에서 '폐기물'이란, 쓰레기, 대형 쓰레기 … 폐 알칼리, <u>동물 사체</u> 기타 오물 또는 불필요한 것이며, 고형상 또는 액상의 것…을 말한다.

구 후생성 통지(쇼와52년 8월 3일자 후생성 환계 제78호) 발췌

'동물영원사업에서 취급되는 <u>동물의 사체</u>는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폐기물에 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폐기물 처리법에 근거한 '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가 필요(동법 제8조)하다는 규제가 있다.

나) 반려동물 사체의 처리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는 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① 사육주가 스스로 처리(자기 소유지에 매장)
- ② 사육주가 지방공공단체(청소국)에 처리의뢰(매각)
- ③ 사육주가 민간사업자 또는 사원에 처리 의뢰(화장, 반골, 매장 등)

다) 사건

사이타마현 한노시에서의 동물사체 불법투기사건은 상기 ③의 경우인데, 사업자는 사육주로부터 받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화장 및 반골 처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고 불법투기하여 문제가 되었다.

라) 기타 관계법령의 예

(1) 동물의 사체소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해를 방지하는 관점에서의 관계법령

○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제3조 규정에 근거해서, 도도부현지사가 악취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규제지역 내에서는 모든 공장 기타 사업장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

○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 사체를 소각하는 시설(법 제2조2항의 '매연발생시설')에 관해서는, 법 제6조에 근거해서 도도무현 지사에게 신고하거나 배기구로부터 배출되는 매연, 유해물질의 배출기준 준수 등 규제가 부과된다. 매연발생시설은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다음의 시설 및 규모가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3 폐기물소각로 화격자면적이 2평방 미터 이상이거나 소각능력이 1시간 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다이옥신류 대책특별조치법

다이옥신류 대책특별조치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 사체를 소각하는 시설(법 제2조제2항의 특정시설)에 관해서는 법 제8조 외에 근거해서, 배출가스(대기)에 관련된 배출기준의 준수 등 규제가 부과되고 있다. 특정시설은 시행령 제1조에 의해, 다음에 게재하는 시설 및 규모가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폐기물 소각로이며 화상 면적(폐기물 소각시설에 2 이상의 폐기물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그 화상면적의 합계)이 0.5 평방미터 이상 또는 소각능력(폐기물 소각시설에 2 이상의 폐기물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그 소각능력의 합계)이 1시간 당 50킬로 그램 이상인 것

라. 보험업

1)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보험회사 뮈뛰엘사의 동물보험을 예로 들면 10유로에서 25유로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료로 인한 보험료 지급률이 증

가하면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는 구조이다.

2) 독일

독일의 경우 애견에 관하여는 등록과 보험 가입이 필수이다. 강아지가 길에 나가서 자동차 사고를 유발 시켰을 때, 다른 집에 가서 물건을 망쳤을 때 또는 손님의 가방을 물어뜯었을 때 보상을 받는 보험이다. 개 한 마리 당 1년에 35 유로에서 70유로 정도이다.

3) 일본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펫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2014년도 보험료 수입은 20% 증가했다. 펫을 가족처럼 중요하게 기르는 주인이 증가하면서, 의료비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펫 보험은 신규참여가 줄을 잇고, 상품이 다양화되고 있다.

펫 보험은 동물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서 입원이나 통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은 때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한다. 보험기간은 1년이고, 보험료는 보상형이 일반적. 손해보험회사의 일부나 소액단기보험회사가 주로 취급하고, 펫샵이나 보험 샵, 인터넷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일본손해보험회와 일본소액단기보험협회에 따르면, 14년도의 펫 보험료 수입은 356억 엔으로 전년도에비해 23% 증가했다.

보상비율은 의료비의 50% 또는 70%이고, 나머지는 자기부담하는 것이 주류다. 보상을 받는 방법은 2가지이다. 하나는 '창구정산'이라고 불리는 방식. 펫 보험회사와 제휴하는 동물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보험회사가 발생한 '보험증'을 제시하면 자기부담분만 지불하면 된다. 인간의 공적 건강보험과 유사한 구조이다. 다른 하나는 비용 전액을 자신이 일단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50% 또는 70%의 보험금을 청구한다. 이용 1회 당 보상액이나 연간 이용 가능한 회수에 상한이 있는 상품이 많다.

펫 보험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펫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펫 보험 최대회사인 애니컴 손해보험의 조사에서는 14년도에 주인이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는 개가 8만 912엔, 고양이는 4만 9,875엔. 200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개는 약 60%, 고양이도 약 40% 증가했다. 이물을 삼키는 오식이나 골절 등 연령에 관계없는 상처 외에, 10세를 넘으면 개는 백내장이나 심장병, 고양이는 신장병이나 당뇨병 등 치료받을 일이 많아져서, 의료비가 증가한다고 한다.

실제로 펫의 장수화가 눈에 띈다. 일반사단법인 펫푸드협회에 따르면, 14년의 개의 평균수명은

14.17세, 고양이는 14.82세였다. 모두 인간으로 치면 대략 70대 이상에 해당한다. 기르는 장소를 옥외에서 실내로 하는 등 사육환경이나 사료를 연령에 맞춰서 바꾸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주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은 공적인 진료보수제도가 없고, '동일한 치료내용이라도 병원에 따라서 진료비가 다른 것도 펫 보험의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고 노무라종합연구소의 노자키 연구원은 지적한다.

수요의 확대를 반영해서 펫 보험에 신규참여하는 회사가 계속 늘어나서 현재는 손보나 소액단 기보험회사 등 10사 이상에 달한다. 상품에서도 보상을 수술과 입원 비용에 한정하고, 통원도 보상하는 종래형에 비해 보험료를 억제한 타입이 증가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지는 넓어졌다. 단 주의점은 적지 않다. 우선 보험료의 부담. 보험료는 펫의 종류나 크기, 보상비율 등 이외에 연령으로 결정된다. 보험료는 연 또는 월 지불이고, 연령이 오를수록 비싸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입을 계속하면 부담은 늘어난다. 가령 아이펫 손해보험의 보상비율 70%의 상품인 경우, 0세의소형견의 연간보험료는 3만 2,740엔이지만, 14세는 원칙적으로 14만 440엔이다.

보험에 가입한 일부 주인이 예상보다 빈번하게 보험을 이용해서, 보험금 지불이 늘어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보험회사측이 수지개선을 위해서, 보험료나 보상내용을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애니컴 손보는 14년6월에 보험료를 인상하고, 11월에는 이제까지는 무제한이었던 통원과입원 일수에 상한을 두었다. '이용자는 보상내용과 보험료가 적당한지 항상 주시해야 한다'고 노자키씨는 말한다.

펫보험회사가 만일 파산하는 때에는, 계약자보호 시스템이 있다. 손보는 손해보험계약자 보호 기구에 의해서 계약은 계속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소액단기보험회사도 공탁금 등으로 파 산 시를 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약할 때에는 보상내용이나 보험료뿐 아니라 경영상황도 체크 해야 한다.

[주인이 사망한 후에, 사육비를 지불하는 신탁]

독거 주인이 사망한 후에 신탁을 활용해서 펫을 돌보는 시스템이다. 일반사단법인 패밀리 애니멀 지원협회의 '펫 신탁'에서는 주인이 다음 주인을 자신이 발견하거나 동협회에 소개받고,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펫과 자산을 맡기는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수탁자는 자산에서 새로운 주인에게 사육비를 지불한다.

펫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보 펫 오너 클럽의 '펫 안심케어'는 동사에 등록하는 동물병원에 맡기고, 사육비는 신탁회사 전용계좌에서 지불한다. 펫이 사망할 때까지의 사육비용으로서 수백만엔을 준비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마. 사료산업

1) 한국

가축용 사료에 한정되었던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가 올해부터 소비자 수요가 높은 반려 동물의 유기사료에 확대 적용된다. 이후 반려동물용 세제·섬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사례조사 등 의견수렴, 소비자 조사 등을 거쳐 표시기준을 연차적으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³⁴⁾

2) 일본

가) 법률: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1) 경위: 2007년 8월 농림수산성 및 환경성이 합동으로 '펫푸드 안전확보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였고, 2008년 6월, 법이 성립되었다.

(2) 취지: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호하며, 동물 애호에 기여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용 사료의 가준 또는 규격을 설정하는 동시에, 해당 기준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 반려동물용 사료의 제조를 금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3) 법률의 내용

- ① 기준 및 규격의 설정 및 제조의 금지
- ②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는 반려동물용 사료의 제조를 금지 농림수산대신 및 환경대신은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는 반려동물용 사료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 ③ 반려동물용 사료의 폐기 등의 명령
- ④ 제조업자의 신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림수산대신 및 환경대신에게 성명, 사업장의 명칭 등을 신고해야

³⁴⁾ 아주경제 2016. 3. 10. 반려동물 친환경 유기사료 인증제도 도입

한다.

⑤ 장부의 비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소매의 경우는 제외)는 판매를 한 반려동물용 사료의 명칭, 수량을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

⑥ 보고징수, 현장검사

농림수산대신 또는 환경대신에 의한 반려동물용 사료의 제조업자로부터의 보고징수, 제조업자 에 대한 현장검사에 관해서 정한다.

나) 정령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

다) 성령: 반려동물용 사료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2015년 8월 20일 최종개정)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규정하는 반려동물용 사료의 성분규 격 및 제조 방법 및 표시의 기준에 관해서는 별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 1. 판매용 반려동물용 사료의 성분규격
- (1) 다음 표의 제1란에 게재하는 첨가물(판매용 반려동물용 사료의 제조 과정에서 또는 판매용 반려동물용 사료의 가공 또는 보존의 목적으로 판매용 반려동물용 사료에 첨가, 혼합, 침윤 기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의 판매용 반려동물용 사료 안의 함유량은 각각 동표의 제2란에 정하는 양 이하로 해야 한다.

제 1 란	제 2 란
아질산나트륨	100 g/t
에톡쉬킨	75 g/t (개용)
에톡쉬킨,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부틸히드록시아니솔 (총합을 말함)	150 g/t

(2) 다음 표의 제1란에 게재하는 농약(농약단속법 제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농약을 말함.)의 사용에 관해서 잔류하는 그 농약의 성분인 물질(그 물질이 화학적으로 변화해서 생성된 물질을 포함)의 판매용 반려동물용 사료 안의 함유량은 각각 동표의 제2란에 정하는 양 이하로 해야 한다.

- (3) 오염물질 포함에 대한 규제
- 2. 판매용 반려동물용 사료의 제조 방법의 기준
- (1) 유해 물질을 포함해서 병원미생물에 의해 오염되거나 이것이 의심되는 원재료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 (2) 판매용 반려동물용 사료를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경우에는, 원재료에 유래해서 해당 판매용 반려동물용 사류 안에 존재하거나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는데 충분한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한다.
- (3) 부동제는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용 반려동물용 사료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 3. 판매용 반려동물용 사료의 표시 기준(필수 표시사항)
- ① 판매용 반려동물용 사료의 명칭
- ② 원재료명
- ③ 유통기한(단 유통기한을 초과한 경우라도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④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⑤ 원산국명

3) 미국

미국에서는 사료에 관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2단계의 법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법규제는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근거해서 행해지는데, 동법에서는 펫푸드를 포함하는 사료에 관해서, 유해하거나 표시가 불비한 것은 유통을 금지하는 등 규제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주에서 AAFCO(미국사료검사관협회)가 각 주검사관, 연방정부기관 및 업계 단체의 참여 하에 책정한 모델법령에 준거한 주법을 제정하고, 시장에서의 유통을 위한 펫푸드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 FDA는 펫푸드, 동물용 사료에 관한 경계정보공유시스템을 발표했다. FDA는 동물용 사료 관련 질병이나 결함제품에 관한 정보를 성청 및 자치체 사이에서 공유하기 위한 신 시스템, 동물용 사료 네트워크를 발표했다. 동 시스템을 통해 펫 푸드나 동물용 사료에 관련된 질병이나 결함 제품의 사안을 조기 경계정보로서 성청 간에 공유하기 용이해질 것이며, 오염된 제품의 조사나실험검사를 위한 리소스의 유효활용에도 도움이 된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환하는 정보는 오로지 담당자 간의 연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며, 관계자에게 집행행위나 규제행위의 발동을 강요

하는 것은 아니다.

동 네트워크는 은닉이 보장된 신고, 통보 시스템이고, 규제관청의 담당자나 동물용 사료, 펫푸드 담당자만 이용 가능하고, 일반국민은 액세스할 수 없다. 동 시스템은 다음의 2개의 포털로 구성되어 있다.

- PETNet(Pet Event Tracking Network) : 펫푸드에 관련된 질병 및 결함제품에 관한 정보
- LivestockNet : 가축 및 수생동물종, 말이 관계되는 사료관련 질병 및 결함제품에 관한 정보 PETNet은 펫 푸드 안의 멜라민에 관한 2007년에 일어난 사건의 영향으로 2011년 8월에 개설되었다. FDA는 이제까지 PETNet을 확장해서 가축, 수산동물종, 말도 정보에 포함하고 싶다는 바램을 다수 받았으므로 LivestockNet이 새로이 개설된 것이다.

4) EU

EU에서는 가맹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Regulation), 역내의 가맹국이 자국의 법령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는 지령(Directive)에 근거해서 통일적인 법규제를 하고 있다. 식품 및사료의 안전에 관한 일반원칙이나 EFSA(유럽식품안전청)의 설치에 관해서 정하는 규칙 178/2002에서는 사료의 정의(제3조4항)에서 펫푸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제5조제1항에서 '식품법은 적절한 경우에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 식물의 건강 및 환경을 고려하면서 사람의생명과 건강을 높은 수준에서 보호 및 공정한 식품의 거래를 포함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라는일반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기타 규칙에서는 규칙 178/2002의 사료의 정의를 인용하면서, 유해물질, 첨가물, 표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펫 푸드가 사료로서 법적으로 규제받고 있다. 업계의 노력으로서는 유럽에서의 펫푸드 산업의 업계단체인 FEDIAF(유럽 펫푸드 공업회연합)이 제조, 영양에 관한 자주기준의 설정을 하고 있다.

5) 캐나다

펫푸드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한 법규제는 없다. 단 동물위생법에서, 유해물질에 오염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본 규정을 펫푸드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용기에 들어간 제품 일반의 표시를 규제하는 법률로서 소비자 용기·표시법이 있고, 이 법률에 근거한 펫푸드의 표시에 관한 운용으로서, 본법을 소관하는 캐나다 산업성이 주체가 되어 관계성청이나 업계 단체와 함께 구성한 워킹그룹이 작성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업계의 노력으로서는 PFAC(캐나다 펫푸드협회)가 원료, 영양, 표시 등에 관한 각종 자주기준의 설정을 하고 있다.

6) 호주

연방정부로서는 펫푸드의 안전확보에 관한 법규제는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주에 따라서는 식육의 위생이 관한 주법에 의한 규제에 따르고, 펫용 고기의 관련 시설에 관해서도 주정부에 의한 사찰수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업계에서의 노력으로는 PFIAA(호주 펫푸드협회)가 펫푸드의 제조, 영양에 관한 자주기준을 정하고 있다.

IV.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1. 정책의 수립 방향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인프라)을 정비 및 확충하고, 산업에 신규 참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적, 재무적,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인프라의 측면에서는 전담부서의 설치 및 R&D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지원의 측면에서는 전문인력의 수급과 재정적 · 조세적 지원 및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 을 통해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방향은 인프라 확충과 지원제도(인센티브)의 확대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이며, 입법적 접근과 정책적 접근이 유기적으로 병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 및 기관 설립

1) 반려동물산업 관련 정부조직의 확충 및 개편

가) 반려동물산업 관련 부서 및 연구기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며, 세부적으로는 축산정책국의 방역관리과장 소관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제3호). 또한 농촌진흥청 산하의 국립축산과학원이 반려동물(반려동물: 반려동물 등)의 유전육종 · 품종개량 · 영양생리와 사양(飼養) · 사료개발 · 유전자원 관리, 축산물의 품질 · 가공 · 안전성, 초지조성, 사료자원의 육종재배 · 이용 및 축산환경에 관한 시험 · 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 반려동물 관련 업무는 방역관리과 직원 2명이 전담하고 있어서, 지난해에는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소속 공무원 9명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흡수해 동물보호과를 신

설하는 조직개편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쌀 수급, 구제역,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등 현안이 많아 인력 배정이 백지화되기도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을 제외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부서가 설치된 곳은 거의 없으며, 업무의 대부분이 '동물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는 미흡하다35). 즉 반려동물산업과 관련한 전담부서의 신설이 시급한 형편이다.

나)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관련 조직 현황

(1) 기구표



<그림 4-1> 기구표

(2) 인력 현황

과 명	계	고 위 공무원	3·4 ~ 4급	4·5 ~ 5급	6 ~ 8급	실무관
축산정책관실	53	1	4	21	24	3
축산정책관	1	1	_	_	_	_
축산정책과	16	-	1	7	7	1
축산경영과	13	-	1	5	7	-
방역총괄과	13	_	1	5	6	1
방역관리과	11	_	1	5	5	_

(표 4-1) 인력현황

³⁵⁾ 국민일보 2012. 7. 26. 서울시에 반려동물 전담부서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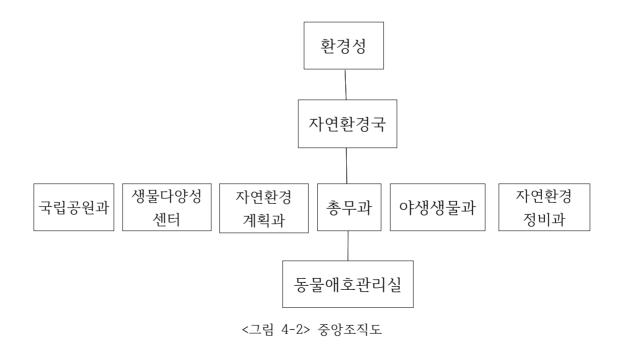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며, 세부적으로는 축산정책국의 방역관리과장 소관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제3호).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 반려동물 관련 업무는 방역관리과 직원 2명이 전담하고 있어서, 지난해에는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소속 공무원 9명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흡수해 동물보호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쌀 수급, 구제역,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등 현안이 많아 인력 배정이 백지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반려동물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본격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업무의 세분화에 따른 담당 부서의 신설 등의 조직 개편이 필수적이며, 그에 상응하는 인력의 충원 역시 시급하다.

다) 일본의 반려동물 관련 조직

일본의 동물애호관리법에 근거한 구체적 조치에 관해서는,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정령지정도 시·중핵시)가 자치사무로서 실시하고, 환경성에서는 각종 기준의 책정, 보급계발 등을 통해 도도 부현을 지원하는 체계이다.

(1) 중앙조직



(가) 조직

환경성 자연환경국 총무과 동물애호관리실

(나) 업무내용

- ① 동물애호주간행사 등 보급계발사업의 실시
- ② 동물의 적정한 사육·보관, 처분을 위한 각종 기준의 책정
- ③ 동물취급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의 책정
- ④ 위험동물의 지정(정령)
- ⑤ 지방자치체 지원

(2) 지방공공단체

(가) 업무내용

- ① 보급계발(도도부현, 정령시, 중핵시)
- ② 동물취급업자에 관련된 규제의 실시(도도부현, 정령시)
- ③ 위험동물사육에 관련된 규제의 실시(도도부현, 정령시, 중핵시)
- ④ 다수의 동물 사육에 따른 민폐행위에 대한 권고 조치(도도부현)
- ⑤ 개고양이의 인수(도도부현, 정령시, 중핵시)
- ⑥ 애호추진원의 위촉, 협의회 설치(도도부현, 정령시, 중핵시)

(나) 도도부현·지정도시·중핵시 동물애호관리행정담당조직 (2015년4월1일 현재)

도도부현·시명	조직명
홋카이도	환경생활부 환경국 생물다양성보전과 동물관리그룹
아오모리현	건강복지부 보건위생과 식품위생그룹
이와테현	환경생활부 현민생활안전과 식품안전안심담당
미야기현	환경생활부 식품과 생활 안전추진과 환경수도반
아키타현	생활환경부 생활위생과 식품안전·안심반
야마가타현	환경에너지부 위기관리·생활안심국 식품안전위생과 식품위생기획담당
후쿠시마현	보건복지부 식품생활위생과
이바라키현	보건복지부 생활위생과 환경·동물애호그룹
토치기현	보건복지부 생활위생과 위생·수도담당
군마현	건강복지부 식품안전국 위생식품과 생활위생계
사이타마현	보건의료부 생활위생과 총무·동물지도담당
치바현	건강복지부 위생지도과 공중위생수의반
동경도	복지보건국 건강안전부 환경보건위생과 동물관리계
가나가와현	보건복지국 생활위생부 식품위생과 난육위생·동물보호그룹
니가타현	복지보건부 생활위생과 동물애호·위생계
후쿠야마현	후생부 생활위생과 식품난육계
이시가와현	건강복지부 약사위생과 식품위생그룹
후쿠이현	건강복지부 의약식품·위생과 식품안전그룹
야마나시현	복지보건부 위생약무과 식품위생·동물애호담당
나가노현	건강복지부 식품·생활위생과 난육·동물위생계
기후현	건강복지부 생활위생과 난육·동물지도계

-11 -1	
시즈오카현	건강복지부 생활위생국 위생과 동물애호반
아이치현	건강복지부 보건의료국 새왈위생과 수의위생·동물애호그룹
미에현	건강복지부 식품안전과 생활위생·동물애호반
시가현	건강의료복지부 생활위생과 관리·영업계
교토부	건강복지부 생활위생과 동물애호관리담당
오사카부	환경농림수산부 동물애호축산과 동물애호그룹
효고현	건강복지부 건강국 생활위생과 환경위생반
히로시마현	건강복지국 식품생활위생과 난육수산그룹
나라현	생활창조부 소비·생활안전과 동물애호계
와카야마현	환경생활부 현민국 식품·생활위생과 식품위생반
톳토리현	생활환경부 생활안심국 생활안심추진과
시마네현	건강복지부 약사위생과 식품위생그룹
오카야마현	보건복지부 생활위생과 식품 안전추진반
야마구치현	환경생활부 생활위생과 식품 안심·안전추진반 식품위생그룹
토쿠시마현	위기관리부 현민생활안전국 안전위생과
카가와현	건강복지부 생활위생과 난육위생·동물애호그룹
에히메현	보건복지부 건강위생국 약무위생과 난육위생·동물애호계
코치현	건강정책부 식품·위생과 동물애호담당
후쿠오카현	보건의료개호부 보건위생과 난육위생계
사가현	건강복지부 생활위생과 동물애호·난육위생담당
나가사키현	현민생활부 생활위생과 식품난육위생반
쿠마모토현	건강복지부 건강위기관리과 난육위생반
오오이타현	생활환경부 식품안전·위생과 생활위생반
미야자키현	복지보건부 위생관리과 난육위생담당
카고시마현	보건복지부 생활위생과 난육위생계
오키나와현	환경부 자연보호·녹화추진과 자연보호반

(표 4-2) 도도부현·지정도시·중핵시 동물애호관리행정담당조직

2) 반려동물산업진흥원의 설립

새로이 육성하려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흥원'형태의 기관을 설립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 시키는 경우가 다수 있다. 반려동물산업의 경우에도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 '반려동물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법률	조항
1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
2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표 4-3) 산업진흥원의 설치 사례

3) 협력기관

가) 반려동물 산업육성 TF 구성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와 민간 자문단이 이달 13일 출범했다. 구성된 TF와 자문단은 오는 6월까지 모두 12번의 회의를 거친 후,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방 안'을 담아 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TF에는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검역본부, 축산과학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전시, 경상북도 등 산하기관과 지자체는 물론 동물보호시민단체 등 모두 11개 기관이 참여한다. TF에 참여한 기관들이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협력기관이 될 것이므로, 이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반려동물 산업육성 TF		
주무부서	농림수산식품부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연구기관	축산과학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대전시, 경상북도	
시민단체	동물보호시민단체	

(표 4-4) 반려동물 산업육성 TF

나) 관련 단체

반려동물산업으로 볼 수 있는 산업의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속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반려동물 산업육성 TF'의 자문기관인 대한수의사회, 동물약품협회, 펫용품협회, 펫사료협회, 한국애견연맹, 한국애견협회 등은 물론 보험업계나 학계 등 민간영역의 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산업의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개체수 등 정책통계자료의 확보와 전문인력의 수급이 중요하므로 통계청 및 관련 부서와 같은 정부기관의 협력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가칭 '반려동물산업협회'의 설립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업종별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을 위해 농림식품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요건으로 가칭 '반려동물산업협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진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R&D

현재 '반려동물산업'에만 주력하여 연구하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들이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연구기관으로 농촌진흥청 산하의 국립축산과학원이 있으나, 연구 및 지원의 초점은 가축에 맞추어져 있으며, '반려동물산업'보다는 '반려동물' 자체와 사육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에 특화된 전담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5) 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발전할수록 사업자와 소비자 간,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판매대금이나 치료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아무리 소액소송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으로 이어가기는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또한 결국 재판에서 승소하게되더라도 시일이 오래 걸리기 마련이라 신속한 권리의 구제에 있어서는 미흡하다. 따라서 재판외의 분쟁처리기관(ADR)으로서 '반려동물산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산업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신속하고 간이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설치

1) 기금의 의의 및 설치 필요성

기금이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 해 법률로써 설치되는 특정 자금을 말한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외로 운용될 수 있으므로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인 재정의 운용을 가능하게 하며, 예산이 당해 연도에서의 국가적 공적 사업과 그에 대한 재정지출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인데 반해 기금은 현재와 미래에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특정 사업에 대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기금의 목적이 되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를 통한 예산의 집행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지원을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의 심의 ·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적정 규모와 시기의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산업 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이라는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예산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경제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 기 위해서는 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

2) 기금의 재원

개별기금은 근거 법령의 규정 혹은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중앙정부기금의 경우 그 조성재원으로 출연금, 기부금, 성금, 원조금, 자체수입, 정부자금의 위탁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 차입금 등이 있다.

가) 개별 법령에 규정된 기금의 재원

기금 법령	재원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관광진흥개발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기금법	2.「관광진흥법」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2. 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
군인복지	3. 군인복지기금증식사업으로 생긴 수입금
기금법	4. 군인복지기금재산의 매각대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8. 복지계정의 운용수익

남북협력 기금법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대외경제협력 기금법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4.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 6. 기금의 운용수익금
문화재보호 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에 따른 납부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범죄피해자보호 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보훈기금법	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률 제6760호 군인보험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보험저축원리금, 장려금 및 보장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2. 국가유공자등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3.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 또는 재산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3조에 따른 전입금 5. 제3조의2에 따른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出資)한 회사 등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 또는 재산 8. 정부출연금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기부 되는 성금 또는 재산 10. 그 밖의 수입금

(표 4-5) 개별 법령에 규정된 기금의 재원

- 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
- (1) 반려동물 관련 기금의 모집 사례

(가) 2016년 6월 21일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제정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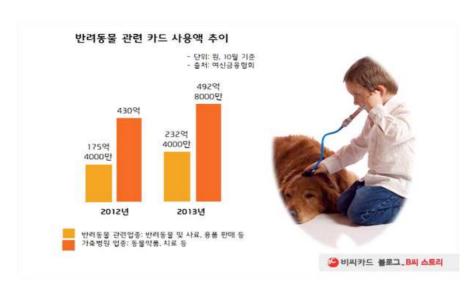
- 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 3. 반려동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 4.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국가적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산업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나) 반려동물 전용 카드

반려동물 산업의 눈에 띄는 성장에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IT나 금융 등 다소 관련이 없어 보이는 듯한 산업에서도 반려동물 특화 상품을 출시하며 시장 성장에 일조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업에 있어서도 기업은행의 "참! 좋은 내사랑PET카드", KB국민카드의 "반려애카드"등 다양한 종류의 펫카드가 출시되어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를 도

입하여 해당 카드의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반려동물 관련기금'에 적립함으로써 동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3> 반려동물 관련 카드 사용액 추이

(다) 유기견 보호기금 마련 걷기대회

2013. 10. 27. 부산에서 유기견보호기금마련을 위해서 '함께걸어요 2013'는 이름으로 걷기대회가 열린바 있다. 참가비는 예매 15,000원, 현장판매 20,000원, 아이러브펫 회원 10,000원 이었고, 수익금은 유기견보호기금으로 전달되었다.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기금마련을 위해서도 이같은 이벤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4-4> 유기견보호기금 마련 걷기대회

3) 기금의 사용

가) 개별 법령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

기금 법령	재원		
기금 법령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법인의 기본 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관광진흥개발 기금법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그이 별 키	②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복지시설등의 유지 및 관리		
군인복지 기금법	2. 복지시설등의 신설 및 증설 3.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5.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요 권이그이 이기그 사항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
	요한 지원
	4.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남북협력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기금법	5.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
,	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塡)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7.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개도국의 경제교류를 증진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
	한 자금의 대출(어음 할인, 채무 보증 또는 유가증권 인수를 포함하며, 이하 "융자
	등"이라 한다) 또는 출자
	2.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협력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융
	자등
 대외경제협력	3. 개도국의 경제 안정을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해당 국가가 대
기금법	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loid	4. 그 밖에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의 이율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의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다취케다구	2. 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문화재보호	3. 매장문화재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기금법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
	5. 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 지원
	6.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7. 그 밖에 문화재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나 활동의 지원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범죄피해자 보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범죄피해자보호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		
기금법	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1.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등 운		
	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 보조금,		
보훈기금법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		
	비, 재향군인회사업비		
	2.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비		
	4. 그 밖의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표 4-6) 개별 법령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

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용도

4)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가) 개별 법령에 규정된 기금의 관리·운용주체 및 심의기관

기금	관리 및 운용주체	위탁 가능 여부	심의 기관
관 광 진 흥 개 발 기금	제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군 인 복 지 기금	제7조(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인 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 이 관리·운용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군인복지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남 북 협 력 기금	제7조(기금의 운용·관 리) ① 기금은 통일부 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남북교 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대 외 경 제 협 력 기금	제9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문 화 재 보 호 기 금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문화 재청장이 관리·운용한 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문화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이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수 있다.	제7조(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범 죄 피 해 자 보 호 기 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법무부장관 이 관리·운용한다.		제7조(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 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법무부에 범죄피해자보호기 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 다)를 둔다.
보 훈 기금	제7조(기금의 운용 · 관 리) ① 기금은 국가보훈처 장이 운용하고 관리한 다.	⑥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 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주 택	제10조(기금의 운용、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 할 수 있다.
도 시 기금	관리 등)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 재위 탁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 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 직접 위탁할 수 있 다.

(표 4-7) 개별 법령에 규정된 기금의 관리·운용주체 및 심의기관

나, 반려동물산업 수출확대 방안 및 정책

1) 제도 개선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사료와 용품 등 제조업시장은 지난 30년간 성장하여 이제 내실이나 외형적으로나 충분히 발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은, 반려동물 시장에 있어서 블루오션이다. 중국의 반려동물 사육 두수는우리나라의 20~30배에 달하는데 반해 중국에서 자국의 반려동물 용품이나 사료는 자국민으로부터도신뢰를 받지 못하는 편이다. 따라서 한류의 열풍과 힘입어 중국 반려동물 산업 시장에 우리 기업들의진출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출시 통관 등 현실적인 장벽이 문제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회사의 반려동물 사료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통관 절차를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2년 반이고, 그것도 중국 측 바이어가 바뀌면 무효가 되고 또다시 2년 반이 필요하다. 제도상으로는 통관신청을 하면 되고 통관시 유의사항만 지키면 수입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사실상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정부 간의 협의로통관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의 해외 진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용품은 한-미 FTA 수혜 품목 중의 하나로 미국 수출시 원산지 증명만 잘 갖추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의 반려동물 용품 업체들에게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2) 산업분야별 맞춤형 방안 수립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반용품의 경우 미국 내 공급되는 관련 용품의 약 70% ~ 80%가 중국이나 미국, 멕시코 제품이라는 것도 주요 특징이다. 이중 가격이 비싸고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은 역시 미국, 캐나다, 독일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값싼 악세서리 · 의류 등의 제품은 대부분 중국, 멕시코 제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반려용품 디자인 브랜드 등이 진출 중에 있으나 아직은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저가의 중국산 제품과 단순 경쟁하기 보다는 친환경, 유기농 제품을 기반으로 한 사료나 반려동물용 건강제, 톡톡 튀는 아이디어, 와이파이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차별화한 용품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프리미엄 시장을 두드려 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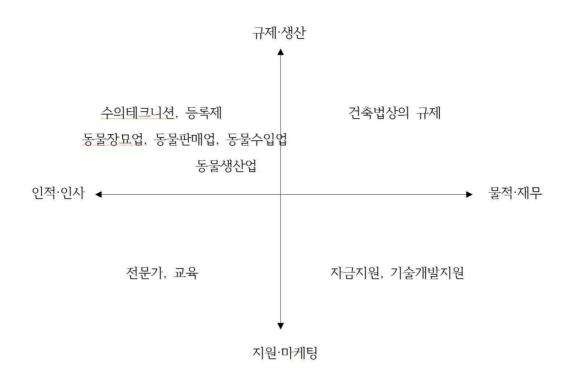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들도 경쟁이 치열한 현 업종에서 기존 상품의 응용, 개선, 융합을 통해 반려동물 시장으로의 전환이 용이한 만큼, 차별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접목으로 그야말로 초거대 반려동물시장(Super Pet Market)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반려동물 시장 진출을 한번 공략할 만한 시점이다.

3) 박람회 참여 - 기업들의 주도적 참여 확대

2014년 11월 북경에서 열렸던 북경 국제반려동물 및 용품박람회(CIPS)에 직접 부스를 운영하여 국내 기업인들의 소통공간을 마련했던 애견신문에서는 상해 반려용품 박람회 주최측과 작년 말 한국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열리는 상해 반려용품 박람회에는 한국 최초로 반려용품 관련 해외수출을 위한 한국관을 운영하여 10여개가 넘는 반려동물 관련 기업들의 홍보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미국 역시 미국 내에서 지역별, 시즌별 대규모 반려용품 전시회를 열고 있으므로 여기에 꾸준히 참가함으로써 이를 수출확대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매년 봄 미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APPA 등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Global Pet Expo 또는 Super Pet Expo나 지역별로 열리는 반려동물 전시회 등에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V.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안)



1. 반려동물산업 관련 규제 입법

가. 인적 규제

1) 동물관련 영업 등록

가) 현행법

동물보호법 제 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 2. 동물판매업
-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제32조 제1항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등록과 신고로 동물생명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분별한 사업의 난립방지와 당해 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파악을 통한 지원의 기초자료로서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나) 필요성

반려동물산업은 동물 자체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범위에서 더 나아가 반려동물에 대한 서비스업, 미용-휴게(호텔. 놀이터. 카페). 여가산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규제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며, 기존의 법제하에서 일률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다) 제안

다양한 업종으로 확장해나가는 반려동물관련사업에 대한 정의 및 범주화 이에 대한 파악과 규제 그리고 지원을 위한 신고 및 등록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수의테크니션

가) 현행법

동물병원이나 그 외 관련된 기관에서 수의사의 진료 보조, 각종 실험실 검사, 임상병리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 테크니션(수의간호사)'의 직에 대해서 사회적인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의사는 2015년부터 수의사법에 따라 법률로써 그 내용을 직접 정하는 한편, 명확한 위임의 근거를 갖추어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수의업계와 유사한 의료업계의 경우, 의료법 제 2조에서 5호에서는 '간호사'에 대하여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 80조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요건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들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주체로서 인정받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현실이다.

나) 필요성

수의 테크니션은 각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1명에 2.5명의 분포로 반려동물산업이 성장하는 추세에 따라 유망직종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인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이며, 특별히 수의 테크니션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전무한 실정이다.

수의사법 제10조에 의하면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어 의료계에서의 간호사와 달리 수의사 대신 동물에게 주사를 놓는 등의 행위는 할 수가 없지만 현실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반려동물의 주인들은 의료계에서의 간호사에 대한 인식으로서 수의테 크니션에 대하므로 금지된 행위라는 것을 대다수 모르는 실정이다.

수의사 역시 수의사법으로 직접 다루어지는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및 진료 분야의 성장에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하여 민간자격증 중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반려동물장례관리사 등 다양하게 그 종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타 직업군과 구별되면서 수의사의 보조원으로서 수의테크니션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다) 제시안

수의사법 제 2조의 정의 규정에 "수의 테크니션" 혹은 "수의 간호사"라는 조항을 두고 그 내용은 의료법에서의 "간호사"의 정의 조항을 수의사법에 맞게 적용한 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등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하다.
-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5. "수의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진료동물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수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u>다. 진료동물에 대한 교육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u> 하는 보건활동

나. 물적 규제 : 반려동물관련 사업장 개설(건축법 관련)

1) 현행법

건축법에서의 '근린생활시설'이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말하며 사람들의 일상생활과의 관련 밀접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따라 그 안에서 규정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주민생활의 필수시설이고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큰 규모의 시설과 취미생활 및 편의시설관련 시설로 구분되는 바, 반려동물관련 시설의 경우 시행령 제 3조의 5와 관련 용도별 건축물 구분에 있어서, 별표에 의해 4호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2) 반려동물관련시설의 1종 분류로의 규정 필요성

용도지역·지구·구역 별 토지이용 관리 및 개별 건축물 관리가 근린생활시설의 분류의 목적이다. 오늘날 반려동물을 각 가구에서 기르는 추세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의 권리에 대한 보전이 향상되고 있는바, 사람과 반려동물의 생활에서 있어 반려동물의 용품의 취급에 못지않게,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과 미용실의 주민생활권역에서 그 수요가 필수적이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규정을 참고하여, 비록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필요시설의 중요성이 사람의 것에 비해 작더라도, 사업장의 규모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일차적으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함으로서 주민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3) 방안

기본적으로는 현재 별표에 의해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다만 구체적으로 타 제 1종 근린생활시설과의 상대적인 중요도의 비교를 통하여 주민들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적 진료 및 미용 시설을 갖춘 최소한의 사업장의 규모에 의한 제한을 두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 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 <u>자. 동물병원, 동물 미용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ooo제곱미터 미만</u> <u>인 것</u>

2. 반려동물산업 관련 지원 입법

가. '반려동물산업 육성법' 제정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관련시장은 지난 30년간 성장하여 이제 내실이나 외형적으로나 충분히 발전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기에 충분하나 개인의 힘만으로 해외에 수출하기는 한계가 있고, 제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규제의 문제는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반려동물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산업의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려동물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반려동물산업 종합계획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적차원에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적인 지원, 물적으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령 검토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구성함에 있어서 반려동물산업과 연관 있는 관련 법률을 참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산업발전법을 참조하고, 구체적으로는 말산업육성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음악산업진흥법 등 관련분야 또는 다른 분야의 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을 육성하는 법은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산업 육성법 역시 이와 같은 구조에 기초하여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분			항목
	. =	행정기반법	지원 의무 지원시책의 기본원칙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정책 조정 통계의 작성
산업법	기반법	공급기반법	기술개발사업 사업화 시범 사업 기업 평가

			기술료의 징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
			석·평가
			지원기관
			실용화
			창업의 활성화
			정부의 수요 진흥
		수요기반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 , = =	이용 자원
		인적자원법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년 기계년 日	인적자원의 개발·촉진
			보조금
		재무자원법	채권발생 기금
		세구시된답	세제지원
			표준화
			국제표준화 지원
		기술자원법	기술예측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핵심기술 선정
	진 <u>흥</u> 법		신산업의 창출촉진
	<u>ਦਿ</u> ਰ ਖ		전문화 유도시책
			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기업간 협력의 촉진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기술개발 촉진
			기술향상 장려
			기술개발 지원
			관리 특혜
		안정성 인증	
			안정성보장사업의 실시

(표 5-1) 산업 육성 구조

다. 법률 수요조사 및 AHP평가

1) 법률 수요조사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업계 관련자들 및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기관들에 종사하는 인력 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반 려동물산업 육성법의 제정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법률 수요조사를 실 시하였다.

법률 수요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업계 관련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구성하였다.

2) AHP평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방법) 방법론이란, 다수의 대안에 대한 다면적 평가기 준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의 하나이며, 경제·경영·국방·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 쉽게 적용 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법률(안)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이 AHP평가를 진행하여 도출된 법률(안) 중에서 입법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조항들을 선별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림 5-1> AHP평가 예시

라.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예시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 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반려동물"이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일체의 동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2. "반려동물 산업"이란 반려동물을 생산·유통하거나 반려동물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반려동물경매업
 - 나. 반려동물생산업
 - 다. 반려동물장묘업
 - 라. 반려동물수입업
 - 마. 반려동물판매업
 - 바. 반려동물 관련 상품제조업
 - 사. 반려동물운송업
 - 아. 반려동물대여업
 - 자. 반려동물훈련업
 - 차, 기타 반려동물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 3. "반려동물 사업자" 란 반려동물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조(기본원칙)** ① 누구라도 동물을 반려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상해 및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되며, 반려동물의 습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반려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 2. 반려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3. 반려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 2.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3. 반려동물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4. 반려동물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 5. 반려동물의 의료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6.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반려동물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반려동물사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반려동물사업자에 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반려동물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의 사육·보건 관리 등 반려동물에 관한 정보와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 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반려동물산업육성전담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 2. 반려동물산업연구소의 설치·운영 등 말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전담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분류·가공·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 2. 반려동물산업 기술의 국제교류
 - 3. 반려동물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 4. 반려동물산업 관련 교육사업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
 - ③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쳐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 1. 정기평가: 연 1회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
 - 2. 종합평가: 5년마다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의 재지정을 위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실한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5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 2.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반려동물산업지 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반려동물산업협회의 설립・운영)** ① 반려동물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반려동물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업종별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 2.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 3.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5.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 ④ 농림축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 **제12조(창업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려동물산업 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동물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우수반려동물업체의 지정·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을 지원·육성하

-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반려동물업체를 우수반려동물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반려동물업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제10조에 따른 해외 진출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우수반려동물업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우수반려동물업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반려동물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반려동물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반려동물업체 지정·재지정,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반려동물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 2. 반려동물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 3. 반려동물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 4. 반려동물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6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반려동물산업을 하는 업체의 반려동물 보관,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 2. 반려동물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 **제17조(반려동물 사육·관리시설 및 운송의 현대화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려동물 사육·관리시설 및 운송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반려동물 사육·관리시설 및 운송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지도(이하 "기술진단·지도"라 한다)를수행하는 기곤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진단·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지도와 제2항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u>제19조(기업 간 협력의 촉진)</u>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에 의한 반려동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반려동물 관련 제품 등의 표준화를 위한 사업
 - 2. 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는 사업
 - 3.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기술 · 인력 등을 제휴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을 지원할 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기업 간 협력의 중개
- 2. 기업 간 협력을 위한 정보제공
- **제20조(해외 진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반려동물사업자 의 반려동물 관련 상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및 국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은 해외사업장을 설치·운영할수 있다.

제4장 반려동물산업

-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한다.
 - 1. 반려동물경매업
 - 2. 반려동물생산업
 - 3. 반려동물장묘업
 - 4. 반려동물수입업
 - 5. 반려동물판매업
 - 6. 반려동물 관련 상품제조업
 - 7. 반려동물운송업
 - 8. 반려동물대여업
 - 9. 반려동물훈련업
 - 10. 기타 반려동물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영업의 허가)** ①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 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영업의 등록)** ① 제2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5호는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
 - 1.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2.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3.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제2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 1. 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2.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3. 제27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제25조(영업의 승계)** ① 제22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 2. 반려동물의 판매가능 월령, 건강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
 - 3. 반려동물 사체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 4.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 5. 영업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반려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7조(교육)** ① 제21조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8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

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 2.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
 - 3.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21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5.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 **제29조(표준계약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매매의 계약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 **제30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0조 제1항 및 11조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 2. 제28조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의 취소

-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① 반려동물 산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산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동물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5.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산업 육성 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조정위원회는 반려동물 산업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⑦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2조에 따른 허가 또는 제2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2.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 허가를 받거나, 제23조의 등록을 한 자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 5. 제2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 1. 제29조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축 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
 - 2.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마.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의 제안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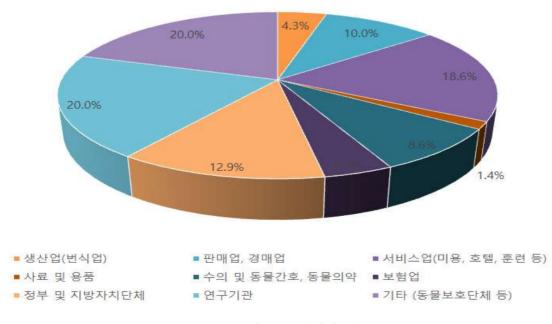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발전기본법, 말산업육성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 산업의 발전·육성·지원에 관한 각 법률의 목적 규정을 참조하여 산업발전의 공통 목적인 국민경제의 발전, 그리고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 및 그에 따른 국민의 정 서함양을 목적조항으로 두었음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반려동물"이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일체의 동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2. "반려동물 산업"이란 반려동물을 생산.유통하거나 반려동물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하는 업(業)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반려동물경매업
- 나. 반려동물생산업
- 다. 반려동물장묘업
- 라. 반려동물수입업
- 마. 반려동물판매업
- 바. 반려동물 관련 상품제조업
- 사. 반려동물운송업
- 아. 반려동물대여업
- 자. 반려동물훈련업
- 차. 기타 반려동물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 3. "반려동물 사업자" 란 반려동물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반려동물산업과 관련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업종을 세분화 함

응답자 분포



<그림 5-2> 응답자 분포

- cf) 각 목의 정의(동물보호법, 일본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
 - 1. 반려동물경매업

동물을 매매를 경매의 방법으로 하는 자

2. 반려동물판매업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3. 반려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영업

-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
- 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 4. 반려동물수입업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5. 반려동물생산업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6. 반려동물 관련 상품제조업

반려동물의 사료 및 용품등을 제조하는 업

7. 반려동물운송업

반려동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업

8. 반려동물대여업

반려, 촬영 등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대여하는 업

9. 반려동물훈련업

고객의 동물을 보관해서 훈련하는 업

10. 기타 반려동물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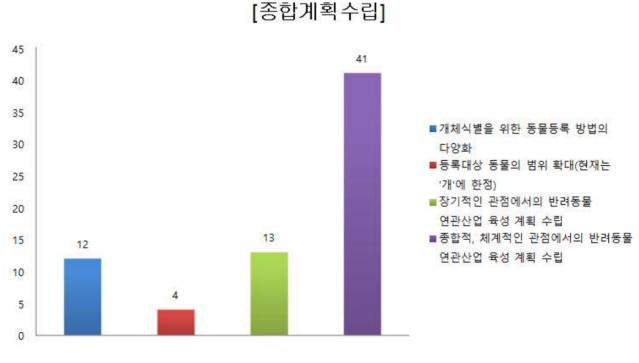
○ **제3조(기본원칙)** ① 누구라도 동물을 반려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상해 및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의 습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반려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 2. 반려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3. 반려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동물보호와 반려동물 산업육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기본원칙을 설정함
- 일본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에서도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고, 반려동물산 업육성법의 특성상 동물보호와 산업육성의 두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하기 위한 기본원칙 마련이 필요함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산업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기반 구축이 필요한데 그 중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종합계획의 수립임
- 산업발전기본법, 말산업육성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 각 산업발전 관련법들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고 반려동물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위 제정안을 마련함

제2장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 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 2.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3. 반려동물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4. 반려동물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 5. 반려동물의 의료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6.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업법 제정에서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통계 및 실 태 조사임
- 산업발전기본법, 말산업육성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 각 산업발전 관련법들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고 반려동물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위 제정안을 마련함
- 법률 및 제도 수요조사 결과 종합적, 체계적 관점에서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계획 수립이 필 요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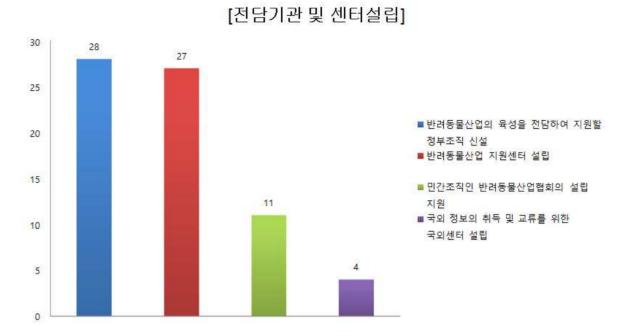
<그림 5-3> 종합계획 수립

○ **제6조(반려동물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반려동물사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반려동물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동물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반려동물산업의 통계 및 실태 조사는 필수적임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말산업육성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수산종자산 업육성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 참조
- **제7조(반려동물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의 사육·보건관리 등 반려동물에 관한 정보와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종합정 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반려동물 산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기술사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참조
- **제8조(반려동물산업육성전담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 2. 반려동물산업연구소의 설치·운영 등 말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전담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반려동물 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전담기관을 둘 필요가 있음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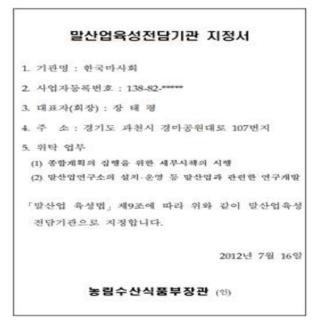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참조

- 법률 및 제도에 관한 수요조사 결과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전담하여 지원한 정부조직의 신설이 필요함



<그림 5-4> 전담기관 및 센터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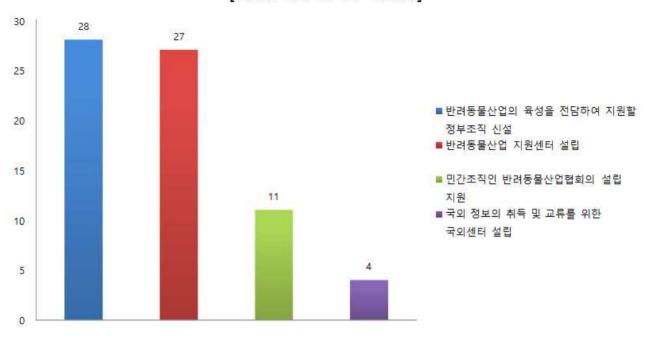
- 산업육성전담기관 지정서 예



<그림 5-5> 말산업육성전담기관 지정서

- **제9조(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 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 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분류·가공·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 2. 반려동물산업 기술의 국제교류
 - 3. 반려동물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 4. 반려동물산업 관련 교육사업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
 - ③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쳐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 교육·기술 등 지원이 필요함
- 따라서 농림축산부가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동 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고령친화 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진층법,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등 참 조
- 법률 및 제도에 관한 수요조사 결과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함

[전담기관 및 센터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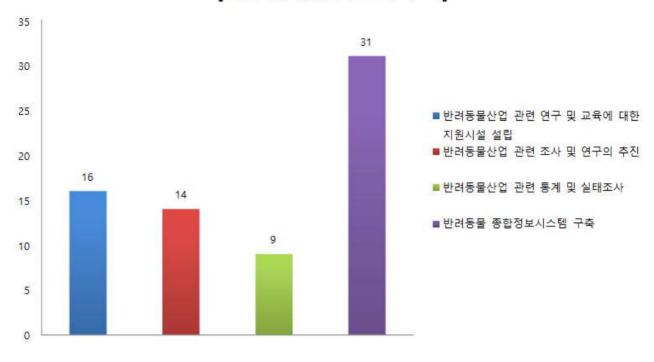


<그림 5-6> 전담기관 및 센터 설립

- **제10조(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 1. 정기평가: 연 1회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
 - 2. 종합평가: 5년마다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의 재지정을 위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 반려동물산업 지원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 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실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를 하고,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5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 2.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반려동물산업지원 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 교육기술 등 지원이 필요함
- 따라서 농림축산부가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동 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고령친화 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등 참 조
- **제11조(반려동물산업협회의 설립・운영)** ① 반려동물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반려동물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업종별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 2.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 3.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5.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 ④ 농림축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반려동물 산업 관련 통계조사 및 제도 연구 등을 위하여 협회구성이 필요함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참조
- 법률 및 제도 수요조사 결과 반려동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반려동물산업협회에서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현황, 통계, 시장정보 등의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R&D 및 정보시스템 구축]



<그림 5-7> R&D 및 정보시스템 구축

제3장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 **제12조(창업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서 창업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참조
-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 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동물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은 필수적임, 말산업육성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등 관련 산업육성법 등에서도 전문 인력양성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14조(우수반려동물업체의 지정·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반려동물업체를 우수반 려동물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반려동물업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제10조에 따른 해외 진출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우수반려동물업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우수반려동물업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반려동물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반려동물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반려동물업체 지정·재지정,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해외진출 및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서 발전 유 인을 제공
- 건설기술진흥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관광진 흥법 등 참조

-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반려동물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 2. 반려동물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 3. 반려동물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 4. 반려동물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참조
- **제16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반려동물산업을 하는 업체의 반려동물 보관,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 2. 반려동물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 반려동물 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을 위해서 금융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조
- **제17조(반려동물 사육·관리시설 및 운송의 현대화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려동물 사육·관리시설 및 운송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반려동물 사육·관리시설 및 운송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반려동물 사육·관리시설 및 운송의 현대화는 반려동물 산업을 정착시키고 안정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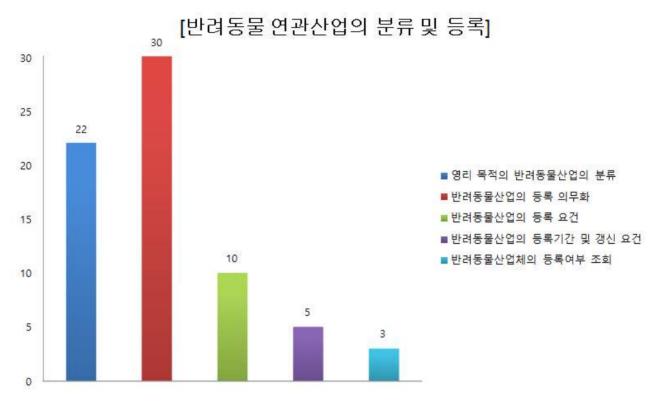
- **제18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지도(이하 "기술진단·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곤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진단·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지도와 제2항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술 및 경영의 진단은 필수적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에서도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u>제19조(기업 간 협력의 촉진)</u>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에 의한 반려동물산업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반려동물 관련 제품 등의 표준화를 위한 사업
 - 2. 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는 사업
 - 3.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기술 · 인력 등을 제휴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을 지원할 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기업 간 협력의 중개
 - 2. 기업 간 협력을 위한 정보제공
- 산업발전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간 협력의 촉진 부분을 기본으로 반려동물산업의 특성에 맞추어 제정안을 마련함

- 산업발전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본이 되는 법임
- **제20조(해외 진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반려동물사업자의 반려동물 관련 상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및 국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은 해외사업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반려동물 산업은 세계적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은 걸음마 단계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통해 이를 활성화 하고자 함.
- 관련 법률인 말산업육성법에서도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4장 반려동물산업

- 동물보호법의 영업관련 규정을 기초로 하여, 일본의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경도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여 마련함
-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한다.
 - 1. 반려동물경매업
 - 2. 반려동물생산업
 - 3. 반려동물장묘업
 - 4. 반려동물수입업
 - 5. 반려동물판매업
 - 6. 반려동물 관련 상품제조업
 - 7. 반려동물운송업
 - 8. 반려동물대여업
 - 9. 반려동물훈련업

- 10. 기타 반려동물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2 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허가·등록 등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분류가 필요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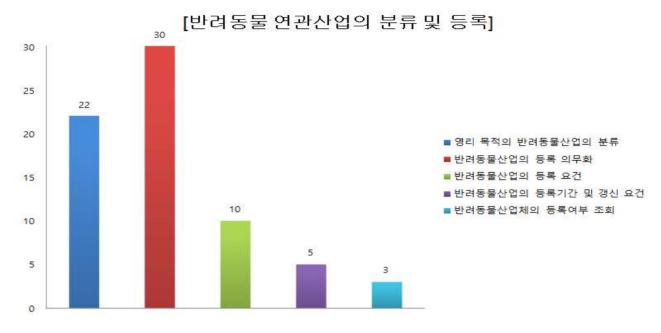
<그림 5-8>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분류 및 등록

- **제22조 (영업의 허가)** ①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경매업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중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으로 그 동안 음성화 되어있던 본 업종을 하기 위해서 허가절차를 밟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

음

- 현재 대부분의 생산업장이 미신고 상태에서 비위생적으로 운영되어 반려동물의 폐사·질병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2008년부터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 생산업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제로 전환(2012년)하였으나, 신고비율이 20%에도 미달하고 있음³⁶⁾
- 생산업 및 경매업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허가제로 규정함
- **제23조(영업의 등록)** ① 제2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5호는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
 - 1.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 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2.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3.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5.「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육성의 기반 마련 및 동물보호 에 기여함

³⁶⁾ 실제 운영되는 업체 1,000여개소(추정) 중 신고된 업체는 187개소('15년말 기준)



<그림 5-9>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분류 및 등록2

-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제2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 1. 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 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2.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3. 제27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기존의 동물보호법상 등록 대상의 영업을 제외하고 새롭게 규정한 영업유형에 대하여 신고제를 도입함
- **제25조(영업의 승계)** ① 제22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 2. 반려동물의 판매가능 월령, 건강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
 - 3. 반려동물 사체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 4.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 5. 영업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반려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7조(교육)** ① 제21조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8 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 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 2.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
 - 3.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21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5.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 **제29조(표준계약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매매의 계약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 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하여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반려동물 커뮤니티 몰키펫 molkipet.com, 일본 전국 펫협회 펫판매계약서(개고양이용), pet1004.co.kr 반려동물 매매계약서 등 업체별 또는 단체별로 계약서를 마련하고 있은 상황 임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예술인 복지법 등의 법률에 서 표준계약서 마련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음
- **제30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0조 제1항 및 11조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 2. 제28조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의 취소
-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며 의견을 진술케 할 필요가 있음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등 참조
-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참조

○ 제3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① 반려동물 산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산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동물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5.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 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산업 육성 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 ⑥ 조정위원회는 반려동물 산업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⑦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콘텐츠 진흥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사례를 참조하여 볼 때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분쟁도 반려동 물산업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림 5-10>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제6장 벌칙

-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2조에 따른 허가 또는 제2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2.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 허가를 받거나, 제23조의 등록을 한 자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 5. 제2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1. 제29조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축산 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
 - 2.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반려동물 매매 표준계약서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목적은 반려동물 때매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반려동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반려동물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거래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반려동물산업육성법」 및 그 시행령, 「동물보호법」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맞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37)

사업자(이하 "갑" 이라 한다)와 소비자(이하 "을"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반려동물 매매계약(이하 "이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이 계약에 따라 반려동물을 판매함에 있어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본서를 2통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³⁷⁾ 공정거래위원회 대형마트(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참조

이에 앞서 갑은 을에 대해서, 별지 설명서에 의해 개고양이의 사육방법에 관해서 설명했음을 확인한다. 을 반려동물이 생명이 있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애정을 갖고 종생사육하며 적절한 사육, 예방주사 등 건강관리를 하고, 사육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한다.38)

제1조 (목적)

- ① 이 계약서의 목적은 "갑"과 "을"이 반려동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갑"과 "을"간의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반려동물 판매)39)

갑은 아래와 같이 반려동물을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아래-

종류 • 품종 :

성 별: 수컷 / 암컷

혈통서 : 유 / 무 (송부예정시기)

※ 혈통서의 신고는 절차 형편 상 3~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혈통서의 명의변경절차는 별도로 소비자가 하며, 변경료도 소비자 부담이 된다.

생년월일 :

예방접종 : 유 / 무

건강상태:

특징사항 :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수의사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

판매금액:

인도일

배달자 성명(연락처):

³⁸⁾ 공정거래위원회 대형마트(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일본 전국 펫협회 펫판매계약서(개고양이용) 참조

³⁹⁾ 반려동물 커뮤니티 몰키펫 molkipet.com, 일본 전국 펫협회 펫판매계약서(개고양이용), pet1004.co.kr 반려동물 매매계약서 참조

제3조 (소비자의 책임)40)

"을"은 매수 직후 반려동물이 환경 변화에 의해 상태가 급변하는 것을 자각하고, 반려동물의 모양이 이상하다고 느낀 경우 또는 반려동물의 사육 상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갑"에게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제4조 (사업자의 책임)41)

- ①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해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려동물이 판매 시에는 알지 못했던 질환이 있고, 그것이 원인으로 사망 또는 그것에 준하는 사육계속에 중대한 지장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제2조의 반려동물의 판매금액을 상한으로 한 치료비(단 치료비 이외의 교통비, 시간 외 요금 등의 비용은 제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정도에 도달하지 않은 치료를 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반려동물의 판매금 액을 상한으로 한 치료비(단 치료비 이외의 교통비, 시간 외 요금 등 비용은 제외) 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이 면제된다.
- 1. 알레르기 등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성장과정에서 판단하는 질병 및 증상의 경우
- 2. 반려동물 인도 후, "을"이 반려동물을 적절한 방법으로 사육하지 않는 등 사육 및 관리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
- 3. "을" 적절한 시기에 수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을 태만하거나 문제가 일어난 경우 신속하게 "갑"에게 상담하여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5조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경우의 사업자의 책임)42)

①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반려동물의 인도일까지 간격이 있는 경우, 이 계약체결 후 인도일까지의 사이에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을"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⁴⁰⁾ 일본 전국 펫협회 펫판매계약서(개고양이용)

⁴¹⁾ 일본 전국 펫협회 펫판매계약서(개고양이용)

⁴²⁾ 일본 전국 펫협회 펫판매계약서(개고양이용)

지불한 대금(계약금 포함)이 있는 경우는 대금의 반환을 받고, 또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지불하고) 동등한 반려동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반려동물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어떤 신체적 이상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반려동물을 인도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을"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불한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의 반환을 받고, 또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지불하고) 동등한 반려동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손해배상 등)⁴³⁾

-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라 반려동물 매수 후 15일 이내에 폐사·질병이 발생한 경우 "갑"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면책사항)44)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갑의 책임이 면제된다.

- 1. 인도 후 반려동물이 도망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 2. 갑의 책임이 아닌 원인에 의한 질병, 사고가 있었던 경우
- 3. 기타 본 계약을 갑이 위반한 경우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45)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8조 [계약해제]46)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⁴³⁾ 공정거래위원회 대형마트(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⁴⁴⁾ 일본 전국 펫협회 펫판매계약서(개고양이용)

⁴⁵⁾ 공정거래위원회 대형마트(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⁴⁶⁾ 공정거래위원회 대형마트(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정하여 상대방에게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어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 계약을 중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47)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제2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계약유효기간)48)

-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 ② "갑", "을" 양 당사자는 상기 계약조항을 확인하였으며, 이 거래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 (특약사항)⁴⁹⁾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⁴⁷⁾ 공정거래위원회 대형마트(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반려동물무료분양포털 주세요닷컴 <u>www.zooseyo.or.kr</u>, 반려 동물 커뮤니티 몰키펫 molkipet.com, 하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 이용 약관

⁴⁸⁾ 공정거래위원회 대형마트(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⁴⁹⁾ 펫쫑 www.petzzeung.com 반려동물 매매계약서

2.

3.

0000년 00월 00일

(갑)주 소: 성 명: ○○○(인) 성 명: ○○○(인)

주민번호 :주민번호 :연 락 처 :연 락 처 :

〈반려동물 관련 계약서 예〉

반려동물 분양계약서

반려동물무료분양포털 주세요닷컴 www.zooseyo.or.kr

본 계약서는 분양인과 입양인 사이의 계약을 명시하며 분양인과 입양인은 반려동물분양 이후 아래와 같은 문제 발생시 보상 규정에 따른 보상 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 1. 반려동물분양인(판매자 : 이하 "갑"이라함) 과 입양인(구매자 : 이하 "을"이라함)은 반려동물사랑 및 상호존중과 신의성실
- 에 입각하여"갑"이 분양한 반려동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갑"과"을" 간에 계약을 체결한다.
- 2."갑"은 "을 "에게 무료 또는 적정의 책임비용을 받고 키우던 반려동물을 분양하며, "을"은 반려동물을 입양한 날로부터 ___개월(이하"책임기간"이라함)이내에, 분양받은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거나 팔아서는 아니된다.
- 3."을" 은 신의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 ㄱ."책임기간" 내, 반려동물은 "을"의 양육권 하에 "갑"과 "을" 공동소유임을 확약하다.
- ㄴ."책임기간" 내, 부득이한 사정 또는 사고로 분양받은 반려동물을 처분할 시에는 "갑"에게알릴 의무가 있다.
 - ㄷ. "책임기간" 내 재분양이 있을 경우, "갑"의 허락 및 새로운 입양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 리. "책임기간" 내 재분양이 있을 경우, "갑"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을"은 반려동물을 그대로 키우거나 "갑"에게 아무 조건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 ㅁ."갑"은 "책임기간" 만료시점에 해당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증모습(사진,동영상,미팅)을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을"에게 편한 방법으로 반려동물 인증모습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 4."갑"과 "을"은 아래의 내용으로 거래를 하며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반려동물과 계약서의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한다.
 - 1) 구매자성명 :
 - 2) 구매자주소 :
 - 3) 구매자연락처 :
 - 3) 반려동물 분양일 :

1)	반려동물	ヒェニュレジト	
4)	인덕충돌	一つ かり	

5) 현재 반려동물의 건강상태:

5."갑"이 "을"에게 제공했던 정보와 "을 "이 입양했던 반려동물의 정보가 치명적으로 일치하지않을 경우에는 "을"은 1주일 이내에, "갑"에게 반려동물을 돌려줄 수 있으며, "갑"은 이를 거부해선 아니된다.

6."을"이 계약내용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 반려동물을 "갑"에게 돌려주거나, 법적인 책임 및 ____원의 손해배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7.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갑" 과 "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8.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갑 "과 "을"간의 모든 분쟁은 상호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 경우,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 . . .

갑 : (분양인) 을 : (입양인)

주소 주소

성명: (인) 성명: (인)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 강아지 □ 고양이)

**반려동물 커뮤니티 몰키펫 molkipet.com

반려동물 분양인 (이하 "갑" 이라함) 과 입양인 (이하 "을" 이라함)은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갑"이 분양한 애견(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갑" 과 "을" 간에 계약을 체결한다.

- 1. "갑"은 "을"의 주문에 의하여 "갑"이 정한 품종과 가격으로 분양하고, "을"은 애견(묘)을 입양한 날로부터 "반려견판매업"에 명시한 기일 내에 "반려견판매업 피해보상규정"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
- 2. "을"은 "갑"에게 약정된 애견(묘)입양금을 지불하며, 이때 "을"은 "갑"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언급하여 "갑"에게 애견(묘)분양에 관한 사후책임 부분을 주지해야한다.
- 3. "갑"과 "을"은 아래의 내용으로 거래를 하며,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품종과 계약서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한다.

가. 품종 :

나. 성별 : □ 암 □ 수			
다. 혈통서 : 🗆 有 🗆 無			
라. 생년월일 :			
마. 예방접종유무 : 🗆 有 🗆 無 🗆 기타 :			
바. 건강상태 :			
사. 분양(입양)금액 :			
아. 기타내용 :			
4. "갑"이 "을"에게 제공했던 정보와 "을"이 입양했던 품종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1항에 제시한 기일에 한하여 "갑"에게 환불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본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상기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각 기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6.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갑"과 "을" 간의 분쟁은 상호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 경우, 을의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갑(분양인) : 전화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을(입양인): 전화번호: 주 소: 성 명:(인)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

**pet1004.co.kr

본계약서는 분양인과 입양인 사이의 계약을 명시하며, 분양인은 분양이후 아래와 같은 문제 발생시 재정 경제부에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할 의무가 있다.

- 1. 분양인(판매자 : 이하 "갑"이라함) 과 입양인 (구매자 : 이하 "을"이라함)은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갑"이 분양한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갑"과 "을"간에 계약을 체결한다.
- 1.1 개, 강아지, 고양이, 특수동물 등 매매에 해당하는 동물을 이하 반려동물 이라함.
- 2. '갑"은 "을"의 주문에 의하여 "갑"이 정한 반려동물(종)과 가격으로 분양하고, "을"은 을 입양한 날로부터 "재정 경제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반려동물판매업"에 명시한 기일내에 피해보상규정을 "갑"에게 요청 할 수 있다.
- 2.1 단 무료분양 인 경우는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없다
- 3. "을"은 "갑"에게 약정된 입양금(판매금)을 지불하며, 이때 "을"은 "갑"에게"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언급을 통해 "갑"에게

분양에 관한 사후책임 부분을 주지해야한다.
4. "갑"과"을"은 아래의 내용으로 거래를 하며,"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견종과 계약서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동일)해야 한다.
1) 반려동물종류 / 성 / 색상 :
2) 출생일 또는 개월수(일수) :
3) 혈통서 :
4) 특징사항 :
5)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
6) 수의사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
7) 현재 의 건강상태 :
8) 판매금액 :
9) 판매(인수)날짜 :
10) 배달자 성명(연락처):
5."갑"이 "을"에게 제공했던 정보와 "을"이 입양했던 반려동물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2)항 (2.1)항에 의하여 "갑"에게 환불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수 있다.
6. 이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갑"과 "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7. 이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갑"과 "을"간의 모든 분쟁은 상호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아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 경우,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8. 이계약서 명기되지 않는 내용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작성일자 20
갑 : (분양인)
성명: (서명)

주 소			
연락처 :			
을 : (입양인)			
성 명 :	(서명)		
주 소			
연락처 :			

펫 판매계약서(개고양이용)

(자료) 일본 전국 펫협회

금번 개고양이를 판매함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본 서를 2통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사업자는 소비자에 대해서, 별지 설명서에 의해 개고양이의 사육방법에 관해서 설명했음을 확인한다. 소비자는 개고양이가 생명이 있는 것임을 충분히 자각하고, 애정을 갖고 종생사육하며 적절한 사육, 예방주사 등 건강관리를 하고, 사육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한다.

사업자명

계약일	년	월	일
-----	---	---	---

	사명(점명)·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동물취급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다다자며

소비자	성명	전화	
		휴대폰	
	주소	E-MAIL	

제1조(판매 펫)

사업자는 하기와 같이, 펫을 판매하며 소비자는 이를 구입한다.

종류·품종 :

성 별: 수컷 / 암컷

생년월일 :

인도일 :

혈통서 :유 / 무 (송부예정시기)

※ 혈통서의 신고는 절차 형편 상 3~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혈통서의 명의변경절차는 별도로 소비자가 하며, 변경료도 소비자 부담이 된다.

제2조 (판매대금)

제3조 (지불방법)

제4조 (반품·교환)

펫은 생명이기 때문에, 판매 후 소비자의 형편에 따른 반품 교환은 불가능하다.

제5조 (소비자의 책임)

소비자는 판매 직후 강아지 혹은 고양이가 환경 변화에 의해 상태가 급변하는 것을 자각하고, 펫의 모양이 이상하다고 느낀 경우, 또는 펫의 사육 상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업자에게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제6조 (사업자의 책임)

다음의 경우에 사업자는 책임을 진다.

(1) (사업자의 책임)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해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펫이 판매 시에는 알지 못했던 질환이 있고, 그것이 원인으로

- ① 사망 또는 그것에 준하는 사육계속에 중대한 지장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를 대신해서 제2조의 펫의 판매액을 상한으로 한 치료비(단 치료비 이외의 교통비, 시간 외 요금 등의 비용은 제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①의 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서 치료를 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펫의 판매액을 상한으로 한 치료비(단 치료비 이외의 교통비, 시간 외 요금 등 비용은 제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어떤 경우라도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해서, 본 계약서, 치료를 한 수의사 작성 진단서 및 치료비 명세를 알 수 있는 영수증, 기타 사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것(백신 접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또 계약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생후 1년 이내임을 조건으로 소비자는 상기 문제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무료생명보증)

상기(1) (사업자의 책임) 이외의 이유로,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펫이 병사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해서, 1번에 한해 제2조의 펫의 판매액과 동액 이내의 다른 펫으로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치료비 등 금전의 청구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해서, 상기(1) 기재의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다른 펫과의 교환 대금액이 제2조의 펫의 판매액보다 저렴한 경우라도 사업자는 그 차액은 교부하지 않는다.

(3) (면책사항)

다음의 경우, 사업자는 상기 (1)(2)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알레르기 등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성장과정에서 판단하는 질병 및 증상의 경우
- ② 펫 인도 후, 소비자 및 사육자가 펫을 적절한 방법으로 사육하지 않는 등 사육자의 사육 및 관리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
- ③ 사육자가 적절한 시기에 수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을 태만하거나 문제가 일어난 경우 신속하게 사업 자에게 상담하여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7조 (특수한 증상의 보장)

(1) 대퇴관절염 형성 부전(개)

생후 1년 이내에 대퇴관절염 형성부전이 발생하여, 수의사에 의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소비자는 이하 ①, ② 중 하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① 수의사 검사비용, 및 판매대금액의 20%의 위로금(단 치료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 ② 동 정도의 개와의 교환
- (2)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F·I·P)가 발병하고, 수의사에 의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중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소비자는 이하 ①, ② 중 하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① 수의사 검사비용, 및 판매대금액의 20%의 위로금(단 치료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 ② 동 정도의 고양이와의 교환
- (3) 무릎개골탈구 및 헤르니아(단, 제10조의 특기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는다.)

생후 1년 이내에 무릎개골탈구 혹은 헤르니아가 발병하여, 수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이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생후 1년 이내의 치료에 한하여, 수의사에서의 검사 및 치료비용.

단 어떤 경우라도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해서, 본 계약서, 치료를 한 수의사 작성 진단서 및 치료비 명세를 알 수 있는 영수증, 기타 사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것을 제출해야 한다. <u>또 제7조의 증</u>상에 관해서는 검사비용, 치료비용을 포함해서 보장금액은 제2조의 펫의 판매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8조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경우의 사업자의 책임)

- (1) 본 계약체결로부터 펫의 인도일까지 간격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 인도일까지의 사이에 펫이 사망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불한 대금(계약금 포함)이 있는 경우는 대금의 반환을 받고, 또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지불하고) 동등한 펫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 (2) 상기(1)에서 펫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어떤 신체적 이상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펫을 인도하지 않는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불한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의 반환을 받고, 또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지불하고) 동등한 펫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주의사항)

다음의 경우, 사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 (1) 인도 후 펫이 도망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 (2) 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원인에 의한 질병, 사고가 있었던 경우

- (3) 기타 본 계약의 하나를 소비자가 위반한 경우
- (4) 본 계약서에서 특기사항으로서 소비자가 양해한 사항에 관해서.

제10조 (특기사항)(제9조(4)의 사항)

제11조 (신의성실의무)

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성실하게 협의에 의해 처리하기로 한다.

VI. 결론: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1. 기대효과

본 연구는 미래의 10대 전망산업 중 하나로 꼽히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 외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해외의 입법 사례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반려동물산업의 조화로운 육성이 가능하도록 균형 잡힌 정책과 법률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 및 법률안들은 유사한 정책들과의 중복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무지향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과 입법적 접근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실시가 법률의 뒷받침을 받으며 더욱 추진력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인프라 ·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를 통해 연구의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반려동물산업 관련 정책과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반려동물 식품 및 용품, 뷰티(의류 등) 관련 산업의 대부분이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실정을 감안할 때, 관련 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고용창출효과 역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시장의 확대의 기회 또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활용방안

가. 공청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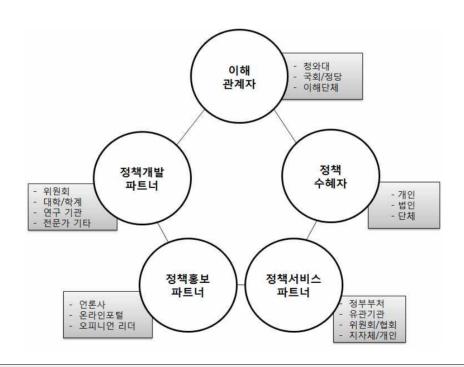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대부분은 동물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정책의 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의 동물 보호 · 복지 정책을 기반으로 반려동물산업의 조화로운 육성을 위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제시된 정책의 활용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 정책고객화

1) '정책고객'의 의미

'정책 고객'이란 "정책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고객" 또는 "정책정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을 말하며, '정책 정보'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책입안 활동에 필요한 정보"로, 이를 세분하면 1) 정책결정자가 정책입안, 정책결정, 정책평가 등 정책 전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2)연구자와 일반 국민 등이 정책에 대해 알고자 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말한다.50)

일반적으로 정책고객이란 정부기관의 고객을 민간기업의 고객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용어로서, 광의의 정책고객은 모든 국민을 포함하나 협의의 정책고객은 해당부처 정책의 입안, 형성, 홍보, 집행, 평가 등 정책 단계별로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개인, 법인, 단체 및 기관을 의미한다.



파트너 고객: 정책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자문, 협조,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

이해 관계자 : 부처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받는 고객

정책 수혜자 : 산출된 정책 또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이해 당사자 고객

<그림 6 - 1> 정책고객화

⁵⁰⁾ 송승섭 (2008). 전문도서관에서의 PCRM 시스템 도입과 적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3), 119-141.

2) 고객관계관리와 정책고객관계관리의 개념

현대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혁신의 근저에는 행정서비스의 주민중심주의, 고객만족주의가 있으며, 행정서비스헌장, TQM, 시민공동생산, 고객만족행정(CS: Customer Satisfaction)은 그러한 사조에 기인하여 나타난 결과의 일례이다.

행정의 주요 고객인 주민들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이라는 통신 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편리한 서비스 제공과 정부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공공부분에서도 정책고객관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국가에서 국민으로 향하는 일방향적 정보제공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현대 사회는 국가에서 국민으로 뿐만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 적극적인 요구를 표출하고, 이를 국가가 수용하여 정책과정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과거의 비효과적이였던 총체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인 정보제공에서 탈피한 쌍방향적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정책고객관계관리(PCRM: Policy Customer Relations Management)를 들 수 있다.

정책고객관계관리는 정책고객을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DB로 구축하고 고객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이메일로 홍보하고 이를 통해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정부부처에서 도입하였다. 이렇게 도입된 정책고객관계관리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전달하는 정보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국민으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부부처의 분류기준에 따라 고객을 계층화하고 세분화하여 고객에게 맞춤 정보제공이라는 큰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제도 운영의 이면에는 고객확보 및 개봉율의 답보, 직원들의 무관심, 고객들의 니즈(요구) 파악 없는 형식적인 메일 발송으로 인한 정보의 Spam화, 중복발송 등으로 인한 고객의 불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공공부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책고객관계관리는 민간기업의 고객관계관리를 도입하여 사용함에 따라 상당부분 유사점이 발견된다. 또한 기존에 실시해오던 정부PR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사용해온 고객관계관리의 경우 이익추구라는 목표가 존재해 공공부문의 정책고객관계관리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고객관계관리의 개념을 공공부문 정책고객관계관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기업의 효과적인 고객관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인적 대면 방법과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기업 대 고객들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선호되어왔으나, 산업의 발달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

로 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업과 고객의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전략도구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고객관계관리가 도입되었고 최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고객관리를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고객관계관리는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고객관리기법으로서 국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국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도시민의 정책고객화 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부문에서의 고객관계관리는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국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시민 을 해당 정책의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 고객중 어떤 유형의 고객으로 받아들 일 것인지 그리고 해당 정책고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가 필수적이다.

이해관계자, 정책개발파트너, 정책홍보파트너, 정책서비스파트너, 정책수혜자 중에서 개인의 자격으로 가능한 정책고객 유형은 정책서비스파트너와 정책수혜자가 될 것이며, 특히 도시민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일 것이라 판단되므로 도시민의 니즈(Needs)를 정확히 판단하여 이에 맞는 수혜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관련 산업 육성 정책 중 수의 인력에 관한 신뢰, 안전한 동물거래, 반려동물 보험 제도의 활성화,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의 확충, 반려동물 위치 확인 시스템 등의 정책들은 반려동물을 기르고있는 도시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므로 '동물등록제'의 기존 정책고객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것이 요구되며, 동물의 분양 경로 등을 미리파악하여 최초 분양시부터 정책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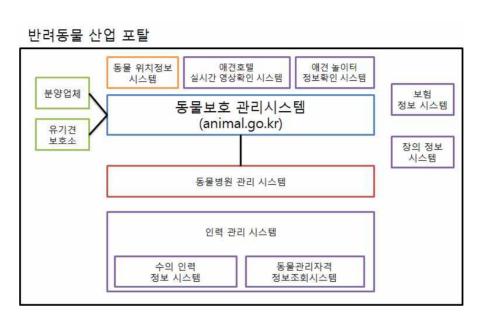
4) 정책고객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방안

정책고객으로 받아들인 이후에도 정책고객용 정보제공 시스템을 통해 정책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animal.go.kr)을 동물병원 관리 시스템, 보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정책고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정책의 추진 단

계별로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요구되며, 가칭 '반려동물 산업 포탈'을 구축하여, 동물보호관리, 분양업체, 동물병원, 인력관리, 보험, 장례 등 여러 산업에 관련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이러한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책에 대한 성과분석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어떤 정책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림 6 - 2> 반려동물 산업 포탈

3. 향후 과제

본 연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종 산업들과의 결합을 통해 업종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국내·외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실태 및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조사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산업의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및 가칭'반려동물산업 육성법'에 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산업연관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전통적인 산업들에 비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들과 '반려동물산업 육성법'의 법률안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건전하게 육성된다면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반려동물의 사육 두수라든지, 산업의 실태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자료가 부재하여 보다 정밀한 정책의 수립과 법률의 입안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반 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해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 하다. 정확성을 담보하는 기초 자료의 집적이 이루어 질 때에만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정책이 수립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훈 '동물법 이야기' PetLove, 2013년
- 김선희 '반려동물 관련 소비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2013년
- 김수진 '동물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년
- 김연암 '한국 애완견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년
- 김재필, 성민현, 김은지 '반려동물과 ICT의 만남', KT 경제경영연구소, 2013년
- 김홍석 '반려동물장례관련법의 이해' 화산미디어 2016년
- 박수현 '동물보호법과 이종이식에서의 공여동물의 보호 = Animal Protection Act and Protection of Source Animals in Xenotransplantation' 江原法學, Vol.27 No.-, 2008년
- 배기석, 배소민 '애완동물 관련 손해배상 문제의 한 일 판례 동향', 법학연구, 2012년
- 신동욱 '애완동물창업실무론' 한진 2007년
- 안제국 '애완동물사육' 부민문화사 2011년 03월
- 양서원 '애완동물 관리사(애완동물개론 및 심리) 애완동물관리사 시험연구회 2004년
- 양서원 '애완동물 관리사(관계법규) 애완동물관리사 시험연구회 2004년
- 유선봉 '동물법=Animal law' 유선봉, 무지개문화사 2013년
- 윤수진 '동물보호를 위한 공법적 규제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Animal Protection in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環境法 研究, Vol.28 No.3, 2006년
- 이강원 '애견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년
- 이장희 '애완동물번식:번식전문가 필독서' 리빙북스 2015년
- 이정임, 이수진 '반려동물 현황과 주요 이슈', 경기연구원, 2015년

- 한국콘텐츠미디어 '2015년 애완동물시장' 한국콘텐츠미디어 편집부 2015년
- 함태성 '학술연구논문 :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Articles : A Study on Improvement for Animal Protect Legislation in Korea' 法學論集, Vol.19 No.4, 2015년
- 함태성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Improvement for Animal Protect Legislation in Korea' 法學論集, Vol.19 No.4, 2015년
- 황규성 외 4인 '한국 반려동물 장례 인식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1 No.4, 2015년
- 황명철, 김태성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농협경제연구원, 2013년 황선훈 '미국의 연방 동물보호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년